

아동,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제3차 세계 대회 보고서

번역 : 이영기, 이영아, 안수정, 혀희선



세계 대회의 역사

아동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세계회의가 2008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다.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은 지난 1년간 전세계적 성착취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연구하였고 “어린이와 청소년 성학대에 대한 리오선언과 행동강령(“Rio Declaration and Plan for Actio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의 천명과 함께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제3회 세계대회는 전세계 인류에게 어린이의 권리학대를 전명하는 사회운동을 근간으로 하여, 어린이의 권리를 협정안에 구체적으로 규정화하여 어린이를 불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 어린이매춘, 어린이포르노, 성(性)을 목적으로한 어린이밀매 등 “아동 상업적 성착취”를 주요안건으로 채택한 첫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아동 상업적 성착취 관련 안건이 발의(Initiative)된다는 ECPAT의 주도하에 수년간의 연구와 사회의 인식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NGO, 각 UN내 관련조직 및 학계 등도 “아동 상업적 성착취”라는 현안사항을 부각시키는 것을 지지했다. ECPAT에 의해 축발된 이 글로벌 캠페인이 전세계로부터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확대시켰으며, 현안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이 인식하게 하였다. 제1회 세계 대회에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대응방안을 위한 체계화된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초로 어린이 인권활동가들의 의해 스웨덴 정부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초기토론과정을 거쳐 Ingvar Carlsson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을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방지를 위한 제1차 세계대회 개최지로 확정하였다. 또한 Silvia 스웨덴여왕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석이 이루어졌다.

본고에는 전세계의 각 지역별 맥락과 행동강령을 제안하기 위해 상업적 성착취와 관련된 아이들의 상황을 조사하려는 목적하에 6가지 지역별 자문 등의 심화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제1회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세계대회가 ECPAT, UNICEF와 어린이 권리보장관련 NGO단체들의 지원하에 1996년 8월27일부터 31일까지 스웨덴 정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1차대회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관련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연설이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웨덴 여왕과 정부의 정치적 지원덕택으로 122개국에서 온 참석자들이 매우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이 직접 주인공으로 동 회의에 참석하여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는 과정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이 대회의 또 다른 특징이다.

제1회 아동 상업적 성착취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SEC) 세계대회의 목적:

- 아동 상업적 성착취의 근본적인 원인 및 차이점, 지리적 집중도 등의 발표를 통해 현안과제의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 법의 역할과 법의 집행, 심리사회학적 재활방법, 건강과 교육, 사회가치의 중요성, 성관광 및 미디어의 역할 등의 관련현안에 대해 강조하기 위해
- 상호간의 경험을 나누고 최선의 방법을 강조하기 위해 워크샵과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통해 의견개진을 위해 개방된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 각 지역별, 각 국가별, 또는 전세계 차원에서 동문제의 본질, 심각성 정도 및 사회정치학적 의의 등을 다루므로써 일반대중의 인식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 아동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상업적 성착취 법률제정을 위한 선언문 채택 및 전략적 아젠다 개발을 위해

동회의를 위한 다양한 자문과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성학대나 상업적 성착취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들이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도속에 있다는 것을 전세계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회의를 통하여 명확하게 인식되었다.

제1차 세계대회에는 130여 개국 1,879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122개국으로부터 718명의 정부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전세계 NGO단체대표 417명과 8개국 17명의 아동 및 청소년대표 및 전세계 언론사로부터 538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전세계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깨닫고 동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답변의 기본틀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다.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의해 중요성이 인식되어진 것처럼, 제1차 세계대회에는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아동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1차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대회에 참석한, 대부분 범죄피해를 경험했던 17명의 아동들에 대한 참여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했다는 사실은 매우 영향력있고 획기적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미성년들은 자신들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자신들의 각 상황에 대해 낮게 평가되어 있는 각종 선언들을 쟁점화하였으며, 자신들의 충분한 참여하에 각 정부에게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우선적인 실행을 요청하였다. 제1차 세계회의에서 나온 결과자료들은 “아동 성학대에 대한 국제적 심층 가이드북: 아동 성착취에 대한 스토훌름 선언 및 행동강령”을 통해 더 진전되었다. 이 선언문 및 행동강령은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중요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의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상업적 성착취로부터의 보호에 확실하게 중점을 두었다.

-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를 도모하며,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가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 및 규정, 프로그램, 관례에 대한 검토 및 효과적인 개정방안 적용
-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방지를 위한 관련 조직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 피해아동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아동성착취방지를 위한 실제행동이 가능하며 피해아동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 및 피해청소년, 피해자 가족, 친구 및 주변 조력자 등을 포함한 피해아동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

아동권리협약의 법적구속력과 관련하여 스토훌름선언 및 행동강령은 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제1차 세계회의가 다른 모든 분야와 관련된 세부사항이나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가 없이지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 또한 동선언 및 행동강령은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작업과 정기적인 검토, 정책이나 전략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적인 보완작업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면서 다음 회의까지의 5년동안 공식적으로 주기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하였다.

5년간 진행된 실질적 실천(Five years of Action): 제2차 세계대회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이 1996년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새로운 국제법 제정, 각 국가의 기존 국내법의 개정 및 정부, NGO 및 민간차원의 연구 및 실제적인 사업추진 등 수많은 구체적인 성과가 제1차 세계대회 이후에 이루어졌다. 전세계 차원의 아동 매매, 아동 매춘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의 채택되었으며 2000년 5월에 발의되었다. 1999년에 아동노동의 남용관련 협약인 “국제노동기구 협약(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제182조를 채택하였다. 국가간 범죄방지협정(The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완한 UN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를 채택하였으며 수년내 최종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opened for signature in these years.*)

제1차 세계대회 5주년 기념에 맞추어 스토훌름대회에서 다른 안건들의 실질적인 실행이 전세계에서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위해 ECPAT International, UNICEF 및 NGO단체에서는 각 국가 및 이해관계집단을 실질적인 행동을 옮기기위한 검토과정에 참가시킬 수 있는 주최국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런 면에서 신규 아동의 상업적성착취 방지 법안제정을 위해 주일본 스웨덴대사관에서 주관한 행사에 스웨덴의 Silvia 여왕의 참석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였다. 스웨덴 여왕의 참석은 일본의 Takamado 공주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 행사는 제2차 세계대회를 위한 일본정부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게 하였으며, 2000년 4월 일본정부는 제1차 세계대회의 기본 성격 - 정부, NGO, UN, 아동 - 을 견지하면서 비제2차 세계대회를 요코하마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바탕하에 ECPAT, NGO 및 UNICEF는 제2차 세계대회개최를 준비하게 될 국제계획위원회구성을 위해 일본정부와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 전 세계에 소재한 관련대행기관들의 자문과 각 지역간 회담을 통해 전세계적인 동원 및 참여가 시작되었다. 동행사는 스토훌름 대회이후 5년간 각국의 성착취로 인한 희생아동의 보호와 감찰, 재활을 위해 행해진 각종 활동의 성과를 파악하고 경험을 교류하기위해 참가하는 각 지역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방지 개선책관련 주요 추천안건들이 상정되며 시작하였다. 각종 회담에는 중동아프리카지역에서는 모로코의 라밧(Rabat)에서 개최된 아동 성착취방지를 위한 중동아프리카 포럼이 포함되었으며 남아시아에서는 다카회담이, 라틴아메리카는 몬테비데오 회담이,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방콕회담, 유럽을 위해서는 부다페스트 회담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참석한 미국 팬실베니아 사회과학대학에서 북미지역 모임이 각각 진행되었다. 또한 아동들도 지역포럼에 참여한 것 뿐만 아니라 예비모임 및 자체모임도 개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전세계적 모임들은 결국 2001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2차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방지를 위한 세계대회개최의 기반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행동과제(Agenda for Action) 이행을 위한 정치적 책임을 향상시키기 위해
- 행동과제 이행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방지를 위한 문제점 및 간극을 규명하고 관련 전문지식 및 우수사례를 교류하기 위해
- 세계대회의 전과정에 대한 Follow-up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회의 주요 쟁점현안은 “아동매춘 및 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였다.

제2차 세계대회 참석자는 제1차대회 참석자수를 훨씬 넘어섰다. 총 3,050명이 참석하였는데 그 중 제1차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35개국을 포함하여 총 136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135개 일본 NGO단체기관과 148개 전세계 NGO단체기관에서 참석하였다. 또한 35개국에서 95명의 아동이 참석하였다. 고위급 외교부 인사, 총리, 국무장관, 정무장관 및 대사급인사들이 각국의 참가단을 인솔해서 참석하였다. 피아아동들의 참여가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회기간 내에서 뿐만아니라 각 국가단위의 행사에도 더 많이 포함되는 등 아동참여의 본질적인 확대가 이루어졌다.¹⁾ 예를 들어 세계대회개최이전에 ECPAT는 대회개최와 관련된 사안들을 아동들에게 알리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아동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아트캠페인과 편지쓰기 캠페인 행사를 주관하였다. 제2차 세계대회 및 각 지역별 모임과 같은 본 행사에 앞서, 아동들의 생각이나 정보의 공유를 위한 사전행사를 통하여 아동들의 본질적인 참여수준을 더욱 높였다. 이는 제1차 세계대회에서부터 축적된 많은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다. 본대회에 앞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 가와사키(Kawasaki)에서 개최된 3일간의 사전 프로그램에서 전세계에서 참석한 아동들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동 행사는 모든 행사프로그램에 미성년 아동들이 참석했다.

- 주요발표자, 패널리스트, 사회자
- '전진(前進)을 위한 아동들의 소리(The Children and Young People's Voice on Moving Forward)'
- 언론관계자 및 관련전문가와 아동들간의 라운드테이블 토론
- 아동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워크샵개최
- 워크샵 발표자 및 진행지원자
- 일부 아동들의 언론미디어와의 인터뷰진행
- 세계대회 마지막에 일부 아동들의 프레스 컨퍼런스 참여

제2차 대회를 위한 각 지역별 회담, 아동 및 청소년대상회담 등 전세계 국가간의 광범위한 의견교환은 요코하마대회에서 진행된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 및 새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바탕이 되었다. 새로운 학습과 구체적인 전략, 실제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는 전제하에 전세계 국가마다 상이한 환경과 경험을 반영시키기 위해 더 다양한 참여대상을 포함시킨 조치는 전세계 국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회의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진행상황 평가 및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방지를 위한 주요 안건들이 계속 다루어져야 한다는 공감하였으며, 특별히 스톡홀름대회에서 다루어진 안건들의 진행현황을 살펴보았다.

동회의 결론으로 "요코하마 글로벌 협약(Yokohama Global Commitment)"이라고 명명된 최종 결과문건이 회의에 참석한 각 정부대표 및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문건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근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세계공동체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각 지역별 회의(regional consultation)에서 작성된 문건들은 대회의 회장에게 제출되어 통합되었다. 요코하마 세계공 약(The Yokohama Global Commitment)은 스톡홀름 행동강령(the Stockholm Agenda for Action)을 재확인하였으며, 특히 요코하마 세계 공

1) 아동들의 회의참석에 대한 주요 분석들은 2002년 7월 ECPAT newslet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요코하마대회에 참석한 3명의 영국 청소년 참석자들은 아동 및 미성년들의 세계대회 참석에 대한 평가 및향후 개회될 포럼에서 배워야할 교훈들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아동들의 세계대회참석에 대한 추가내용은 2001년 1월 ECPAT newslette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은 "우리의 세계 공약(Our Global Commitment)"을 언급한 회의문건에서 사용된 각 주체들의 언어를 통한 다양한 참가자들의 참여도모, 본회의 이전에 개최된 지역별 회의결과에 대한 재인식, 각 회의의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 향후 본회의에서 다룰 후속조치 행동강령을 위한 풍성한 컨텐츠 확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감시 방법들간의 긴밀한 상호연결의 필요성 강조, 제2차 세계대회를 후속계획으로의 명명 및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와의 전쟁노력을 지속적, 구조적 추진에 대한 재인식 등을 통해 그 공약문의 가치를 향상시켰다. 본회의에서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의회 및 NGO 참석자들과 아동 및 청소년들 간의 의견교환을 위한 라운드테이블회의가 구성되었다. 동회의 토론결과 및 각종 의견들은 드라마와 음악, 시 등의 각종 퍼포먼스와 "아동과 청소년들의 마지막 호소(Final Appeal of Children and Young People)"이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폐막세션의 종회에서 다루어졌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전세계 아동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동들이 자생적으로 모이고 조직 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전세계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맞서 싸우기 위한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기금(CSEC funds)"추진을 각 정부에 요청하였다.

제1차 세계회의와 마찬가지로 요코하마 회의에서도 전체 회의를 통해 동의되어진 각종 실천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행동강령의 윤곽을 잡았다. 전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부응하여, 청소년의 상업적 성착취와의 전쟁을 위한 행동강령은 전세계 모든 지역으로부터 이루어진 많은 검토과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며, 실천과제의 검토는 전 세계 각 지역의 중간 검토를 통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4년에 세계대회 협력단체들은 요코하마 대회에서 동의한 조치에 대한 이행상황을 중간검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였다.

제3차 세계대회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한 초기 활동가들의 업적은 자극제가 되어 많은 힘을 얻게 되었다. 상업적 성착취의 문제점에 대해 전세계에서 직접적인 경험과 인식이 증대되었고 사안의 긴박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동범죄에 대한 현실적인 간극, 실질적인 이행과 전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각국정부 및 정책담당자, 시민사회단체의 안건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켰으며 세계 대회와 중간검토과정을 통해 동범죄에 대한 인식과 분노는 보다 실질적인 참여와 체계화된 검토 등 한층 폭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따라 전세계적으로 다른 사회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회의의 진행과정 그 자체가 아동에 대한 폭력을 막으며 아동 성착취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전세계적 참여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스톡홀름 회의가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현안과제에 대한 설명과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시작이었다면 요코하마 회의는 현안의 진전상황에 대한 전세계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보다 많은 횟수의 관련 회의개최가 요구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각 지역별 중간검토가 2004년 시작되었으며, 제3차 세계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전부터 세계대회개최를 조직해왔던 ECPAT, UNICEF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과 관련된 NGO 단체뿐만 아니라 브라질을 포함한 전세계의 시민단체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대회개최를 위한 브라질 정부와의 협력과 지원을 받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Lula대통령의 협약서명하에 브라질 정부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제3차 세계대회개최를 결정하였다. 더 많은 참여인원의 확보와 회의의제에 대한 보

다 전세계를 포괄하고 심층적인 토대구축을 위해 일년의 사전준비기간을 가졌다. 브라질 정부와 ECPAT, UNICEF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과 관련된 NGO 단체, 제1차, 제2차 개최국인 스웨덴정부과 일본정부 및 ECPAT 청소년 대표단으로 구성된 중앙조직위원회(Central Organization Committee)가 청소년과 전문직 종사자, 기술직 전문가, 정책입안자, 학계 및 청소년 권리신장과 아동성착취방지를 위한 사회 각계층의 참여 및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해 만들어졌다. 본 회의의 준비와 프로그램을 위해 COC는 5개의 주제별 분야를 나눌 수 있다.

1. 성착취관련

- 아동 매춘
- 아동 포르노그라피 및 아동 학대사진
- 여행 및 관광을 통한 아동 성착취
- 성(性)관계를 위한 아동밀매

2. 법률적 틀 및 책임

3. 각 분야간 정책통합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5. 국제간 협력을 위한 전략

COC는 Jaap Doek 前 아동인권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회장을 조사위원으로 하여 아동인권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COC는 제3차 세계대회개최업무를 위해 ILO-IPEC,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UNWTO 등 관련 전문단체들로부터 각 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Expert Advisory Commission, EAC)을 개최하였다. EAC는 조사위원(Rappoteur)의 감독하에 해당 주제별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동 위원회는 기술토론 및 각 주제별 보고서의 질적향상을 위한 의견교환 및 자문과 조언과정을 거쳐 다양한 결과보고서(the Outcome Document)의 초안검토를 하기 위한 공식적인 포럼행사를 제공하였으며 이는 본 세계대회행사후 1개월 후까지 진행되었다. 제3차 세계대회가 시작되기 전 준비 기간 동안 각 주제 및 소주제별로 상이한 작가들에 의해 11번의 기초보고서가 작성되었다.²⁾ 이러한 기술적 공헌은 기존 현안문제들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분야의 최신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향후 조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들은 “리오회의 결과보고서(the Rio Outcome Document)”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었다. 제3차 세계대회를 위한 폭넓은 의견개진을 위해 준비단계에서 주제별 소모임(thematic meeting)과 지역별 간담회(regional consultation) 등 2개 과정이 추가되었다. 주제별 소모임은 세계대회의 5가지 세부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³⁾ 이는 각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막기위한 구체적인 조

2) ECPAT는 세계대회 주제별 보고서 11가지 중 7가지 보고서를 위탁하여 검토하였다. 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춘을 통한 아동성착취
 - 성(性)을 목적으로한 아동밀매
 - 관광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 아동 포르노그라피 및 온라인 아동성착취
 - 온라인 아동성학대: 법집행에 대한 반응
 -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방지에 대한 민간부분의 책임
 -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적 연계: 민간부분, 법집행부분 및 비정부부분에 대한 사례연구
- 3) 아동포르노그라피 방지를 위한 분야까지 포함한 모임은 동보고서는 <http://www.ecpat.net/WorldCongressIII/index.php>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4개의 주제별 보고서는 본회의기간동안 전자문서로 제공되었다.

치를 가능하게 하는 상위 조치의 진전도 및 현실적 격차에 대한 검토가 이루지게 하였다. 아프리카지역, 아시아 태평양지역, 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남아시아지역, 라틴아메리카지역, 북미지역 등 주제에 초점을 맞춘 특별 모임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전모임도 개최되었다.⁴⁾ 이러한 자문회의들은 본회의의 주요 주제를 다룸과 동시에 각 지역별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현안에 대한 진전상황 검토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요코하마 대회이후 및 포스트 요코하마대회 중간 검토회의 등을 통해 지역별로 축적된 각종 경험과 교훈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였다. 이 소모임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개선이 필요한 입법 및 집행부문의 명시뿐만 아니라 상이한 상황 하에서도 명백한 아동 성착취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이끌어내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참석자들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별 지역에 대해 특별 평가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우선 순위들을 정의하였다. 주제별, 지역별 참석자에는 정부, NGO, UN내 관련기관 및 전세계 민간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등이 포함되었다. 본회의뿐만 아니라 사전모임에 대해서도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의미 있는 참석과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 COC나 지역별 모임과는 별도로 아동 및 청소년들의 독립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별 사전 포럼(Child and Youth Regional Preparatory Forum)⁵⁾”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동 및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각 포럼들은 아동의 성착취를 막기위한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리드하에 진행된 성공적인 관여의 성공사례를 나누고, 범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 지역별 또는 전세계 통합의제를 알리기 위해 이미 규명된 지역별 편차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제안하기위한 활동 무대로 활용되었다. 리오회의 결과보고서(the Rio Outcome Document)의 초안에 사용된 매우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실천제안들이 다양한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례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능력을 만들거나 상호지원라는 관점에서 범죄의 방지, 관련 입법, 법집행, 회생자의 회복과 재통합, 아동참여, 민간부분의 참여, 각 부문별 협력강화의 필요성, 국가단위의 협력, 국제협력의 향상의 필요성 등과 같은 일련의 사안들의 공통점들이 상기에 언급한 다양한 제안들로부터 부각되며 시작하였다.⁶⁾

대규모 사전행사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주제로 가지고 조직된 행사중 최대규모의 행사로 결정을 이루었다.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제3차 세계대회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28일 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다. 동회의는 아동성착취와 싸우기위한 전세계의 협약을 새롭게 하고, 전세계의 의지를 보여주며, 아동의 권리와 존엄을 저해하는 것들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을 제공하였다. 제3차 세계대회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다.

-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착취의 신규영역조사와 핵심전략수립 및 실천방법 조사
- 각 지역별 활동내역 연구 및 각종 경험에 대한 더 좋은 교류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규명

4) 주제별 소모임은 총 7개가 개최되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ecpat.net/WorldCongressIII/regional2.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별 모임과 관련된 보고서 및 관련 문서들은 <http://www.ecpat.net/WorldCongressIII/index.ph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5)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별 사전포럼의 보고서 및 관련문서는 <http://www.ecpat.net/WorldCongressIII/index.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Japp Doek, “아동성착취에 대한 제3차 세계대회; 유럽국가의 사후관리에 대한 고찰(Third World Congress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me Thoughts about a European Follow-up)”, http://www.ecpat.net/WorldCongressIII/PDF/Outcome/JappDoek_en.pdf, 3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핵심의제에 대한 지역간 또는 국가간 협력보장 및 채널구축
-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보증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분야를 망라한 접근 활성화
-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이 조속히 실천될 수 있게 하기위한 시간에 묶여있는 목표설정 및 진행상황에 대한 감시강화

제3차 세계대회에 참석자는 이전 대회의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4,300명이 넘었다. 137개 국가에서 739개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시민단체, UN산하단체, 정부간(inter-governmental) 기관, 민간 단체 및 아동과 청소년 등이 참석하였다. 제3차 세계대회에는 각 산업 대표단체, 종교단체, 각국 음부즈만 및 영부인 등 새로운 참석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회의의 프로그램은 각 주제별 보완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행사기간중 반나절에 하나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각각의 주제들은 한명의 아동이 포함된 전문가 패널 중 한사람이 발표하는 형식이었으며 이 패널회의는 회의참석자들의 충분한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회의를 통해 제안된 주제들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수많은 워크샵이 패널회의와 함께 개최되었으며, 워크샵의 패널들과 진행자는 행사개발자, 국회의원, 민간기업, 언론계 및 학계 등의 저명한 전문가집단에서 다양하게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워크샵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통해 각 국가의 정부와의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각 정부 관료들이 주요 의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전략적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일련의 기술포럼들도 특별행사로 개최되었다. 범조인 모임이나 아동을 위한 음부즈만 모임 및 기타 사회 활동과 모임 등 CSEC 관련업무에 대한 토론과 관련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특성화된 집단 간의 교류의 장도 마련되었다.

제3차 세계대회에서도 전 대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아동들의 직접참여가 이루어졌다. 전체 282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브라질 아동이 절반에 해당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전 세계 다른 국가에서 참석하였으며 이 숫자는 이전 대회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이다. 성착취의 위험에 처해있거나 생존자인 이 아동 및 청소년 참석자들은 아동의 성착취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네트워크, 보호시설, 학교 및 관련시설을 통한 성착취문제를 방지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제3차 세계대회에서 준비한 청소년 포럼은 2008년 11월 24일과 25일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다. 56개국 30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석하였으며 동 행사는 제3차 세계대회를 위해 아동 및 청소년들의 참석을 통해 언론매체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되었다. 동모임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세계대회가 무엇이며 주제 및 구성을 대한 이해를 도와주어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세계대회를 통해 작성되는 최종 제안에 대한 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아동과 청소년들도 세계대회기간동안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선정하였으며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제안을 구성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대회기간 동안 아동 및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주제별 패널토론회마다 각각의 발표자와는 별도로 많은 워크샵과 대회의 시간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발표자로 참석하거나 전문가들과의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음부즈만과의 대화”, “종교지도자들과의 대화”, “국회의원들과의 대화”,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 및 남용방지 및 법집행의 아동 및 청소년의 직접 참여와 관련된 워크샵, 청소년폭력에 대한 UN연구 및 향후과제에 대한 워크샵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세계대회 프레스행사에도 참석하였다.

제3차 세계대회에서는 행사장의 정중앙에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공간(Adolescent

Space)”이고 명명한 개방공간을 마련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서로간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들만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창조적인 활동을 계획하거나 다른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곳에서 청소년들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거나 의견을 교환하고 친구를 사귀는 일들을 할 수 있었으며 여러 미디어를 통해 각종 조언 등을 준비하였다. 청소년공간에는 컴퓨터와 비디오, 정보를 얻거나 제공할 수 있는 라디오와 같은 오디오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독서 및 시청각 공간, 게임 및 아트 공간, 신문과 스크린사진을 위한 카메라공간 등이 제공되었다. 세계대회기간동안 워크샵들은 비디오 및 라디오물로 제작되어 전세계로 방송되었다.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벨리제(Belize) 및 스웨덴 실비아 여왕이 청소년공간을 방문하여 현안문제 및 관심사에 대해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행한 제안서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를 통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은 각종 사안들에 대한 현실적 고리와 추진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어른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였다. 아동 성착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론적 방법과 실질적 방법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회의의 참석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생각과 경험은 참석자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전 스토훌름대회와 요코하마대회와 마찬가지로 제3차 세계대회기간동안 준비된 각종 글로벌회의진행과 각계의 노력들은 성착취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전체노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3차 세계대회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

- 전세계가 책임을 준수하기위해 CSEC와 관련된 핵심적인 국제수단과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각 국가별 법제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
-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 전략 및 계획의 개발과 이행
-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매매를 방지하거나 맞서 싸우기 위한 다양한 발의권(initiative)제정
-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 제3국 성매매방지 및 책임자 조사, 기소, 처벌 등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간 또는 다국가간 협정체결
- 아동의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아동 보호 및 희생자 지원, 아동성착취와 관련된 전문가육성 및 교육 캠페인을 중대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증가

제3차 세계대회의 토론은 참석자들이 성착취로부터의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들의 권리와 현실화시키기 위한 단계들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방지를 위한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으로 명명된 글로벌협정은 회의 시작전, 회의기간 중, 그리고 회의 종료후에도 계속해서 진행해 온 세심하게 초안의 작성과정을 진행시킨 결과로 나온 것이다. 사전진행과정에서 부각된 관심사와 추천안건들이 반영되어진 결과는 별도로 리오행동강령(the Rio Declaration and Call for Action)은 대회기간동안 주제별 패널토론과 워크샵에서 나온 의견들과 행사 후 한달간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된 조언들과 의견을 집대성하였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와 기여도 이번 회의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다양한 사전모임을 통해서 아동들과 청소년이 제안한 의견들의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리오행동강령초안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아동들과 청소년들은 토론과 워크샵을 통해 진행된 자신들의 제안이 최종 보고서에 반영시키기 위해 세계대회 초안 위원회(the Drafting Committee of the World Congress)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아동 성착취 극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조한 최종발언문도 초안 작성이 이루어졌으며 보고서의 부속서로써 포함되었다. 리오행동강령의 최종버전은 50여 개의 국가대표자가 있는 유엔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뉴욕

의 대회조직위원회에 의해 2009년 4월 9일에 완성되었다. 리오행동강령은 기존 협정의 쇄신과 각종 전략에 대한 재정비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동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 세계차원의 중장기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문(前文)은 진행과정과 각종 교훈에 대한 리뷰, 선언 그리고 행동강령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은 예방, 이해관계자간 또는 국가차원의 협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관리 및 회복, 아동 및 청소년의 직접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요구한다. 또한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은 복잡한 CSEC사안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합의된 대답을 위해 여러 분야 간 협력방안을 규명해낼 것을 요청한다. 2006년에 서명된 국제노동기구 세계강령(ILO Global Action Plan)의 “최악형태의 아동노동(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을 없애기 위한 노력하는 것 같은 현안 문제들 간의 연계노력이나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 연구(the UN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에 대한 지지뿐만 아니라,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은 보다 폭넓은 아동보호의 기초를 다지며, 이해관계자집단간의 결집강화를 위한 전망들을 생산해낼 것이다. 또한 개별 정부차원과 정부간, 비정부조직간, 인권관련기관, 음부즈만, 민영기관, 법집행기구, 법률커뮤니티 등의 책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종교지도자, 국회담당관, 연구소, 학술기관, 시민사회 및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의 책임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스톡홀름 선언 및 행동강령과 요코하마 세계협정과 비교하여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은 회의결과에 대한 사후진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요구와 기준의 인권수단과 기준과 CSEC의 관심분야를 더욱 공고하게 연계하기위한 노력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역량의 재추진을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정부 간에 이루어진 협약의 진척여부 및 책임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망해 보인다.

Key Note Speeches(핵심인사 주제연설)

브라질 룰라대통령 (Luiz Inácio Lula da Silva)

(아래의 번역은 ECPAT에서 제공된 것임. 정확한 번역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경미한 번역차이가 있을 수 있음. 번역상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르투갈어번역이 아래의 사이트에 제공되어있음. (<http://www.imprensa.planalto.gov.br/download/discursos/pr973-2@.doc>)

친애하는 Silvia 스웨덴 여왕님, 여러 국가로부터 오신 퍼스트레이디 여러분, 그리고 나의 부인 Marisa 외부통령의 부인 Ms. Mariza Gomes, 각료 및 국회의원, 기업가, NGO대표 및 주지사 및 시장분들 및 성착취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 특히 나의 동료인 리오데자네이로 시장 Sergio Cabral과 그의 부인 Adriana, 마지막으로 제3차 세계대회에 참석하신 137개국 대표 여러분께서 이곳에 참석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러시아대통령과의 회담으로 인해 1시간 30분이 늦어진 관계로 나의 통역인 Sergio에게 당부하겠는데 저는 연설문을 그대로 읽지 않겠습니다. 제3차 세계대회에 참석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브라질에서 아동성착취방지는 1988년 헌법으로 제정하였

으며 6개월후에 아동 및 청소년법(the Children and Adolescents Statute)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들이 벌언권을 가지고 본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이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더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착취는 우선적으로 다룰 수 없는 인류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위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내에서의 성교육은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 음식을 제공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세계 부모들에게 확신시켜야 합니다. 앞서 발표한 두 소년정도의 10세가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반드시 성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전혀 논리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국가에게 확신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학교에서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아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리의 한쪽 구석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서 취급할 수 없다는 종교적인 위선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전부 사실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인종적, 계층적, 연령적 차별이 존재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10살, 12살, 14살의 청소년들이 음식 한접시를 얻기 위해서 몸을 파는 현실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매춘으로 이끄는 것은 아이들은 술집과 나이트클럽을 지어 돈을 베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동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구매력을 가지면 더 이상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 필요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가난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아동성착취의 문제를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문제로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착취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회 중류층으로 교육도 받고 금전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짐승 같은 습성으로 인한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이유이외에도 가정과 하루 24시간 미디어로부터 얻는 정보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것들이 또 다른 이유입니다. 가정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24시간 TV를 보는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케이블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도 섹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와 10시, 정오, 오후 2시와 3시에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시청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인터넷상의 아동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을 할 것입니다. 브라질 의회자문위원회(the Parliamentary Inquiry Commission)에서는 인터넷상의 사건들이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는 것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통해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오신 동료여러분과 손님여러분, 그리고 외국의 대표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의 의사결정과 제안을 위해 지출해야할 비용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국가의 의회에서 이 문제를 멈추기 위해 통과시켜야할 법안에 대해서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양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당신의 영혼을 통해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열정이 아닌, 지구상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을 더 인간답고 덜 짐승 같게 만들기 위한 다급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 대회가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를 끝내지는 못하고 다음 대회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대회가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가 올바른 태도와 몸짓과 정책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성적 동물이라고 믿는 – 가끔은 비이성적인 인간들이 있지만 – 인간들을 더욱 공평하고 남을 배려하게 만드는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한명 한명의 양심의 하나님의 축복이 기원합니다. 또한 회의의 끝에 여기서 토론되는 안건들이 다음 회의의 토론을 위해 남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들은 맞서 싸워야 할 전쟁수단들이 되어 전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이든 빙곤한 사람들인 것과 상관없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성의 문제이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의 수치스러운 문제를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 (Silvia 스웨덴 여왕)

제가 자란 국가인 브라질에서 개최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방지를 위한 제3차 세계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저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 중대한 의제를 가지고 세 번째로 초청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1996년 제1차 스톡홀름 세계대회이래로 진심으로 참여하여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아동성(性)매매관광, 아동포르노그라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아동밀매 등과 같은 주제들이 거의 언급되지 못했던 제1차 스톡홀름대회를 회상해보고자 합니다. 아동성착취는 다양하면서 경악스러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회가 동주제에 대해 우리들의 눈을 끄게 해준 것이었으며 그 이후로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조직, 사법집행기관 및 민간부문에 의해서 진행되 온 업적들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하는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해야할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대회는 아동권리현장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정부와 UNICEF, ECPAT International, NGO조직 등이 국제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한 동등한 파트너로써 공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행사가 가지있는 방식으로 함께 일을 진행했던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톡홀름대회에서 아동권리현장을 기반으로 한 선언 및 행동강령이 합의되었으며, 5년 후 요코하마대회에 참석자들은 아동성착취에 대항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대한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가 발효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본 의정서를 비준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의정서는 아동성착취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세한 요구사항을 각 국가에 제공함으로써 현법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분야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법적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저는 성착취에 노출되어있는 아동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세계유아재단(World Childhood Foundation)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곳 브라질에서 아동지원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오늘날 세계유아재단은 발전하고 있으며 스웨덴에 본사와 브라질, 독일 및 미국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

금 이 순간에도 14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프로젝트 중 일부가 이번 대회기간에도 발표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몇가지 프로젝트사례를 발표하고 싶습니다. 폴란드에 소재한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Nobody's Children)”이라는 조직은 우리 세계유아재단으로부터 “좋은 부모, 좋은 시작(Good Parents - Good Start)”라는 프로그램개발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해있는 가족을 찾아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폴란드 내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제적인 아동학대가 주변의 지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경제적 절망이 깊어짐에 따라 각 가정들은 아동을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믿을 수 있는 어른들이 아동밀매자들에 손아귀에서 아동학대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지역내 아동밀매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태국의 “아동방주(Kid Ark)”프로그램은 가족이 그들의 아동들을 돌보아 주게 해서 아이들이 학교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에게 다른 미래를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아재단 브라질 사무소에서는 아동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고속도로상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과제와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에토스 기업연구소(the Ethos Institute of Companies)”와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세계유아재단 브라질 사무소는 기업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까지 본협약에 서명한 회사들은 대형 고속도로 운송회사를 포함한 350개가 넘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회사들은 트럭운전사들을 훈련하여 성착취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명예대사(ambassador)들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무소는 또한 관광서비스 네트워크의 행동규약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기구가 되어왔습니다. 그들은 성착취 아동들을 찾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호텔체인에 아동성착취근절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훈련시키는데 있어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지난 3년의 기간동안 브라질의 14개 주에 있는 60개 호텔에서 3,500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틀란티카 호텔인터내셔널과 전략적제휴를 체결한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스톡홀름 대회가 끝난지도 1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아동성착취에 대한 실상과 전세계 소외계층이 얼마나 영향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증가해왔습니다. 한가지 새로운 도전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놀라운 기회이며 환상적인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이 새로운 공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영역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인 우리도 이 공간에 포함되어 아이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와 같이 범위를 한정해야 하며, 충고도 해주고 관심도 보여주는 어른들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착취자들이 인터넷 상의 유일한 어른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그들보다 한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일부 워크샵에서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또 하나의 스톡홀름대회이후로 늘어난 부정적인 부분은 아동성착취를 조장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수만개의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얻기위해서 스웨덴에서만 하루 5만건에 이르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좋게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에서 이런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와 같은 민간기업에서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입하기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놓은 법을 가지고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아동포르노그라피 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연합체(Financial Coalition against Child Pornography)는 미국에서 2년이 넘도록 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쁘게도 가장 최근에 동 연합에 가입한 회사는 Brazilian Banco Bradesco입니다. 이에 상응하는 진행이 스웨덴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사례를 통해 저는 우리가 아동 성착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궁극적으로는 근절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수단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려는 수요가 전세계차원의 아동성착취문제의 기저에 있는 원동력이라고 인식해야하며 긴박하게 알려져야만 합니다. 저는 리오대회의 결과문에 전세계차원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언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많은 분야에서 발전해왔습니다. 이는 이번 대회의 주제별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또다른 도전을 인지해야하며 우리의 즉각적인 관심집중이 필요로 합니다. 아동성착취에 대한 제로관용(zero-tolerance)이 이루어지기전까지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 세계대회가 우리의 공통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전세계의 걸쳐 앞으로 이루어질 업무 및 향후조치에 대해 제한된 시간목표를 설정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앞으로 패널토론과 워크샵에 참석하여 최근 개발된 내용과 혁신사업에 대해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참석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중요한 협약들이 이번 대회 성과로 되어지기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인하고 쳐다보지 않고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섹스관광, 성을 목적으로한 아동밀매와 같은 현대판 노예제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브라질대회에 초청해준 브라질정부와 Lula대통령, Dona Malisa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명합니다. 이 놀라운 현안과제가 다시금 전세계적 아젠다가 되게해준 여러분의 용기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막사 (Amihan Abueva, ECPAT International 회장)

친애하는 젊은 그리고 영원히 젊게 지내는 친구와 동료여러분! ECPAT International로 인해 지금 이곳에 여러분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브라질 정부의 뜻깊은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브라질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세계대회가 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NGO그룹, UNICEF, 정부간 조직 및 ECPAT조직망의 노력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방지를 위한 제3차 세계대회 개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동성착취에 맞서 싸우기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루어놓은 것과 국제법과 각국간 국내법의 발전도를 보고자 본대회에 모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착취예방과 성착취아동보호 및 회복, 재결합을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본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부

와 비정부조직, 다른 사회단체 및 민간조직간의 다양한 협력과 공동행동을 기념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그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추진하는 것을 보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까지의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아동성착취를 종결하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담해야할 우리들의 무거운 짐이며 책임입니다.

세상은 빠른 정보교환을 추진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정보기술의 범람은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술발전이 아동성착취를 위한 암약하고 무서운 방식의 채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통과 인프라의 발달이 더욱 유동적이 되게 하고 세상에 어떤 곳도 접근이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 끝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손쉽게 국내 및 해외의 성(性)범죄자들의 희생양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편, 과도한 현세상의 물질주의적 풍토는 아이들의 성적 이미지를 상품화시켜 표현하게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오랜기간동안 지속된 가부장적 차별이 아동성착취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사고방식을 정당화시켜왔습니다. 아이들의 성(性)적 순결함을 파괴하는 전통적인 태도가 우리의 아이들을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상황에 놓이게 하는 성적 착취와 연계되어진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성착취와 밀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위해 법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법집행과 아동보호시스템의 실행은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법의 철저한 적용이 훨씬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부에서 아동들을 위한 예산 및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수용시설지원 및 법제정 등에 대한 확신을 받지 못해서 비정부조직이 진행하고 있는 예방, 보호, 회복 및 재결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조용히 아동들의 권리에 대한 이행을 저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근시안적인 사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모든 올바른 사회의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 부유했던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우리는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대한 환경재앙을 이끄는 환경변화와 식량부족사태, 수백만의 인류가 쫓겨나는 전쟁과 갈등이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국가원수나 각 조직의 장으로써의 양심으로 가지고 이 대회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아동성착취문제를 이시대에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부각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세계경제상황이 더 견실했던 때에 더 많은 진전이 없었다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동성착취에 대항해서 더 나은 진전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전례없이 많은 지역과 조직에서 제3차 세계대회에 참석한 저의 동료들은 이 사안에 대해 크고 명료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동성착취를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시킬 것이며 전세계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능력을 배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아동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고 있기 때-

문에 우리는 계속 정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대회를 우리가 더 강력하게 연합하고 경험과 통찰력을, 지혜를 나누며, 더 많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본 대회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경외심과 놀라움, 그리고 희망을 심어주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권리와 필요,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이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른들의 상상과 꿈이 더 위대한 행동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념비적이고 숭고한 노력으로 우리는 창조주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면 훗날 우리의 아이들이 성착취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며 함께 일하며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써 우리를 이끌고 고무시키는 이곳에 참석한 그리고 이전에 함께했던 모든 이들의 정신을 기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세계대회 패널회의, 워크샵 및 토론(Dialogues) 요약

제3차 세계대회는 2008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된 패널회의, 워크샵 및 회담과 함께 5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각각의 주제 세션 도입부에서 한명의 전문가 패널이 주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였다. 패널의 프리젠테이션이후에 워크샵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워크샵은 현주세 및 현안문제, 좋은 실천사례 등을 발표한 후에 워크샵 참가자들과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민간부문, NGO단체, 음부즈만, 아동 및 청소년, 경찰 등 특정그룹을 타겟으로한 토론모임도 각각의 주제하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의 5가지 주제는 아래와 같다.

- 1) 주제1: 상업적 아동 성착취의 새로운 차원: 성착취를 위한 아동 밀매, 매춘관광을 위한 아동 성착취, 아동성집착 및 포르노그라피, 인터넷 범죄 및 관련 신기술
- 2) 주제2: 법적인 틀 및 법집행: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관련법 개정,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이행, 면책 및 책임, 특별조사를 위한 절차
- 3) 주제3: 각 분야별 통합정책: 각 분야별 공공정책 구축, 타정부간 협력, 사법시스템통합, 교육 대행기관의 역할
- 4) 주제4: 민간부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역할: 민간부문의 시장 및 자체규정,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역할 및 권리증진을 위한 신주도권, 선행사업실천, 민간주도 및 공공정책 등
- 5) 주제5: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방지를 위한 다자간 또는 지역별 메커니즘, 국경을 넘어서 범죄 및 정보시스템,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의 경험, 이전 세계대회와 관련된 사안의 진전도 모니터링 및 평가

각 패널회의, 워크샵 및 토론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온라인 파워포인트자료를 보기기를 원할 경우, 동보고서의 부록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주제1 상업적 아동 성착취의 새로운 차원 (2008년 11월 26일 오전 9:30-12:30)

주제1의 패널회의, 워크샵, 토론은 상업적 아동 성착취의 새로운 차원: 성착취를 위한 아동 밀매, 매춘관광을 위한 아동 성착취, 아동성집착 및 포르노그라피, 인터넷 범죄 및 관련 신기술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었다.

패널발표요약

패널발표: 상업적 성착취를 위한 아동밀매: 새로운 추세, 도전 및 권고

발표자: Amihan V. Abueva, ECPAT International 회장

2001년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대한 제2차 세계대회이래로 성착취를 위한 아동 밀매에 대한 수많은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본 프리젠테이션은 현재 처해져 있는 몇가지의 긍정적인 진전을 소개하였으며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활동을 위한 조언을 제시하였다.

2001년 이후의 개혁

아동 밀매방지와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개선책은 대부분 법제도와 보호장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2002년 아동밀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 등에 대한 선택의정서와 같은 새로운 국제적인 수단들이 인신매매나 아동성착취에 대해 실효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밀매 또는 인신매매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연합과 새로운 법적용의 결과로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밀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위해 해왔던 기존 방식에서 배운 교훈들을 공고히 하는데는 그동안 경험들의 영향이 커다. 신기술과 우수한 관행들은 밀매피해자를 지원하는 아동들의 밀매방지와 밀매피해자들을 지원하기위해 문서화되거나 공유되어졌다(위험에 처한 아동들이나 기피해아동을 찾아내고 더나은 기준의 보호와 지원을 약속하는 것 등의 사례가 좋은 예임). “동남부유럽의 아동밀매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UNICEF 지침(the UNICEF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 Victims of Trafficking in Southeastern Europe)”과 2002년 인권보호를 위해 UN위원들이 발행한 “인권과 인신매매에 대한 추천 원칙 및 지침(the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과 같은 밀매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각종 지침서와 신규국제기준들이 출판되었다. 2001년 이래로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사이에서 국가수준의 조정과 협력증진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다. 다양한 제도적 틀과 국가조직들이 아동밀매 및 인신매매를 막기위해 만들어져 왔으나 아직도 아들이 보호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현실이므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차원의 도전

최근 많은 국가와 기구들이 인신매매를 막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 밀매 및 성착취로부터 원조자나 정부기관의 관심을 떨어지게 하고, 상업적 아동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많은 국가나 국제기구에서는 아동 성착취를 목적으로하는 아동밀매에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않고 있다. 비록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피해 아동들이 명백하게 인식되어지거나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피해아동들의 권리와 필요가 적절하게 존중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많은 희생자들을 위한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거나 이러한 상황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정보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구체적인 숫자와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통일화되고 분야별로 구분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밀매에 의정서(Trafficking Protocol)의 채택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발전이 있었지만, "밀매(trafficking)"라는 단어의 정의가 국가마다 상이해서 개념이 이해가 어렵고 국가간 협력이 어렵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의정서상의 아동밀매의 개념은 성착취를 위해 아이들을 모으는 것을 의미하지만 ECPAT International을 포함한 많은 조직에서는 하나의 사례가 밀매사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활동들이 반영되어야만 가능하다. 모든 아동 성착취 사례가 밀매로 인식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정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옮겨지는 아동들을 위한 방지 및 지원정책들이 아동들이 살고 있는 지역내에서 성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는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에는 의정서가 국제밀매와 국내밀매 모두를 다루고 있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제밀매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밀매사례들이 국경간 이동이 없이 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밀매에 대한 의정서채택은 각 국가의 새로운 법안제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해당 법에서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지 않고 범죄를 적용하고 있다. 반드시 법집행관들이 증거들을 모아 적절한 처벌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법상에 명확한 범죄관련 규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법집행관들은 피해아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아동들이 편안을 느낄 수 있는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개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호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또한 범죄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범죄 구조를 고려할 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전략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욱 종체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유사하게,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데 사용된 용어가 (생산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실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듯한 용어인) '아동 포르노'에서 '아동 학대물'로 바뀌고 있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학대물이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점을 더 적절히 보여주기 위한 시도이다. '아동 학대 이미지'라는 용어가 아동을 대변하는 운동에서 넓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법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객관적으로 정의되지 않음에 따라, 이 범죄의 복잡한 성격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성학대에 대한 사진이 아닌 형태의 묘사(예를 들어 만화)도 범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가장의 아동 포르노 문제는 여전히 대부분 다

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실제 미성년자 없이 만들어진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절충안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존 이미지 위에 디지털 이미지 생산을 유용하게 하는 기술 진보에 따라,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아동을 잠재적인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며, 그러한 이미지에 대한 수요를 높이고, 학대 이미지를 용인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한다는 국제적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종류의 학대물 제작과 배포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는 특정한 아동에게 저질러지는 범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는 문제에 대한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시급하고 특별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이 제공하는 환경은 아동에게 잠재적으로 위해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회를 점점 더 많이 제공한다. 그 형태란 아동 성학대를 묘사하는 자료의 생산, 배포, 이용뿐 아니라, 아동과 성적인 행위를 위해 '몸단장'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유혹하는 행위, 청소년이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위해한 형식이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자료의 노출, 그리고 왕따 등 협박과 괴롭힘 등을 포함한다.

온라인 상 문제가 되는 행위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성적 학대물의 생산, 유포, 다운로드와 아동을 성 학대 및 착취로 유혹하는 행위로 구분된다. 문제가 되는 학대물에 관련된 행위 자체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신기술의 발전은 아동 학대물을 보는 사람이 쉽게 생산 및 유포자가 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문제를 악화시켜 왔다. 사실 2001년 이후 초고속 인터넷망, 브로드밴드, P2P 네트워크의 사용 등을 통해 아동 학대물을 더 빨리 생산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으며, 익명의 사람들에게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압축 및 부호화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추적이 어려운 모바일 WIFI나 선불카드 등을 통한 새로운 인터넷 접근방식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한 자료 공유 및 메신저 등과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의 결합 또한 아동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범죄행위를 양산하며, 유사한 문제행동을 하는 사람들 간 접촉이 더욱 용이하게 한다.

문제행동에 대한 조사 연구는 주로 서구사회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결과가 불명확하며, 이따금 모순되기도 하는 것 같다. 여전히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아동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의 범주를 정하는 데 문제가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시도가 때로는 그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또한 아동 성학대 및 착취 사례를 더욱 증가시키는 신기술 및 단순히 보는 것에서 아동 성범죄로 발견되는 것과의 연관성을 높이는 신기술 측면에 대하여 더 많은 증거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성적 학대물을 통해 피해를 입는 아동에 관한 특정한 정보 및 지식의 부족은 더욱 치명적이다. 알려진 피해자 수는 매우 적지만, 알려진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시도 역시 거의 없었다. 인터넷 관련 학대가 미친 영향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는 회복에 대해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잠재적으로 위해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온라인 관계의 형성 및 성적인 것을 찾는 아동 단체 또한

학대 경험을 확인할 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아동 성학대 및 착취로 인한 충격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학대물의 생산 및 배포를 통한 아동 성학대 및 착취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데, 일단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나면, 학대 이미지 속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통제가 더욱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가 학대에 대해 폭로를 해야 하는 방식 등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하는 아동 성착취 형태는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치료 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또한 아동 보호 시스템은 더 나은 법집행과 더 나은 아동의 회복 및 지원을 위해 재검토되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훈련된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는 부족하지만 장기간 아동 피해자 치료에 참여하기 위해 실무자들은 더 많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결론 및 권고사항

아동 포르노와 아동의 온라인 성착취가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시공간 영역 내에서 계속 진화되어 가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더욱 협력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대응은 제한적이며, 주로 일부 범죄 유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더욱 효과적인 협력, 조사, 개입,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체적인 아동 보호 수단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의 역할과 세계적인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에는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아동 성학대물을 보는 것과의 관계에 대한 것뿐 아니라, 청소년 발달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 환경이 주는 함의, 대량의 성적 자료의 접근 가능성의 파급효과,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 청소년들이 그들의 성을 탐구하고 잠재적으로 해로운 상황에 노출될 기회 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실은 적절한 아동보호 메카니즘의 실행을 위해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아동 포르노와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를 보다 종합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교육 캠페인 수행을 계속하고, 캠페인이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권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과 함께, 신기술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핫라인과 법집행기구에서 만든 수많은 보고서가 일부 범죄자 체포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온라인상에서 아동 보호를 증가시킨 사례와 프로그램의 발굴을 위해 공공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자를 교육시키고 온라인 안전을 위한 도구를 공급함에 있어서 산업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산업부문에서는 학대 내용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불법적인 내용에 대하여 법 집행기구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것을 권한다. 또한 지속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범죄의 특성과 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여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에서는 신기술의 역할과 그것이 사회구조와 아동 관련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연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야 한다.

폐널 발표

상업용 아동 성착취: 형태와 새로운 추이

아동 매매, 매춘 및 포르노 분야 특수 조사관 나잣 말라 므지드(Najat Maalla M'jid) 박사 발표

이 자료는 불어로 작성되었으며, ECPAT 인터네셔널이 번역함

이 패널 발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미래 프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한편, 매춘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성착취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일반적 추세와 원인, 주요 형태와 표현방식에 대해 강조하였다.

아동 매매, 매춘, 포르노에 관한 선택적 프로토콜(optional protocol)에서는 아동 매춘을 ‘금전적 혹은 다른 형태의 대가가 이루어지는 성적인 행위에 아동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매춘은 아동 성착취의 한 형태이며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몇몇 국제기구들은 아동 성착취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 권리에 대한 협정(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특히 선택적 프로토콜뿐 아니라 ILO 협정 182조, 1996년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대항하는 스톡홀름 선언, 2001년 요코하마 세계 서약(Global Commitment),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협정(및 아동 및 여성 등 인간 매매 방지, 금지, 처벌을 위한 보완적 프로토콜), 인간 매매에 관한 유럽의회 협정, 성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의회 협정 등에도 나타나 있다.

아동 매춘의 형태

매춘하는 아동의 성착취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정보와 믿을 만한 데이터 부족이 눈에 띄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이는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이 주제가 여전히 금기시되는 것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결과일 것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정부 혹은 NGO 단체 중 하나가 아동 섹스 관광 혹은 성적인 의도로 이루어지는 아동 밀매와 같은 상업적인 아동 성착취의 어느 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아동 매춘 사례에 대한 보고는 상당히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동과 그 가족은 차별이나 수치심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많은 나라에서 매춘은 범죄이기 때문이다. 혹은 신고절차가 아동들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흔하다. 불행하게도 이는 문제의 범위 인식에서의 차이, 적은 수의 샘플에서 단편적 데이터 추출 및 비과학적인 방법론의 사용,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체계의 부족 등도 원인 되었다.

매춘 아동의 성착취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을 협박하거나 일이나 비자를 준다고 속일 수도 있으며, 부모나 친척이 직접 연결할 수도 있다. 착취는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길거리나 술집, 사창가나 해변, 관광지 지방 마켓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남아들이 젊은 소년들과 독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자 하는 외국인 소아성애자나 성착취자(남성과 여성 모두 될 수 있음)의 타겟이 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여아들이 남아에 비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보면, 여아 피해자의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

특정 요인

매춘 아동의 성착취는 빈곤, 아동 매춘에 관대한 특정한 사회적 규범, 기존 섹스 산업, 다양한 형태의 착취에 아동을 방지하는 등의 인도적 차원의 위기 등과 같은 몇몇 요소들이 얹혀있는 교차점에서 발생한다.

일부 특정한 사회적 규범은 아동 매춘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생산할 수도 있다. 섹슈얼리티는

금기시되는 주제로서, 집이나 학교에서 이에 대해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경우, 아동은 성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많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은 여아와 여성의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며, 잠재적으로 착취의 책임이 여아 본인에게 돌려지기도 한다. 여아 매춘의 경우 늘 성착취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여아의 성적인 행동이나 태도의 결과로 여겨지기도 한다. 반면 남아의 경우에는, 특히 동성애와 관련되어 있을 때, 감추거나 금기시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별 아동보다는 가족의 명예나 커뮤니티의 보호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데, 이는 아동 매춘 사례를 국가법이나 국제적 기준보다는 전통법이나 상호 합의의 영역으로 미룬다. 가족 해체, 확대가족의 붕괴 및 개인주의화된 가족구조 모델로의 전환 등과 같은 사회화 과정과 전통적인 보호 기제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아동 보호 체계 실시에 실패하면서, 많은 사회에서 중요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전쟁, 빈곤, 자연재해, 에이즈의 확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아동들이 성착취와 같은 가족을 위한 생존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 세계화는 상품의 소유를 높게 평가하며, 특히 청소년 집단이 이러한 상품에 접근하는데 관대한 소비주의 모델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든다. 소비주의의 사회화를 이끄는데 있어서 신기술의 역할 및 소비주의가 청소년층에 가하는 압박은 청소년들을 취약한 위치가 되게 하며, 성착취로 이어지게 하기도 한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의 발생 및 아동 성착취와의 관련성이 최근 보고되고 조사되고 있다. 에이즈에 걸린 아동은 특히 성착취에 취약하며, 상업적 성착취 피해자는 에이즈에 취약하다. 아프리카 내에서만 3백만명 이상의 아동이 에이즈로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되고 있다. 이 아동들은 차별받을 뿐 아니라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혹은 집안의 가장이 되어 아동 매춘과 같은 착취적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한편, 상업적 성착취 피해자인 아동들은 에이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고,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성착취자와 성관계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다.

빈곤과 불안정한 상황은 아동이 성착취에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다. 자연재해, 소요, 대규모의 농촌의 탈인구화와 무계획적인 도시화, 고도의 경제 불균형, 실업, 부족한 기회와 전망을 겪었던 국가는 적절한 아동보호 기제와 (아동이 성착취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구조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아동 출생신고(child birth registration)는 여전히 아동이 자신들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갈등 및 자연재해는 폭력, 불안한 치안, 생활조건의 악화, 인구의 이전(외국인, 군인, 인간주의적인 노동자), 아동 성착취를 야기하는 국가 구조의 약화 등을 초래한다.

개다가, 아동은 성인 섹스산업에서 성착취를 당하기도 한다. 섹스산업은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수익이 나는 사업이다. 이는 국내외 고객을 상대하는 관광개발과 연계되기도 한다. 익명에 통제가 안 되는 방식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은 성적인 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 네트워크가 크게 조직되어 있는데, 이들은 국가 통제의 부재와 섹스산업에서의 매춘을 목적으로 연약한 아동을 밀매 조직에 대해 상대적인 불처벌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매춘으로 착취되는 아동

매춘으로 착취되는 아동은 빈곤, 가정폭력, 가족해체 혹은 이별 등으로 가정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 출신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가정 외에, 많은 매춘에 종사하는 많은 아이들은 가족 자체가 완전히 없는 경우에 직면한다. 이들은 고아, 길거리 아이들(홈리스), 이민 아동, 아동 노동자, 밀매의 피해자이거나 구류 중인 아이들일 수 있다. 다양한 수준에서의 구조적인 아동보호 기제의 부재는 아동이 매춘의 함정에 빠지거나 강요당하기 쉽다. 다른 한편, 친구들의 압력이나 소비주의의 결과로 중산층 사회 출신 아동이 상업적인 성 착취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도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

일반적 추세와 권고사항

다양한 상업적 아동 성착취 형태가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필수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 성관광의 개발은 아동 매춘, 여행지에서 아동 밀매, 아동 포르노의 제작 및 배포를 증가시킨다.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아동 성착취 간 연관관계 역시 개별적인 성착취와 함께 고찰해야 한다. 최근에는 관광이나 밀매와 같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의 '흐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며,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자와 매춘과 관련된 아동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와 아동의 권리의 해치거나 해를 가하는 활동 간 연계에 대해 보다 주의깊게 조사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국가는 아동 매매, 매춘, 포르노 등에 관한 선택적 프로토콜을 시급히 비준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법제도를 국제적 차원의 제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특히 성착취 피해자를 범죄자로 내몰지 않음으로써, 매춘과 관련된 행위로 처벌받지 않으며, 아동의 (성착취에 대한) 동의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도록 한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다른 법적 기제로는 경찰 및 판사에 대한 특별훈련, 신고체계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 보장, 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안 등을 보장해줌으로써 보다 아동친화적인 조사절차를 만드는 것 등을 포함한다. 피해자 지원 기제는 강화되어야 하며, 보상을 포함하여 보상 차원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과 그 가족에 이들의 권리와 법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범죄자에 대한) 불처벌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식의 확대와 관련하여, 매춘에 종사하는 아동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성 행위에 대한 금기를 없애 아동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를 받도록 하며, 아동 혼인이나 강제 결혼과 같은 아동 성착취를 가져올 수 있는 해로운 전통적 요소를 없앤다. 커뮤니티의 유동성(mobilisation), 가정교육, 성평등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촉진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피해자의 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아동이 적절히 훈련된 직원에 의한 양질의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친화적 조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 및 돌보기 프로그램 개발은 매춘에 대한 대안적 생활 및 지속가능한 재결합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히 계획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이 매춘으로 다시 빠지지 않도록 물질적, 재정적 지원 등과 같은 지원체계를 공급하는 것이다. 수행된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적절히 감독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동이 장기간 보호받고 후속조치를 받아야 한다.

방지를 위한 메카니즘은 취약한 사람들의 온전한 사회적 서비스 접근, 모든 아이들의 동등한 기회, 출생신고, 아동 및 아동에 대한 특수한 보호(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취약한 상황(예를 들어 고아, 홈리스 아동, 이주민 자녀 및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등)에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 기제, 밀매 네트워크에 대한 투쟁 및 특정 시행령(codes of conduct)의 적용 및 시행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의 참여가 대상 아동을 대표하는지, 아동이 적절한 정보에 접근하는지, 아동의 생각이 고려되고 있는지, 아동 참여가 언제가 독려되고 지원되고 있는지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

부문 간, 부문 내 협력은 아동 보호 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 이는 규칙적으로 평가받고 민간과 지자체 조직도 함께 꾸려진 공식화된 파트너십의 개발을 뜻한다. 초국가적인 조직범죄 네트워크에 대항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모든 대응수단과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모든 아동을 위한 강력한 아동 보호 틀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아동의 이해를 최선으로 여기는 원칙으로 이끌어져야 한다.

각국 정상 부인이 참여한 고위 정책 대담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에 관한 특수 조사관 나자트 므지드(Najat M'jid) 박사 발표
이 발표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며, ECPAT 인터내셔널에서 번역하였다.

각국 정상 부인 대담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예를 들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아동권리에 관한 협정 34조(국가 정당은 모든 형태의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적, 양자간, 다자간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성학대에 관한 범조직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CSEC에 관한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교육시스템 등 전적인 아동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위험한 상황을 없애기 위한 “영부인의 친구들(Friends of the First Lady)”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폭력 문제에 대해, 특히 IT 산업분야와 협력하여, 수많은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가는 경제적, 문화적 이슈를 사회 문제와 연결하고 있으며, 사회적 보호 및 추진을 위한 대규모의 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쿠바에서도 아동 보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응하는 노력이 많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음이 판명되었다. 고통(misery), 빈곤, 사회적 배제는 아동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지는 핵심 조건이고, 많은 아동들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성착취를 당한다. 그러나 아동 착취와 폭력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부를 이용하여 아동을 착취하기도 하는 등, 모든 사회적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보다 국제적인 법제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람들, 정부, 국가 차원의 통합된 행동이 필요하다.

이 대담 참여자들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들과 함께 추진하는 데 우선권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나이가 아동 및 청소년은 핵심적 주체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3차 세계 대회는 이러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 및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담의 말미에,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싸움이며, 미디어, 가족, 교회 등이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워크숍 요약 (45쪽)

워크숍 1 – 지역 및 국제적인 밀매: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적 차원의 아동 및 청소년 밀매 패턴

이 워크숍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제스민과 로지, 인디아의 락키와 수스미타, 네팔의 쉴라와 람 마야는 ECPAT 인터내셔널 남아시아 연합 및 남아시아의 ECPAT 인터내셔널 청소년 파트너십 프로젝트인 “아동 밀매 반대투쟁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 참여: 우리끼리 돋기에서 국제적 응호로(from peer support to international advocacy)”에 관해 발표하였다. 또한 스웨덴 보건 및 사회정책과 장관이자 WGCC 의장인 아그네타 블이크룬드(Agnete Bjorklund)와 WGCC 회원이나 에스토니아의 사회국 장관인 앤니 티커푸(Anniki Tikerpuu)는 “발트해 연안 국가에서 보호자 없이 밀매된 아동에 관한 WGCC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인간 밀매에 반대하는 코디네이터 이자 브라질 정의부서 장관인 신티아 비칼호 우초아(Cyntia Bicalho Uchoa)는 “인간 밀매에 대응하는 브라질의 국가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좌장: 무레안 오브라이언(Muireann O'Briain) – 유럽연합 아동 밀매 전문가 그룹 회원
조사관: 레나타 코카로(Renata Coccaro) – ECPAT 인터내셔널

세계 여러 부문에 대한 경험은 아동밀매의 다면적 특성을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부터 지방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행동 등과 같은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워크숍에서는 남부 아시아, 북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의 사례들이 소개되었는데, 특히 반 밀매 활동 및 국가,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남부 아시아 상업적인 성착취를 견딘 아동을 위한 ECPAT 청소년 파트너십 프로젝트(YPP-SA)는 방글라데시, 인디아, 네팔에서 4년 동안 운영된 정평이 난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예를 들어 취약 아동에 대한 연구, 범제 개혁 촉진 주도, 의식향상 캠페인, 성착취로부터 회복기에 있는 아동에 대한 일대일 상담, 동료(peer) 지원학교 등), 위험에 처해 있거나 살아남은 아동 모두는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밀매 등 CSEC를 막고 투쟁하는데 힘을 키워 왔다.

스톡홀름 1차 세계대회 직후 만들어진 발트해 국가 위원회 내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실무 협력 그룹(WGCC)에도 아동 및 청소년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아동과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보호자 없이 밀매된 아동, 거리나 시설에서 사는 아동 및 아동 전과자 등과 같은 다양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문은 어떻게 피해자와 면담을 하며 가족 치료를 공급할 것인가 등 학대받은 아동을 다루는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양한 WGCC(예를 들어 전문가 회의, 국가적인 핵심과 웹사이트의 구축, 밀매되었다가 지원을 받는 아동에 대한 정보구축 등) 활동 덕에, 아동 밀매에 대항하는 지역 차원의 협력이 최근 상당히 향상되었다.

브라질에서는, 2008년 1월 채택된 인간 밀매에 대항하는 국가차원의 행동 강령의 중심에는 활동적인 반밀매 기구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이 국가정책의 결과, 인간 밀매 투쟁 부서(unit to Combat Human Trafficking)가 브라질의 여러 주(States)에서 만들어졌다. 이 부서는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및 법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밀매된 사람의 등록과 회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주의 핵심적인 연락처이다.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밀매를 막고 대항하는 것에 관하여, 여타 지역에서 이루어 낸 전적에도 불구하고, 취약하고 밀매되었던 아동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피해자를 가려내고, 그들에 대한 특수한 수요에 부응하는 것과 함께 국내 밀매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유사하게, 밀매 경험이 있는 아동을 위한 지원이 모든 국가에서 주류의 국가정책이 되어야 한다. WGCC의 경험에 따르면, 훈련은 피해자를 위한 더 많은 아동친화적인 지원 서비스를 가져오게 되었으나, 이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책임감 있는 부서의 협력에 기반하여 기준 구조 속에 만들어져야 한다. 나아가 역량강화가 더욱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도록 그 내용이 업데이트 되는 것뿐 아니라 단순히 생색내거나 피해자의 관점을 추상화 시키는 것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새로운 연구와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배포할 필요가 있다. 위험에 처한 아동과 성착취 생존자를 계획 및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실행에 참여시키는 것이 더욱 적절하게 관련 아동들의 특수한 수요에 부응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워크숍 2 –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밀매: 성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및 청소년 밀매의 세계적 패턴

이 워크숍에서는 남 아프리카 국가 아동 복지 실무 부장(Executive Director) 애슐리 테론(Ashley Theron)이 “아동이 밀매에 취약하게 되는 요인”으로, 알바니아의 ACTSEC의 알틴 하자이(Altin Hazajai)와 아프리카 WAO의 클레오파스 말리(Cleophas Mally)는 “성착취를 위한 아동밀매와 여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밀매와의 연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나이지리아 NAPTIP의 무하메드 바반데(Muhammad Babandede)는 “나이지리아 국가 경험”에 대해 발표하였다.

좌장: 타이스 두메트 파리아(Thais Dumet Faria) – 브라질 ILO

조사관: 빠에르 폐리 –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 UNICEF

세계 공통적으로, 아동밀매 정책의 핵심적 요소는 아동의 더 나은 삶과 기회 추구, 고용 및 아동의 가정을 지원하는 능력 등이다. 현재 시민사회에 의해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도) 쓰이는 아동 밀매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대변(advocacy), 로비, 정책개발, 커뮤니티 개발, 역량강화, 초기 개입, 아동이나 청소년의 참여,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수단을 넘어, 아동 밀매에 대항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근본 요소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통한 추진이 없다면 이는 성공할 수 없다.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밀매와 싸우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는 더욱 노력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기구와 시민사회가 함께 일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거나 제도화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함께 그런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은 협력을 위한 각자의 힘을 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아동 밀매에 재정적 지원을 할당하거나 시민사회 조직과 협력 하에 다양한 주체 간 협력에 드는 비용을 위한 예산을 만들거나, 아동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정보조를 만드는 형태의 기여를 할 수 있다.

지역 및 국제적 밀매에 대항하는 것을 지체시키는 또 다른 문제는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의 밀매 프로토콜에 대한 해석 차이에 있다. 현재, 수많은 나라에서 밀매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

하고 이해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를 범죄자로 다루는 나이지리아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법 집행 기구에서 밀매 피해자를 규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한다. 본국송환과정 또한 밀매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설명한 것처럼 아동 밀매에 대항하는 후속 작업에 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전적이다. 남아프리카 아동 복지(CWSA)는 부족한 사회복지사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자원봉사자 배출하고자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한다. 알바니아에서는 법집행기구의 강화 덕분에 정부부처 간 협력이 증진되었다. 토고의 아프리카 WAO는 아동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 참여가 중요한 요소라는 교훈을 얻었다.

알려진 특수한 권고 사항으로는 이해 관계자의 아동 밀매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것을 포함한다. 현재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만들어져야 하며, 정부는 아동 밀매와의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또한 인간 밀매와 아동 밀매에 대한 정의가 일관성 있고 밀매 프로토콜에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아동 밀매에 대항하고 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부기구와 시민사회 간 성공적인 협력이 많아지도록 국가 차원의 기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아동 밀매를 중요한 사안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의 실행을 주도해야 한다.

워크숍 3 – 국내 밀매

이 워크숍에서는 ASBRAD(여성, 아동, 청소년의 방어를 위한 브라질 협회)의 달릴라 피구레도(Dalila Figueiredo)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밀매된 아동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ECPAT EICYAC 청소년 대표이자 CSEC에 대항하는 러시아 연맹 STELLIT의 아나 마리아 크라첸코바(Anna-Maria Khramchenkova)는 “페페스부르크 거리에서 CSEC의 아동피해자와 협력하는 청소년”에 대해 발표하였다.

좌장: 앤리타 도즈(Anita Dodds) – 차이드 와이즈(Child Wise)

조사관: 패차리본 사쿨피탁폰(Patchareeboon Sakulpitakphon) – ECPAT 인터내셔널

국경을 넘는 밀매 혹은 국제 밀매와 비교하여, 국내 밀매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갖는 대상이다. 국내 밀매에 효과적 대응 및 방지가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국내 밀매에 관한 믿을만하고 정확한 지역별 데이터의 부족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 밀매 방지 활동을 하는 ASBRAD라는 시민단체는 브라질에서 아동의 국내밀매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특히 국경지역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기록을 다 남기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기록이 남아있는 것들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밀매 프로토콜과 밀매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밀매의 정의에 대해 오해하여 밀매를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경우로만 생각하는 실무자들(practitioners)이 있다. 게다가 국제적 기준의 인간 밀매와 밀매 프로토콜과 일치하는 효과적인 국가 법제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 중 하나는 국내 밀매를 막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의 대중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에이즈로 인한 고아를 돌볼 수 없어서 버리는 것처럼 무지로 인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아동이 밀매 범죄자가 되는 경

우도 있다.

시민사회와 법집행기구 간 더 나은 협력을 위해 국가의 위탁 메카니즘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 아동보호 및 국내밀매 피해자를 위한 복지시스템 부서(place)가 있어야 한다.

(법의 전문성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어떤 사례들은 (국내든 초국경적인든) 밀매의 경우로 유형화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밀매에 대응하는 활동에 청소년층을 참여시키는 것은 강조해야 할 교훈 중 하나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 사례연구는 러시아의 ECPAT 회원그룹인 STELLIT라는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은 상업적 목적의 아동 성착취 및 인간 밀매에 관한 훈련을 받고, 전문가들과 함께 러시아 폐테스부르그 거리에서 아동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을 한다. 또래 집단의 일대일 모델(peer-to-peer model)은 CSEC와 국내 밀매 피해자인 아동을 위한 아웃리치에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밀매 및 국내밀매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동의하고(이는 도시 및 지역 내 아동의 이동에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는 것), 국내 밀매 (및 그와 연관된 초국경 밀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등록할 것인지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국내밀매 수요를 막기 위한 적절한 활동을 창출하며, 이러한 활동 및 대응수단에 청소년층을 참여시키고, 정부로 하여금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국가 차원의 위탁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아동 밀매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로 이루어진 태스크포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권고한다.

워크숍 4 – 아동 및 청소년의 이민과 이주

이 워크숍에서는 영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다니엘라 레알(Daniela Reale)이 “이민과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 보호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아동 매매, 매춘, 포르노에 관한 특별 조사관인 나자트 므지드(Najat M'jid)는 “이주한 아동의 인생 설계 가능성, 개별적인 사례평가의 중요성, 국제적, 부문 간 협력 추진의 필요성, 보다 구체적인 의미”에 관해 발표하였다. 영국 세이브 더 칠드런의 에델 실란(Edel Silan)은 “그레이터 메콩 내 지역 내 국경지역의 아동 보호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리아 루즈 귀티레즈(Maria Luz Gutierrez)는 “이민 서비스 핸드북 계획과정, 밀매된 아동의 확인, 지원, 보호 과정에서 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브라질 Policia Rodoviaria Federal의 지오반니 디 맘브로(Giovanni di Mambro)와 소더 주레이시(Sodre Juracy)는 “연방 고속도로 경찰이 위험에 처한 아동을 식별하는 방법 및 사례에 대한 대응”에 대해 발표하였다.

좌장:マイク ドットリジ(Mike Dottridge), 세이브 더 칠드런

조사관: 에일라 카자르-하모다(Eylah Kadjar-Hamouda), 세이브 더 칠드런

이 워크숍의 핵심 주제는 이주 및 이민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 보호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것이다. 국경 지역에서의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아동의 본국에서 가려고 하는 국가 내 조직으로부터 개별 아동에 관해 적당한 요구사항에 종종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넓은 국제적, 부문 간 협력도 요구된다.

아동이 재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동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경찰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하는 등 정부부처 및 법집행기구의 역할이 커졌다. 밀매된 아동을 찾고, 보호하

고 지원하는 이민 서비스에 관한 핸드북을 계획하는 과정에 참여할 필요성과 함께, 훈련 자료에 대한 발굴 및 실험을 하는 법집행기구 공무원 및 이민 관련 기관의 직접적인 참여 역시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이주가 늘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여행의 좋은 점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가정을 떠나 혼자 여행을 시작하는 연령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주하는 아이들은 대안적인 생활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주하는 모든 아이들을 학대의 피해자로 분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헤어지게 된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사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혼자 이주한 아동(individual separated children) 문제에 대해서는, 부문 간 및 초국가적 협력이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 아동이 이주와 이민을 할 때 보호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한다. 이주하는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

아동과 접촉해야 하는 경찰 및 여타 전문가들은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며, 훈련과정, 자료 및 핸드북의 개발 및 실제 테스트에 참여해야 한다. 이주하는 아동은 눈에 잘 안 띠기 때문에 이런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불구하고, 그러한 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관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고심해야 하며 더 적절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워크숍 5 – 밀매 (메카니즘과) 피해자 지원 메카니즘

이 워크숍에서는 이탈리아 ECPAT의 마르코 스카파티(Marco Scarpati), 필리핀 ECPAT의 돌로레스 알포테(Dolores Alforte)와 “Seven Capital Feeling: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라는 책의 저자이자, 브라질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재단의 글로리아 디오제네스(Gloria Diogenes)가 발표하였다.

좌장: ECPAT 인터내셔널의 알레시아 알타무라(Alessia Altamura)

조사관: ESPAT 인터내셔널의 크리չ나 피몬사엥수리야(Kritsana Pimonsaengsuriya)

일부 밀매를 통해 아동이 들어오는 국가에서는,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의 국적이나 이주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동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해 준다 (예: 이탈리아). 그러나 아동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이 워크숍에서는 회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에 관한 것을 인식하고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동 밀매와 싸우는 과정에서, 구출 및 회복 프로그램뿐 아니라 보호를 포함하는 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의식향상, 위험에 처한 아동보호, 회복 및 재통합, 임시거처, 고발 및 아동 참여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재밀매에 대한 예방 차원의 대응수단으로서, 아동 피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호 메카니즘에 대한 통합적 접근방식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술 교육 및 경제적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대안적 학습시스템, 기술개발 및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에 관하여, 공공이나 기부에 의존하는 제한적 장학금 지원, 높은 교육비와 물가, 공공교육시스템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기준 등과 같은 제약이 아동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필리핀 ECPAT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은 민간 교육기관(필리핀에서 가장 크고 명성 있는 대학 중 하나)과의 협력이라고 한다. 대학이 필리핀 ECPAT과 협력하여 아동 피해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관된 지원을 한다는 사회적 의무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아동의 재활 면에서, 어떤 쉼터도 단순히 아동 피해자가 와서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지원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공간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개별적인 아동 피해자가 충격적인 경험에서 회복되고 적절한 장기 보호(통상적으로 2년 정도가 필요함)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문화 중재자 또한 문화적 장애를 지원할 뿐 아니라 보호계획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자유, 독립 및 두려움과 연관된 이슈들은 보호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밀매로 인한 아동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개별적인 계획에 기반한 장기간 지원을 제공할 것이 권고되었다. 이 과정과 실행에 있어서 아동의 참여는 적절히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피해 아동이 장기간 보호를 받아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피해 아동의 재활 및 재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기보호의 공급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차이는 부적절한 재정자원 때문만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필요를 담아냄에 있어서 장기적인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초기 단계의 구조와 대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이나, 후반에는 지원이 줄어들게 되며 필요한 지원 없이 아동이 방치된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

Workshop - 6

인간 부정 거래에 맞서는 교수들의 능력 향상

네덜란드 ECPAT의 Theo Noten '아동 보호 네트워크와 각 전문 분야 협력팀의 기반을 갖춘 커뮤니티: 능력 쌓기와 협력의 문제'; 그리고 ILO/ IPEC의 Hans van de Glind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 June Kane의 '부정 거래를 반대하는 교수들의 능력 형성을 위한 새로운 자료들'로 워크샵 구성.

사회자: 유니세프의 Sarah Norton-Staal

조정위원: 유니세프의 Joachim Theis

부당거래 반대 작업에서의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돋는 서비스 제공 혹은 복잡한 현상을 맞서고 예방하는 교수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지난 몇 해 동안, 관련된 활동 참가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촉구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유럽의 법률 시행 단체 ECPAT와 ILO/IPEC의 경험 사례를 발표하였다.

교육 자료는 특정 교수들의 부족한 능력과 트레이너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적 인력 및 법률 시행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준비 단계의 연구 결과로서 ECPAT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두 가지 매뉴얼로 제작되었으며(그 한 가지는 트레이너를 위한 교육 가이드임), 법률 제정 및 지역 의사소통에 관한 필요한 특정 사항들을 드러내 보이면서 12개국 각국 상황에 적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다양한 투자 그룹을 형성하기 위하여 법률 시행 전문가와 사회 인력 및 학대 된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책임이 있는 자들을 훈련하여 얻는 이점에 대해 강조했다.

이러한 교육 유형(남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진행이 완료된 교육이다)은 상당히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이는 위험에 처한 아동과 아동 피해자를 향한 태도를 개선시켰고, 성적 목적의 대상이 되었던 아동 부당거래의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력 및 네트워크를 향상 시켰다.

최근, ILO/IPEC은 '아동의 노동 착취 부당거래에 대한 투쟁'이라는 제목의 가이드(즉, 정책 입안자와 변호사를 위한 자료모음)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는 ILO/IPEC와 이들의 파트너의 지난 10년간의 작업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IPEC 이 지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아동 부당거래와 싸우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계획, 시행,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료모음은 독립되면서도 상호 연관성이 있는 5 권의 책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부당거래를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률 및 정책적 체계와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 또한 예방 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 사항까지 그 주제는 다양하다.

특정 아동 부당거래에 대한 노동의 범위를 강조하기도 했으며, 이는 단순히 국내 노동에 부당거래된 아동들이 특히 성적 착취에 노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직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훈련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이미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난) 젊은 생존자들이 또 다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ILO는 1주간의 교육 코스에 대한 개요를 선보이는 교육 패키지를 만들었으며, 이는 1주 그대로 채택되거나 필요에 따라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워크샵은 다종 부문의 교육이 어떻게 다이내믹한 접근 작업을 이뤄 낼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교육 자료의 실용적인 적용방법에 관한 논의로 마무로 되었다.

아동 부당거래에 대한 능력 형성을 위한 활동들을 보여준 위와 같은 사례들은 최근 몇 해 동안 향상되어 왔지만, 이러한 활동의 유효성은 여전히 개선 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의 자원 자료의 급증 및 적극적인 추진력을 고려하여, 추천할 만한 첫 번째의 행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육자 및 참석자의 각각의 필요에 적합한 도구 적용을 위해 관련된 분야의 기관을 포함하여 글로벌 전자 네트워크를 생성해내는 일이다.

게다가, 아동 부당거래 화제를 관련된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의 능력 형성 추진을 계획하는 부분에 좀 더 확산된 참여가 필요하다.

Workshop - 7

대안관광과 최신 트랜드의 새로운 시나리오

일본 유니테스 위원회 부위원장 Yoshihisa Togo와 인도 Equations NGO인 Vidya Selvamony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이탈리아 유니세프 인노첸티 연구 센터의 Susan Bissell

조정위원: ROSA 유니세프의 Guillemette Meunier

수많은 아동들이 관광업과 여행 환경에 직면하여 위험에 노출된 상황들을-해결을 위한 여러 도구들 가운데-적합한 법률(그리고 적절하게 시행된 법률)과 행동 규약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또한 어느 특정한 긴급한 상황 때문에 보호 조치가 우선시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정부와 사적 영역의 참여자들과 더불어 비 정부기관의 상호작용은 취약한 아동에게 향한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여행자들에 의한 위험을 예방 할 주요한 반응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관광 기업의 참여는 좀 더 범위를 넓히고, 나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아동 성 관광업에 관련한 이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할을 위해 준비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인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년의 성 착취와 같은 몇 가지 아동 성 관광업에 관한 요소들이 여전히 과소평가 되거나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외국인 가해자들의 상대적으로 나은 가시성(visibility) 때문에, 관광업 착취 이용자 무리의 국제적 요소들이 종종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그렇기는 하지만, 국가 여행 및 관광업에서의 아동 성 착취의 증가와 비교하여 외국인들의 체포 및 기소하는 일이 드물다.

게다가, 모든 유형의 숙박 시설업체 들은 착취 사례들을 고의적이던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은폐 하려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 관광 산업은 이러한 상황(그리고 현상을 설명하는 국제적 기준 및 법률)을 무시한다.

이와 같이 서비스 및 관광 산업은 인식의 증가와 NGO와 협력하여 달성을 할 수 있을 만한 적합한 교육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목표화해야 한다. 즉, 관련 관광업 인가에 제정된 더욱 엄격한 규정을 통해 이뤄야 할 것이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규정들 또한 산업 전체의 행동 규약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적 채택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필요 차원에 관한 가능성뿐 아니라 성공 가능한 규약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 참여자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추가영토 법률이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완벽히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국경을 넘어 사법의 협력에 관한 법적 요건(특히 금전적인 부분과 아동 보호에 관련한)의 인식 실패는 잠정적으로 중요한 도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NGO는 특별한 방식으로 사적 영역의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종종 실패 했다. 이는 그들이 사용하는 접근 방식의 결과로써,

관광업이 여전히 적대적으로 보이고 그러므로 호텔업이 자신들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 지길 원하는 암묵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호텔 분위기에 피해를 끼치게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NGO와 관광 산업 사이의 가능성 있는 파트너십은 충분한 목적을 갖고 계획되어야 한다.

글로벌화를 위해, 국가 유니세프는 UN기준 및 가이드라인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절차들을 진행시키는 반면, 의도와 목적의 통합을 촉진하는 프로파일을 증가시켜야 한다.

반면, 행동 규약 준수에 관하여 좀 더 많은 양과 개선된 연구 또한 필요하며, 이는 그들의 유효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강화 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절하게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 및 독지활동은 이따금 취약한 아동들과 접촉하는 성 착취 가해자들에게 이용된 또 다른 전달자임을 이제 입증되었기 때문에 행동 규약은 NGO 스스로가 채택해야 할 사례가 될 것이다.

Workshop - 8

가상 세계에서의 상호작용 및 '아동,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관련된 영향

Grupo Manos por la Niñez y la Adolescencia의 청소년 대표, Zulyvic Mejias Recanetini와 Ruben Valero Rodriguez; 브라질 구글사 정책 위원회의 Ivo Correa,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 Sen. Magno Malta; 브라질 연방 경찰의 Carlos Sobral, Rio de Janeiro 검사 Ana Lucia Melo으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브라질 연방 의회의 Paolo Henrique Lustosa

조정위원: 폐루 유니세프의 Ruth Feuk

인터넷 및 다른 의사소통 과학기술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처한 위험성은 갈수록 분명해지는 반면, 미디어 사용의 금지 혹은 제한만으로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인식의 증가 및 새로운 법안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하여, 탁월한 성과는 아이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디어 채널 사용에 관한 주의를唤起하는 전제적인 방향으로의 가족 가이드 안내를 통하여 이뤄 질 수 있다.

브라질 구글사의 사례를 보면, 정보 기술 관련 기업들이 '확인 및 감독'에 자유로운 인터넷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발상을 통과 시켰다.

이러한 웹 페이지들은 불행하게도 아동 포르노와 아동 성적 착취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 가해

자들을 위하여 비교적 접근이 쉬운 환경과 직접적인 매개수단으로서 활용되어왔다.

웹상에서의 부정거래와 의심되는 행동들을 감시할 중요한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이 영역에 관해 더 넓은 형태의 협력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처음에는 대형 다국적 기업의 협력적 참여가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겠지만, NGO 및 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쟁점을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현재 브라질의 구글사와 정부의 협력은 이러한 관점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비춰진다.

상호간의 협력은 과학 신기술로 인하여 피해 입은 아동들의 성적 착취 범죄 논란에 관하여, 효과적인 범죄 방해 도구들을 세밀히 조정을 위한 경찰 및 법 제정자들의 향상된 정보 교환력과 전문 지식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유용한 입증 자료들을 확보 할 수 있다.

이는, 문제의 새로운 부분들을, 초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처럼, 해결을 하려고 할 때와 목표에 바로 뒤 따라갈 많은 요소들이 실행 될 필요가 있을 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잠재적 성공 가능성을 가진 방법이다.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진보는 끊임없이 현재의 규범에서 새로운 혁신을 점이 나타날 수 있게 하므로, 이와 동시에 국가들 사이에 협력이 상당히 향상시켜야 하는 반면에 미래의 권고 행동 사항에 관하여, 많은 사항들이 입법 전면에 나타나야 한다.

새로운 법률과 현존하는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은 문제 초점이 될 필요가 있는 법률 요소들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호 협력 모델은 완벽해야 하며, 아동 성적 착취 범죄 해결을 위한 홀륭한 역할을 지닌 모든 분야의 활동기를 참여 시킬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마침내, 협력 모델의 확대를 위해 전체적으로(교육, 인식의 증가 등을 통한) 커뮤니티와 사회의 참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Workshop - 9

가상 세계에서의 피해와 관련된 취약성과 회복력, 그리고 치료 반응

Plan West Africa의 Dede Houedakor씨의 '성폭력과 학대 아동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사회적인 지원 공급과 정신 건강 조정을 국가 건강 전략으로의 통합'이라는 발표와 Baltic Sea States의 Lars Lööf씨의 '희생자들의 도움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의 아동 학대', Stop it Now! UK & Ireland의 Tink Palmer씨의 '희생된 아동 혹은 온라인에서 또래들과 성적으로 행동을 가한 아동'이라는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국제 ECPAT의 David Butt

조정위원: 국제 Plan의 Dulcey Bower

성적 착취 피해 대상이 된 아동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치료 반응 유형들을 파악하는 것은 가상세계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경험에 의해 그들의 정신적 외상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성적 착취의 취약성에 관한 다양한 유형들이 서아프리카에서 실시된 다국적 연구에서 발표 됐다. 여기에는 사회성 및 인식 발달에 피해를 주고 어린이들이 위험 행동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는 가정 폭력의 노출과 같이 성적으로 부당하게 이용되어 더욱 위험에 놓인 아동들이 가진 다양한 취약성들을 모았다.

이와 반대로, 성폭력을 경험한 소녀들은 결과적으로 HIV/AIDS가 축소 될 위험성이 있는 성매매에 관여할 가능성이 더욱 있으며, 이는 상업적 아동 성적 착취 및 그의 결과 발생하는 일들에 더욱 취약해진다.

아동 피해자의 감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정신적 외상의 경험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자살과 같은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하다. 또한 제공되는 심리 사회적 지원은 전문기관과 연결해주는 체계가 미흡하고 교육된 직원 및 자원의 부족함 때문에 적절히 진행되지 않는다.

비슷한 정신적 외상은 온라인 아동 성적 착취에서도 발견되며, 이는 아동에게 저지르는 범죄행동에 대한 성질을 혼란시킬 수 있는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혹은 핸드폰과 같은 ICT도입에 의해 더욱 복잡해졌다.

실제로 온라인으로부터의 아동 정신적 외상에 적합한 치료 반응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적 착취 가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성적 학대와 과학 신기술에 의한 넓은 범위의 폭력적인 자료들에 의한 성적 학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아동 피해자의)요구 사항의 성격과 가해자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에 반응할 때 중요하며, 또한 많은 연구들이 크게 필요하다.

실제로 아동 폭력 자료는 가해자에게 성적 만족감 또는 협박 혹은 판매 목적과 이윤 등의 다양한 의미를 제공한다.

발트해 연안 정부 의원회의 '위험에 처한 아동에 위한 노동 협력 그룹(The Working Group for Cooperation on Children at Risk, WGCR)'은 성 착취에서 생존된 아동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범죄자의 처벌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뜻을 갖는 국제적으로 규명된 기준 범위 내 운영 된다.

그러나 ICT와 관련된 아동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학계 교수들의 관심과 전문 직원 및 보조 프로그램의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

개다가 온라인 성적 착취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범죄/사진의 발견 혹은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처럼) 모욕감이 느껴지는 노출 과정을 스스로 컨트롤 하지 못한다.

정신적 외상(아동 피해자가 학대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를 끼내기 어렵게 만드는 정신적 외상)뿐 아니라 이러한 폭력 기록의 존재는 아동에게 추가적으로 부끄러움, 죄책감, 무기력함이라는 복합적인 감정과 함께 침묵의 효과까지 학습시키게 한다.

이는 지원 프로그램 발전에 관한 치료의 중요한 이슈에 해당한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는 성적 학대된 아동들에게 몇 가지 성과를 보이는 반면, 과학 신기술에 의해 학대된 아동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정보를 더욱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추천되는 사항들은 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 사회적 영구 지원 조직을 세우고 관련 분야의 파트너 및 직원들의 능력을 키워내는데 집중해 있었다.

주요 법 개혁에서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ICT를 통한 범죄를 불법화 시키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그 유효성을 평가 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지원 수요에 관한 성질을 잘 파악하여 과학 신기술 발전 및 아동에게 미치는 관련된 영향력사이의 연결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좀 더 많은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Workshop - 10

온오프라인 학대 해결을 위한 분석 및 지식 정보 수집

스웨덴 ECPAT의 Joanna Lindquist씨와 CEOP 및 에딘버러 대학 Ethel Quayle의 Victoria Baines씨의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뉴질랜드 DIA의 Peter Pilley

조정위원: 국제 ECPAT의 Catherine Beaulieu

법률 시행, NGO 및 조사연구, 학술적 연구, 그리고 지식 정보 수집 과정을 비롯한 조사 결과물

에 의한 업무의 전후 상황을 미루어 보아 온오프라인 학대와 맞서는데 채택되고 있는 각 (기관 등의)체계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 발표됐다.

전화상담(Hotlines) 및 차단 시스템은 온오프라인 성적 착취와 싸우기 위해 시행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 수단이다.

스웨덴 ECPAT는 서버 호스팅의 해로운 자료의 위치와 도메인 이름 및 컨텐츠를 나타내는 아동 학대 자료를 위하여 상담전화(hotline)보고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경찰에 늘어난 수의 보고서를 제공하였고,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유포하는 사이트에서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차단 시스템이 스웨덴에서만 하루 동안 대략 5만 건의 접속 시도를 막았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 조사에서 법적 외의 법률 사용의 미흡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목적 국가 및 원산국가 둘 다 관광업의 아동 착취 범죄 보고를 포함하여 아직도 상호 보완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제 2차 세계 회의 아래로 주목할 만한 발전은 전략적으로 지식 정보 수집을 지지하는 국가 전문가 센터의 설립이라 할 수 있다.

가해자들의 행동 또는 피해자들 프로파일과 같은 분석된 사항들은 협박 및 지식 정보의 허점에서 보이는 범죄의 트랜드를 나타냈다.

가해자를 감시하고 범죄 메카니즘의 보고를 통해 좋은 지식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채택 될 강력한 조사 연구 도구들이 제공 되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영국 성 범죄자들의 신원 정보 등록 기재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통하여 유죄 판결된 성 범죄자들에 대한 지식 정보를 획득하였고, 과거 영국 정부 인가 없이 범죄자들이 3일 이하의 여행이 가능 했었던 이러한 허술한 점들이 파악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허점들은 모두 해결되었다.

개다가, 세계 범죄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더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가해자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들이 학대적인 자료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이미지의 출처는?, 범죄 행동에 이용된 과학 신기술은 어떤 것인가?, 사진 속 아동은 누구인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는 범죄자의 이용방법에 따라 자료들이 해로운 것이라는 방식 차원에서 범죄와 재범죄 패턴에 관한 정보 및 범죄 행동의 단계적 확대 가능성 여부 또는 실제 온라인 범죄가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성이 있지는 않은지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다고 한다.

오직 소수의 아동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파악 되었을 뿐이지만, 그들 대부분이 사춘기 이전의 백인여성이다. 반면 인도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피해 입은 소년과 소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

슷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들은 미국이 아동학대 자료를 취급하는 웹사이트가 가장 많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그 뒤를 러시아(그렇다고 러시아에서 제작되는 컨텐츠가 적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가 차지하고 있다.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에서 판매되는 DVD 또는 일본 모바일 폰으로 유료 제공되는 직접 제작한 데이터에 관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진의 대부분이 여전히 서양 아동들이다.(비록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강도 높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이라 하기에는 부족할지언정)

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미리 연습된 접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여러 국가와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효율적인 정보 지원을 위하여 법률 시행 및 NGO와 사적 영역의 기관들 사이의 강한 협력과 파트너십의 향상이 추천할 만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국제적으로 채택이 될 지식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수단)들은 아동 성학대 및 착취를 해결하는 전문 국가 조직 설립하는 것이다. 즉, 관광업에서의 아동 성적 착취를 보고하기 위한 SMS서비스의 이용 등과 같은 과학적 신기술을 통하여 공적 보고 기능을 제공할 채널 방법, 그리고 범죄자에게 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이다.

늘어나는 자원들은 피해자들을 파악하는데 이용되어야 하며, 이는 법률 시행 향상된 국제 경찰, 그리고 법률적 협력을 위한 능력을 끌어 올리는 것임을 말해 준다.

학대 자료 수집의 영역을 넓혀 온라인 학대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적인 영역의 가관들은 위험하고 해로운 자료들을 보급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사이트에 관하여 메시지 혹은 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이를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Workshop - 11

온오프라인에서의 상업적 성적 착취 및 관련 새로운 문제점, 그리고 분석과 지식 정보 수집

덴마크의 아동보호(Save the Children Denmark) 및 ECPAT의 Vernon Jones, 인터폴의 Anders Persson씨, 그리고 덴마크 경찰 소속의 Lars Underbjerg씨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유니세프의 Jean Gogh

조정위원: 이노첸티 연구 센터(Innocenti Research Center) 유니세프의 Lena Karlsson

인터넷 성적 학대 피해 입은 아동의 사진 유포에 관한 조사 업무는 '범죄자를 잡는 것'에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조되며, 이는 (시각적으로 혹은 전자적으로) 이용 가능한 성 학대 이미지에서 얻는 지식 정보의 결과다.

그러나 동일하게 전체적인 아동 보호와 관련한 업무 또한 강조 되어야 한다. 소수의 누군가가 이러한 자료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아동 포르노 사진 제작에 이용된 아동을 구조하고 발견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덴마크 아동보호(Save the Children Denmark)에서 사진이 범죄 행동 및 피해 입은 아동의 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에, '아동포르노'라는 명칭이 아닌, '성적 학대를 가한 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NGO와 경찰 권력 사이의 협력의 좋은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 날 것임이 분명하다. 반면, 최근 유럽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관한 합의 위원회(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와 같은 법률적 도구들은 성착취에 관한 최신 형태에 맞서는데 필요한 중요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널리 확장되어야 한다.

인터폴 측면에서는, 그들이 직면한 착취 및 학대 각 사진에 관하여 조사 진행이 분명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엄격한 접근 시도-적합한 과학 기술 수단에 의하여 가능한 곳으로 드는-즉, 국가적 경찰 권력 내 전문가 단위로 확산 되어야 한다. 이는 지리학 적으로 문화적으로 조사단의 좀 더 넓은 범위 확대는 사건의 배경, 피해자와加害者의 신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할 것도 없이, 현재 (각 영역에) 순환 되어 돌아가는 범죄 자료의 수는 인터폴 같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힘을 능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좀 더 지역의 입장에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경찰들의 온라인 성적 착취 학대 사건을 조사한 경험은 여전히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협력(북유럽 국가 세력간의 협력과 지역적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을 이뤄낸 좋은 사례)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범죄성의 적절한 대응하기 위하여, 한 쪽에서는 좀 더 작은 국가들과 경찰 힘,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글로벌 아동 포르노 현상의 범위를 국제적 협력으로 이끌어야 한다.

앞으로 필요한 행동들 가운데, 국제적 협력의 개선은 국가적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필요성(아직 존재 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들의 생성의 필요성 또한 있음)을 갖고, 가능한 한 노력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목적을 추구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동 보호 관리 체계는 모든 나라에 적합하게 갖춰져야 하며 각 나라의 아동 보호 문제를 다루

기 위하여 지원의 필요와 상호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각을 잊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안건들을 나눠 해결 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법률 시행을 포함 하여 아동 보호를 위해 힘쓰는 다양한 국가 기관들 사이의 더 나은 협조를 이를 수 있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과학 기술 능력 사이의 허접으로 곤란을 겪는 대신, 새로운 범죄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정부의 법률 능력을 일련의 과학 기술 발전과 맞춰가며, 이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Workshop - 12

상업적 성적 착취 및 관련 새로운 문제점, 그리고 온오프라인 학대의 분석과 정보수집

라틴 아메리카 Myspace의 Mauro Falsetti씨와 온라인 아동 보호(European NGO Alliance for Child Safety Online, eNACSO)를 위한 유럽 NGO연합의 John Carr씨, 그리고 아르헨티나 Chicos.net의 Marcela Czarny씨의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브라질 교육부의 Rosilea Willie

조정위원: 국제 ECPAT의 Anjan Bose

현재 온라인 상호작용과 이러한 환경에서(특히,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발전과 성숙 과정의 환경) 아동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가해진 각각의 침해에 취약해지는지에 관하여 아동 보호를 위한 현재 IT산업의 몇 가지 추진되는 사항들과 함께 이번 워크샵에서 발표되었다.

온라인 환경 및 과학 기술 진보는 젊은이들이 형성해온 사회적 상호작용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끼쳤지만, 이러한 상호작용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일기를 기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 변화된 것은 없다.

지금의 문제는, 사회적 네트워크 사이트는 너무 대중적으로 빠르게 공개되어 청소년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한계를 극복하고, 특히 또래들의 압박을 받기도 하면서, 위험한 행동에 관여하지만 현재의 온라인 환경은 가해자들에게 아동들을 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길을 제공하는 셈이다.

IT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오용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예를 들어 MySpace의 경우, 모니터 방식 구조, 사진 필터링, 연령 확인 시스템, 그리고 교육 및 인식 향상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여 아동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모바일 폰은 청소년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잠재적인 위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이 산업은 체계적으로 아동보호 계획의 발전에 힘써야 한다.

영국, IT산업은 아동 포르노 접근 차단 또는 아동 학대 자료 규명에 주요 역할을 하는 전화상담(hotlines) 지원 등의 아동보호 추진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고 있다.

영국IT산업과 인정된 지식을 갖춘 아동보호 기관 사이의 강한 파트너십이 발전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제 협력과 같은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며, 이는 획일적인 법률 체계의 부족으로 종종 지연되었다 (예를 들어, 80개국은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특정 법률이 없다)

현재 전 세계의 31개의 전화상담 리포트와 과학기술 능력과 경찰 권력의 지식, 특히 Virtual Global Taskforce를 통하여, 협력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는데에는 불충분하다.

Chicos.net은 아르헨티나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 학대는 청소년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널리 퍼져있으며, 이는 그들이 대부분 또래들의 해로운 인터넷 사용을 막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의 위험성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들의 청소년 행동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와 청소년 사이의 디지털 갭(digital gap)은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경제적 배경으로부터 대부분의 아동들은 사이버카페에 접근하고 이러한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데, 예를 들어 스스로 해로운 자료들을 만들어 내는데 쉽게 관여일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새로운 과학기술 사용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성에 관하여 아동과 부모를 교육하기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의 안전한 사용과 스스로 보호하는 행동들을 적극 권장은 충분히 교육된 선생님들과 학교의 커리큘럼에 모두 도입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IT산업(ISP, 모바일 폰, 재정적 기관들을 포함하여) 상업적 아동 성적학대 자료 제공을 통해 이

윤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온오프라인에서의 아동 희생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법 시행 기관과 아동 보호파트너들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 체계 개정과 전화상담(hotlines) 시행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투자 방침을 세우는 등의 국제적인 협력 도구들을 전 세계 널리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산업의 개입이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 학대 자료와 조직화된 범죄 사이의 관련성을 반드시 조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Workshop - 13

성 노동자 협회 및 네트워크: 전략적 파트너십과 행동

SANLAAP와 브라질의 성매매 노동자를 위한 국가 연방 기구 Rosarina Sampaio의 Anindit Roy Chowdhury씨의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벨기에 ECPAT의 Katlijn Declerq

조정위원: 국제 ECPAT의 Marco Sotelo

아동 권리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성매매의 어린이 성 착취와 매춘 성인여성사이의 인식은 분명히 다르다.

아동들은 언제나 성 착취의 피해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당연하며, 아동 기관과 동의는 그들에게 벌어진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말하지만, 성매매에 가담한 성인여성의 경우 하나의 직업의 형태로서 매춘에 관여한 것이라는 것과 이러한 관점(통제 혹은 성 착취와 관련하여 어느 형태에도 그녀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하에)에서 그러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다르다.

성 노동자 협회와 아동권리 보호기관은 허용된 체계 내에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이롭겠지만 여전히 편견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춘 여성들은 '어머니, 중요 정보제공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동 성적 착취에 맞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여성들은 많은 아동 피해자가 학대받고 있는 산업에서 성인 성매매 산업 부분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아동 보호에 관하여 역할이 분명하다.

목표가 된 자들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한 주요 정보 전달자로서, 그녀들은 상황을 보고하고, 또한 이를 통해 소수의 희생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아동 성 착취 사례를 보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성인 성매매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의 증가와 교육 추진을 위한 협조(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던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브라질 National Federation of Sex Workers에 참여하여 여성들에게 가하는 악덕행위의 예방을 위한 자료의 보급과 혜택 받지 못한 이웃 가족들과 예방 운동을 실시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그녀들이 동참하여 지원을 해준다면 변화의 주요한 중간 개입자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많은 여성들 또한 어머니이고 때로는 매춘에 학대된 아동의 어머니, 혹은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열망하는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원과 도움으로 그녀들은 가장 큰 변화의 힘을 가져올 수 있다.

전략들은 그녀들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범죄 행위와 맞서 싸울 수 있으며, 그리고 스스로 이용당하기도 이용하기도 할 수 있는 그녀들이 가질 위험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성매매 노동자의 협조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현함으로써 긍정적인 발전이 예상될 수 있는 반면에, 아동 성 착취와 성인 성매매행위의 명확한 구분에 관한 공동적인 이해를 토대로 업무가 진행 되어야 한다. 이는 편견과 잠재적인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각각의 다른 장소와 위 각각의 둘 사이의 구분되는 논점이 좀 더 긴밀하게 풀어갈 수 있는 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성인 성매매 노동자들이 아동 성 착취와 맞서기 위해 계획된 전략이 논의되는 공공의 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춘 여성의 리더십 훈련은 그녀들과 매춘 구역에 있지 않는 자녀들을 돋기 위하여, 그리고 아동 성 착취 예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정보 제공과 위험에 노출된 지역 접근을 위한 예방 전략을 세우기 위해 성 매춘 노동자들의 협회와 긴밀하게 작업하는 것 또한 추천할 만하다.

Workshop - 14

성적 착취 및 관련된 인종과 민족성의 관계

Beyond Borders의 의장 Rosalind Prober의 '캐나다 원주민 사회 보호 필요성'이라는 발표와 UCIEP프로그램진행자 (Training and Participatory Research Unit, 교육 및 참여 연구 단체)의 Fernando Viveros의 '멕시코 원주민 사회 아동들의 취약성'이라는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Secretaria Especial dos Direitos Humanos의 Benedito do Santos

조정위원: 국제 ECPAT의 Maricruz Tabbia

원주민 사회의 아동들이 성 착취에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상당히 많이 보고 되어왔다.

캐나다와 멕시코 아동들의 권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특정 보호 체계를 만드는데 관심이 거의 없다.

캐나다의 경우, 성적으로 권리 침해된 아동 70-80%가 원주민 출신이며, 많은 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됐다.

높은 범죄율 지역에서 살며, 좋지 못한 보호구역 외딴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제적 소외는 매춘 알선 업자와 범죄 행위자들을 인지하고 그들을 스스로의 보호하기 위한 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400여명의 아동들이 매년 범죄 피해 대상이 되고, 대다수가 소녀이다.

2003년, 멕시코에서 유니세프에 의한 아동 권리 지수를 파악을 위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정부 주에 분석에 따르면, 원주민 인구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전체 남부 주는 전체 지표(건강, 교육, 노동 등)의 국가 평균 이하였다.

이 결과는, 원주민 사회는 그들의 역사적 소외와 노동시장에서의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줬다.

또한, 문화적 이슈와 아동의 취약성의 원인으로서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전통적 관습이 존재한다.

그 예로서, 교육의 신체적 체벌 사용, 지역과 국가 내 아동 노동력 인식 사회화과정과 원주민 문화를 지키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관습들은 아동권리와 인권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발표자들의 추천 사항들은 룰 모델로서 경험상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관습과 원주민 사회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보급이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이뤘다.

아동의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고 성적 파트너로서 이용되는 원주민 청소년들 사회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줄여가도록 하는데 집중하도록 한다.

모든 원주민 사회의 리더와 일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생활의 스킬, 아동에게 권한을 주는 리더십을 포함하여 원주민 사회를 위한 맞춤형의 발전된 학교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성적 착취와 그들이 다루고 있는 아동 성 착취의 징후에 관한 어렵고 개별적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원주민 사회의 중재자로서) 목표된 개입에 관한 발전을 도울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두 국가 모두 아동 성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이 부족하며, 법률 체계 또한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향상 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16세 청소년으로 규정된 연령은 보호되지 않으며, 멕시코는 주마다 화합이 되지 않는 법률 체계 때문에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아동 성적 착취 사례에 관하여 불충분하고 잘못된 보고 역시 인식의 증가와 예방 조치(중간 개입)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Workshop - 15

시장 다이내믹의 성적 착취

오타와 대학 Mark Hecht씨의 '대중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영향력 그리고 그 역할 및 유년시기의 성립과 성에 대한 개념, 선택, 행동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발표 및 브라질리아 대학 Maria Lucia Leal의 '상업적 아동 성 착취에 관한 그룹 연구'라는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국제 ECPAT의 Kathy Hargitt

조정위원: 국제 ECPAT의 Sandrine Constant

아동 성적 착취는 현대 대중문화, 의사소통, 미디어에 의해 어린이가 성적 매력의 대상화 되는 시장 다이내믹에 관련하여 예상될 수 있다.

이번 워크샵은 시장의 특정한 두 가지 관점에 비추어 발표됐다. 한 가지는 노동의 관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시장, 미디어와 같은 특정 영역이 어떻게 아동 성 착취와 관련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이다.

시장 경제와 관련하여, 복잡한 사회적 유형을 통하여 아동 성적 착취를 예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됐다. 예를 들어, 청소년 및 아동의 사례를 포함하여 성매매가 때때로 합법적인 직업의 유형으로 인식되어지고, 사회의 많은 활동가에 의한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써俚하는 행동들이 효과적이라고 보여 진다면 알려지고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 성 수요 구조에 관한 착취 이용자들의 프로파일, 그들의 출신, 성, 나이 등의 특정한 정보는 이를 적극히 해결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

아동 성적 착취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절차에는, 아동 스스로 자신이 가진 권리 및 자신 보호를 위한 행동 능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으로서 참여하여 이 문제를 스스로 고민해봐야 한다.

(저널리즘 분야, 포토그래피, TV와 영화, 모델, 그리고 광고 등) 미디어가 대중문화 형성을 돋

고 아동 및 아동피해자들에게 성적 매력을 부과 시키는 영향을 끼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영역의 아동 성적 착취와 관련하여 특정한 역할이 강조된다.

포토그래피와 모델산업에 의해 아동들은 피해를 입거나 혹은 아동 포르노 자료 제작에 이용되어 성적으로 학대를 받기도 한다.

주류를 이루는 미디어에서의 자신들의 사진(예시, 상품 판매를 위해 속옷 차림새를 하거나 반누드 모습으로 묘사된 사진) 그리고 아동 성적 착취 사례가 신문잡지에 보고되는 방식, 즉 부적절하고 화제가 될 수 있는 형태 혹은 피해자들의 신원이 밝혀지는 경우(아이의 이름이 거론되거나 아이 사진이 사용되는 것)를 통하여 그들은 희생될 수도 있다.

이는 대중의 어린 시절의 이해를 왜곡시키고, 또한 아동이 섹스파트너로서 수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만드는 대중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대 사이의 성의 결과가 왜곡되며 성적 매력이 부과된 사진을 통하여 '허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된다.

성적매력이 부과된 사진을 통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또한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반면,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갖고 싶은 상품으로 홍보(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 모바일 핸드폰 혹은 컴퓨터)하는데, 이는 오직 물진 만능주의와 서양 삶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뿐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서 아동들을 상업적으로 대상으로서 바라보게 할 인식들을 부추긴다.

사적 영역은 이러한 이슈에 대한 인식을 늘리고, 아동 보호 철학과 타당한 체계를 진행시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촉구하고 보호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무대에서 사적인 영역의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발적인 파트너십과 사적 영역의 기관들의 참여의 촉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좀 더 빠르고 나은 결과를 위하여 규제 및 사적인 영역의 이와 같은 훌륭한 책임감을 보장하기 위한 특정한 법안의 통과를 이루어 보호되어야 할 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달성 되어야 한다.

시장 다이내믹이 아동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많은 수요가 개입되어 있는가에 대한 복잡한 방식들은 사적 영역의 기관과의 파트너십으로 해결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방식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는 특정한 권리를 갖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의 아동을 존중하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책임이 있다.

Workshop – 16/17

Sexual exploitation in the context of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성별 및 성적 성향의 전후 상황에 따른 성적 착취

과테말라의 ECPAT 전무이사 Maria Eugenia Villareal, 파키스탄 소아학 협회 회장 Dr. Tufail Muhammad, Instituto Promundo의 전무이사 Gary Barker, 중앙아메리카와 파나마,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아동, 청소년 상업적 성 착취 예방과 제거를 위한 소구역 프로젝트 과학기술 최고 고문 Victoria Cruz, ILO/IPEC 또한 Projeto Legal-Rio de Janeiro의 전무 이사 Carlos

Nicodemos의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과테말라 ECPAT의 Mariana del Aguila

조정위원: Groupe Developpement의 Teresa Amorim

발표자는 성별의 불평등에 근본을 이루는 가부장제도의 사회에서 태도와 행동은 주로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동과 성폭력이라는 범죄와 관련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부정적인 구조 형성은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적, 성별의 폭력의 결과(아동의 성까지 구분하여)를 낳았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러한 관습의 기준들은 소년들이 성적 착취와 성폭력의 희생자임을 그리고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는 다른 관점을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사회 구조 형성과 성별의 폭력에 관련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요한 협력자로서 남자들의 참여는 아동 성적 착취와 맞서기 위한 아주 훌륭한 기회이다.

학교 교육 커리큘럼은 성적 착취에 기여하고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정보와 성적의 건강 및 생식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예민한 문제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를 비롯한 다른 주요한 사적인 영역의 기관들의 인식을 넓히는 프로그램들이 내규 규제를 조장하고 규범들을 축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Instituto Promundo는 남성성과 성폭력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남성의 성폭력 참여에 관한 주요한 연구 결과는 남성성의 규범과 성별 태도 및 관습과 관련하여 널리 확산된 사회적 규범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있었다.

이는 남성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믿음과 태도에 집착하는 많은 남성들이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종종 남성들을 성을 구입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상업적으로 성을 사들이는 남성들의 패턴, 또한 성폭력에 영향을 준다.

종종 이러한 남성성의 사회적 표현들은 전쟁, 갈등 그리고 갈등 이후의 배경에서 남성들의 성폭력을 통하여 성별 전쟁과 지배의 특정한 전략을 구성하며, 어린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징후다.

성 착취와 성폭력이 발생하는 정도가 걱정스러운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는 소수의 남성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ILO/IPEC는 중앙아메리카의 '상업적 성적 착취와 남성성, 그리고 남성과의 노동: 예방을 위한 제안서 리뷰'라는 중앙아메리카에서 실시한 그들의 주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지역의 남성들은 성 거래(특히,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형태들에 대한 높은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돈을 지불하고 미성년자와의 섹스하는 것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특히 성인과 같은 청소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아동 성적 착취는 해로운 것이 아니며, 도덕적인 양심에 꺼릴 것도 없는, 또한 범죄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 동안 감옥에 구속될 가능성이 몇몇의 남성에게 약간의 억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나기도 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약탈자나 소아성애자도 아니므로, 아동 성적 착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이를 정신병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추천할 만한 것은 성인 남성과 소년이 성별 평등성을 장려하기 위한 주요 협력자로서 참여 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저항이 예상될 수 있지만, 아동 보호 예방 운동은 남성들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며, 또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남성과 함께 운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원과 남성들의 정신에 맞춰진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성적 착취에 관한 비판적인 남성만의 길이 목표 및 제시 되어야 한다.

게다가 라틴아메리카의 소수의 남성들은 이 사안을 위해 운동을 펼치는 가운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하여 피어투피어식(peerto-peer)의 추진을 위한 좀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교육과 훈련 역시 매우 중요하다.

모든 유형의 훈련 프로그램들은 성 착취와 성폭력을 조성하는 (가부장적 사회의) 남성성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하며, 또한 이성애자가 아닌 성인 남성 및 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포함하여 성별 불평등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

성 착취와 성폭력의 예방 혹은 증거보존을 위해 주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경찰, 군 지위관 등, 이와 같은 전략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성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어린 시절부터 학교와 가족의 보살핌이 요구된다.

성별에 근거한 폭력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목표는 반드시 어린이 보호와 교육에 관한 모든 대중 경찰이 지녀할 목표이다.

예방의 영향평가와 훈련 프로그램은 반드시 태도와 행동 변화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과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캠페인, 예를 들어 성별에 근거한 폭력을 줄이고 성별 평등을 달성시키기 위해 소년들과 젊은 청년들의 참여 '프로그램 H', 또는 하얀 리

본 캠페인(White Ribbon Campaign)과 같은 곳에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지하는 네트워크(즉, the MenEngage Alliance과 같은 네트워크)를 쌓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Workshop – 18

사회적 규범과 성적 착취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Cristina Bicchieri씨와 독립 자문위원, Maria Gabriella de Vita씨의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유니세프 본사의 Teresa Stuart

조정위원: 브라질 정부의 인권을 위한 특별 사무국 SEDH의 Susana Mintegui

사회에는 지역적으로 아동 성적 착취에 관한 해로운 관습들의 존재와 허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범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여성 생식기의 손상 또는 할례, (아이들이 상업적 거래로 사용될 때의) 아동 결혼, 그리고 심지어 아동 성 관광업까지 있다.

사회적 규범, 법률적 규범, 그리고 수용되는 관습들 사이에는 차이점들이 있다.

이러한 규범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사회적 규범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알리거나 혹은 하향식 정부 정책 및 다른 개입 방식을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존하는 사회적 규범들의 조건과 기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람들의 순응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모두 규범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여기에 좋은 사례는 많은 개인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한 규범들에 대항하려고 하는 사적인 태도들을 가졌을 때이다.

그러한 경우로서 규범을 변화시키려는 잠재성은 규범 이론, 네트워크 이론, 보급에 관한 이론, 의사소통 이론 등의 정보를 이용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대화를 포함하여, 지역적 리더들을 두드리면서, 커뮤니티 주도형인 행동 및 사회적 변화를 위한 의사소통 전략의 조심스러운 발전은 관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커뮤니티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것은, 대중의 선언과 변화된 기대심을 통하여 규범을 함께 포기할 것을 결정한 사람들의 비판적 집단이다.

이러한 비판적 집단의 행동은 해로운 관습을 버리기 위해 (목표하는) 정점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 착취에 관하여 아동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해로운 규범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협동적 체계를 지닌 전체적인 행동 계획의 발전과 시행을 옹호하기 위한 긴급함을 요구한다.

또한 권리의 문제와 예방, 건강,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행동과 사회적 변화를 위

한 커뮤니티 전략을 발전시키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 감시와 평가, 사회적 변화를 위하여 규범에 대한 넓은 이해에 관한 데이터와 정보를 쌓는 것 또한 필요하다.

Workshop - 19

사회적 기준과 성적 착취

ILO/IPEC의 소구역프로젝트 기술담당최고책임자인 Victoria Cruz의 “중앙 아메리카,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제거와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는 발표와 중앙아메리카 내 ILO/IPEC의 자문위원이자, 코스타리카 기관의 ‘코스타리카의 남성과 커플, 그리고 성(WEM Institute)’에 관한 행동, 교육, 그리고 연구조사에 관한 전문가인 Alvaro Campos Guadamuz,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ILO/IPEC 자문위원과 코스타리카 기관의 ‘코스타리카의 남성과 커플, 그리고 성(WEM Institute)’에 관한 행동, 교육, 그리고 연구조사에 관한 전문가를 담당하고 있는 Jose Manuel Salas Calvo에 의해 발표된 워크샵.

사회자: 스위스 유니세프의 Elspeth Muller

조사위원: ILO의 Alvaro Campos

상업적 성착취의 수요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예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상업적 성착취의 예방을 위해 남성들과 함께하는 전략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하여, 2003년의 코스타리카의 WEM과 협력한 ILO/IPEC의 업적에 대한 교훈이 전해져왔다.

이과정은 파나마와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중앙아메리카 남성들을 훈련시키고 자각을 높이기 위한 조사와 훈련 그리고 방법(시청각 교재, 안내책자, 플립차트)의 발전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발전은 수평적인 협력, 국가적 기관의 능력강화, 자각 향상, 사회적 동원을 포함한다.

이 지역의 남성인구들의 경우, 다양한 성매매, 특히 성매춘에 관련하여 높은 허용치를 갖고 있다는 점들이 연구 결과에 주요하게 드러났다.

특히 어른처럼 보이는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와의 원조교제는 대체로 허용된다.

상업적 성 착취는 해로운 것이며, 범죄행위라고도 인식되지 않는다. 하지만 구속의 위협은 몇몇의 남성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막는 효과를 가졌다는 것이 발견됐다.

다른 중요한 발견은 아동성착취와 문화적 전통적 관습 사이의 연결성이며 이러한 예방작업은 범죄자를 아프다거나 정신이상이라는 면책을 주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동성착취범죄 이슈에 관해 남성들과 함께 일하는 어려움은 국가 기관이나 시민사회의 의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조처를 취한다는 확신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남성들과의 작업은 그들의 논리와 코드에 맞춰진 특별한 중재가 요구되는 반면, 모든 남성들이 성적 착취자가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젊은 세대와의 작업 역시 중요하다.

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년과 남성을 위해 구성된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업적 아동 성 착취와 맞서기 위하여, 수요를 대처하는 방안으로 오직 희생자들하고만 작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특별히 남성을 타겟으로 하는 수요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발생할 수 있는 저항이 있더라도 발전되어야만 한다.

Workshop - 20

NGO들의 대화

이것은 브라질, 우크라이나, 멕시코, 기미 등의 많은 국가들의 NGO대표의 참여로 구성되었다.

사회자: 브라질의 ‘the National Committee on Sexual Violence’ 대표자, Neide Castanha

조사 위원: 국제 ‘Catholique de l’Enfance’의 Alessandra Aula

조정위원: 국제부 Catholique de l’Enfance의 Alessandra Aula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하여,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행동과 노력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회 및 인간의 권리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주요한 역할들은 정부기관과 개인운동가들 뿐 아니라 NGO 및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루어진다.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를 대항하고 예방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반면, 아동 폭력에 대항을 위하여 앞으로 진행 시킬 방법을 찾고 조치를 강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목해야할 첫 번째 포인트는 NGO와 정부기관 사이의 수확이 있을만한 대화가 형성되고 새로

운 파트너, 특히 개인운동가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브라질과 같은 국가의 경우 NGO들은 정부에 대한 변호입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아이들의 상업적 성 착취에 대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NGO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 세계적 수준 차원에서 자각을 높이고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냄으로써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주목하여 정책과 조치를 개발해 내고 이러한 현상을 대처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NGO는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부기관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기업들도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한 NGO는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 성매매 관광 및 조합의 행동 규약’(Code of Conduct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in Travel and Tourism and of a number of Unions)에 서명한 기업들의 재정적 지원 턱에 상업적 아동 성 착취 근절 캠페인을 다양하게 개발시킬 수 있었다.

이 대화에서 논의되는 다른 문제들은 NGO활동의 기금부족과 일반적인 아동 상업적 성 착취를 다룬다.

사실 정부가 점점 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계속 삭감되고 있다.

비슷하게, 지역별 전문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브라질과 같은 대국에서) 지역별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가 주로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성착취의 수요측면을 다루고자 하는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가중된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NGO는 아동의 성적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 더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범죄자들에게 접근할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관심과 집중적인 조치가 필요로 되는 위험 집단과 상황이 있다는 것이 상기되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처럼, 이러한 것들은 기관과 보호소에서 아이들의 생활, 그리고 성착취 목적으로 주변지역에 아이들을 납치하는 문제(예를 들면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 폐루,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이의 납치)를 포함한다.

THEME 2

법률 구조와 집행

26 November 2008, 9am -- 12:30pm

2008년 11월 26일, 오전 9시--오후12:30

테마2는 법률 구조와 책임,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법의 개정에 대한 토론, 아동매매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가협약의 실행, 아동성매매, 아동 포르노, 면책과 책임 그리고 특별조사를 위한 절차 등에 관한 것이었다.

패널 발표 요약

법률 구조와 책임

패널발표- Ann Veneman, UNICEF

책임감독: Wanderlino Nogueira Neto, Brazil; Jim Gamble, Senior British

경찰과 아동착취 온라인보호센터: Rebecca

호주의 청소년 (International Youth Advisory Congress in London):

이양희, Chair of the CRC; Minu, adolescent from Nepal

사회자: Maud de Boer-Buquicchio, 유럽의회

패널들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정부는 아이들과 작업하기위한 단계를 밟아갔다. 게다가 준비되어있는 많은 법적 방법이 있다. (CRC 그리고 the *Optional Protocol* new international instruments, 와 같은 the *Palermo Protocol*).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방안의 효과적인 시행에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이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과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성적, 존엄적, 자유적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전략이 요구된다. 국가적 법률제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들(변호사 선생님 가족들 경찰 등)과 그들이 일하고 있는 기관에 공급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그들의 주거에서 독립적으로 모든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같은 수준으로 보증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는 태도의 변화와 별에 대한 면책을 없애는 것이다.

종종, 어른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성 역학관계는 깊은 차별이며 몇몇의 사회에서는 아동 성착취에 대하여 가족의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높은 허용범위를 보여준다.

또 다른 캡은 죄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다. : 너무나 많은 희생자들이 가해자로 취급받으며 그들의 행동이 범죄로 치부된다. 경찰들의 협조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법률구조가 아동범죄를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한다.

페널토론으로부터 나온 권고는 예방적인 그리고 억압적인 목적 두 가지 모두를 위한 법적인 구조의 필요를 나타냈다.

이중범죄성립은 제거될 필요가 있으며 기록메커니즘이 설립되어야 하며, 승인이 강화되어야 하고 미디어와 ISP의 책임과 참여에 더한 관심이 필요하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또 하나의 조언이었다. (CRC, Art. 12에 쓰여있는 것과 같이)

사회적 면책은 허용될 수 없으며 사라져야 한다.-a responsibility hat concerns everybody.

현재 사용되는 조약의 재정과 실행이 더 추천되었으며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범죄의 희생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원을 하도록 강력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아동대리인에 의해)

이 분야에서 직접 일하는 NGO사회는 경찰보다도 아동착취의 현실을 매일 보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경찰은 협력과 조취를 취하지 않는 실수를 만들어왔다고 인식되었다.

경찰은 항상 진심으로 아동의 이익을 위한 행동하지 않아왔다.

아동을 최우선으로 놓는 것은 중요하지만 경찰은 이를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에 관심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위한 기술적인 면에 집중되었고 아동복지접근을 위한 책무를 약화시키며 아이들을 우선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진보적인 노력을 해왔다.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경찰의 협력과 파트너십은 모두가 따라할 수 있다는 본을 만들기 위해 모사되어갔다. 단순한 새로운 법류제정이 아닌 새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한 분야에 종사한 자들은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이 서있는 길이 과연 옳은 곳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Gamble은 계속해서 통계자료를 보면 그들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많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놀랍다.”라고 언급했다.

수억달러의 산업인 아동학대 온라인 이미지같은 것이 이러한 예이다. - 온라인세계에서 수억달러산업이 어디있는가?

이것은 19세기말 2000년 초에 존재했다.

어제의 현실은 오늘이라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 대처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영속되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서 아이들을 소모품으로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조직화된 범죄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소아성애자이며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 빼돌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약탈자이다. 아동인신매매, 아동 포르노, 온라인 성학대는 모두 아동학대의 한 형태이다.

아동이 인신매매되었거나 온라인 또는 부모에 의해 또는 범죄의 맥락 안에서 학대되는 거나 그 아이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사고과정은 그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간단하고 쉽게 이해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용어의 사용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정신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전제적으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서로 간의 도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이 회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동의만큼이나 반대로 심한 이런 각각의 미팅의 여파 속에서 중요한 열기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아이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아동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대하여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만들고자하는 의견은 CRC의 기사12이다. -- 젊은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그들은 새로운 복합 환경에 살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언어를 형성해낸다.

그들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

아동폭력에 대한 UN의 연구는 12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게다가, CRC의 기사34는 CSEC의 예방을 포함하고 기사35는 아동인신매매를 다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ST와 아동 포르노와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들이 여전히 더 필요했다.

이것이 이전 의회 아래로 새로운 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가 생겨난 이유이다.

OPSC는 형법과 절차에 관한 기구이며 또한 예방과 보호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129개의 주와 30여개 정도의 OPSC의 정당은 서명을 했고 그들의 형법전을 개정하고 있다.

요코하마 이후 법적구조 안에서 다른 발전사항은 2003년의 the Palermo Protocol가 있다.

국가법률 재정에서 보장하는 법적보호의 발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잘 알려진 면책이 존재한다. : 법적책임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몇몇 국가들의 형사법은 범죄자가 희생자와 결혼하는 경우와 같은 빈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중범죄성립에 의해 더 좌절된다.

workshop abstract

Workshop - 6

희생자를 대하는 아동 친화적 법적 절차, 법과 보호시스템 두 측면

상업적 성 착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하여 아동 중심적 보호접근의 도입은 형사절차가 희생자의 트라우마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것과 아이들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실행된다는 것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이 보장되기 위한 필수적 방법이다.

아동 친화적 절차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음에도 최근에는 여러 국가에서 몇몇 진보가 만들어지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아동 친화적 절차는 법에 의해 성립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s*는 성범죄의 아동희생자들이 심리전문가와 동행한 자리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며 한번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Nobody's Children Foundation은 특수유리창과 인터뷰를 기록할 카메라를 설치한 아동친화적 인터뷰실을 만들었다.

인터뷰는 심리학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맞은편 방에 앉아있는 판사와 검찰이 필요하면 심리학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접촉한 상태로 있다.

또한 Nobody's Children Foundation은 법적인 절차를 아이들을 준비하도록 책을 출간하였으며 경찰, 검찰, 판사 그리고 심리전문가 목격자 등 이러한 전문가들을 위한 훈련을 포함하는 것에 특별한 요구를 가진 아동 목격자들에 대한 캠페인도 실행하였다.

모잠비크에서는 전문화된 아동 친화적 조직이 경찰서 안에서 the Children's House in Iceland의 업무 부문으로서 설립되었다.

1996년 스톤훌룸에서 열린 the First World Congress 다음부터 향상된 국제적 인식의 결과, 아일랜드의 아동성학대의 사건에 대한 연구는 아동성학대사건을 다루는데 전략향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다음 the

Children's House는 학제적 접근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업무에 포함되는 행동가들은 the Government Agency for Child Protection의 대표, 경찰, 검찰, 그리고 사회 활동가들을 포함한다.

the Children's House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들과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의학적 연구와 연합조사 인터뷰 그리고 희생자 치료, 가족 카운셀링과 트레이닝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런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노력 덕에 효과적인 아동 친화적인 절차와 사건관리시스템이 발전되었으며 아동희생자들이 다시 희생될 가능성도 줄어들었다.

현재 다른 국가들이 모사하거나 체택할만한 좋은 관행이 외에도, 이러한 경험들은 오직 어린아이들일 때 부모와 전문가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아동친화적 절차가 진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절차는 반드시 아이들의 인터뷰가 반복되지 않고 법정밖에 만들어진 아동친화적인 공간에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그 개발과 아동친화적 절차의 동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모나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전제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지원(재정적, 법적, 사회적, 의료적, 심리적)을 받는 것을 특히나 필수적이다.

관계된 전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서로 다른 활동가들과 기관 사이에서 좋은 관계와 학제적 접근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전문가, 변호사, NGO등)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문화된 트레이닝을 그들에게 제공하고 아동희생자들에 관한 법적 절차 내에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workshop7

희생자를 다루는 아동 친화적 법률절차, 법과 보호 두 시스템 모두이 차원에서.

캐나다 국제 아동권리를 보호국의 Nalini Vaddapalli씨와 Nivo Nascimento씨의 “범죄의 아동희생자와 중인을 위한 정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발표 및 폐루정부 Rita Figueroa씨의 “재희생회를 피하기 위한 보호: the Gessel Chambe를 통한 아동 친화적 인터뷰과정”이라는 발표, 그리고 José Antônio Daltoé,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제3특별 공판, 브라질 정부의 “정의와 보안시스템 안에서 성 착취의 희생자들에 대한 아동 친화적 지원”을 발표하였다.

사회자: 캐나다 아동복지 연맹의 Gordon Phaneuf

조사위원: Iolete Ribeiro da Silya

아동 친화적 법적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는 어떻게 아동희생자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포괄적이고 절차에 기초한 멀티 영역의 접근방식은 아동희생자들과의 작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은 종종 무시되어지고 그들은 적절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경찰관은 종종 아동을 포함한 폭력사건을 파악하는 첫 번째 영역 기관이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희생자가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모든 법적 재판절차는 반드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치료와 재판절차를 구분하는 것을 포함하여 희생자들의 치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절차 참여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법적인 시스템을 적용시키지 않고 그것보다는 시스템이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맞추어 구성되어야 한다.

페루에 기록된 사건의 한 여성 아동 피해자인 리타는 물론 그녀가 그녀의 부모가 그것에 동의했지만 그녀가 거울을 통해 지켜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Jose Antônio Daltoé는 현재 브라질의 증언기록에 판사가 자리해야 하는 패널 프로세스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판사들은 어떻게 아동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예는 문제없는 진술을 위해서는 판사 외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권을 존중하는 다른 주체들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법적 절차에 있어서 포커스는 ‘무엇이 아이들에게 최선’인가이다.

모든 법은 진심으로 아이들을 배려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시각은 법적인 것만이 아니라 폭력을 직면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하는 접근이어야 한다.

아동 희생자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multi-sectoral 접근을 위해 동원되어야 한다.

미성년은 반드시 부모가 동행하여야 하며 그들의 말하고자 하는 의사와 조사가 걸리는 시간 모두 존중해야 한다. 한명의 인터뷰 진행자는 충분하지 않으며 패널시스템과 이것의 가이드라인은 지역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유동성을 허락해야한다.

모든 전문가들은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복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건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청자가 되어야 한다.

비록 그들이 기록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의학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료검진동안 그들이 기록한 내용이 재판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말이다.

결국 학대는 경찰에 보고되기 이전에 보건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처럼 모든 전문가들을 위한 지침은 예방부터 치료까지 희생자에게 초점을 맞춘 대중정책의 향상을 통해 설립되어야 한다.

Workshop - 9

법적 기술적 지원 아래서 국선 변호인들의 역할.

마라냥 주, 브라질의 정부의 Ana Lourena Moniz Costa씨와 필리핀 정부의 Ernesto L. Pineda 씨의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Colin Davis (필리핀 UNICEF)

조정위원: Ani Saguisag (필리핀 UNICEF)

성 범죄에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게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은 국선 변호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필리핀과 브라질 두 가지 사례는 이런 기관들에 의해 착수된 주요 활동들과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직면한 문제를 보여준다.

브라질에서는 국선 변호인 사무실은 상업적 성 착취의 희생자들을 포함하는 아동을 대신하여

변호하는 특별 부서를 가진 독립기관이다.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그 기구는 사회운동가들과의 일정한 협력 속에서 아동 희생자들을 위해 필요를 제공하는 것도 수행한다. 그리고 아동을 다른 기관으로 보낼 때 적절한 서비스 조항을 확인하고 사례를 확인한다.

국선변호인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에는 희생자 아동의 가족이 보복을 당할 위험에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것과 범죄자로부터 보호를 위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동을 보호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브라질의 국선변호인 사무실은 또한 *National Plan and State Plan to Fight Sexual Violence*의 기안과 아동을 위한 발전된 규약에도 기여하였다.

필리핀에서는 the Public Defenders의 역할이 Department of Justice (DOJ) Action Center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기관은 법적인 지원불만과 요구 전화뿐 아니라 방문고객의 문의와 법적인 지원 요청과 불평에 대한 일을 진행한다.

The DOJ Action Center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설립되어 출범하였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center에 보고되면 희생자는 인터뷰를 거치게 되고 만약 사건이 증거로 입증된다면 검찰은 재판을 해야 할 만한지 상황을 보기 위해 참여한다.

증인보호인 DOJ의 Security and Benefit Program하에서 증언을 하고 (그들의 가족뿐 아니라) 위협을 당하고 있고 희생자는 신변보호와 에스코트서비스, 아동을 위한 무상교육, 집안시설보호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개다가 희생자 이해 행동아래에서 폭력범죄의 희생자들은 민간피해를 고발하거나 형사고발할 권리를 가지면서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특히 필수적인 반면에 몇 가지 장애물들이 그들의 효과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

브라질에서의 경험은 충분하지 않은 국선변호인과 아동희생자들이 전문화된 서비스와 장기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더욱이, 사법부는 처벌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족들이 그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국선변호인 사무실은 아동 권리옹호의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중 캠페인을 구성하는 것이 권고되었다.

또한, 국선변호인사무실이 적절하고 장기적인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자원을 더 할당하고 특별 예산을 받기 위한 로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의 다양한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고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종의 정계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범죄의 아동희생자들이 포함되는 사건에 관련하여 일하는 법률 시행원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도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의 수요부분을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사에 근거한 예방프로그램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

Workshop – 13

아동권리 위원회의 권고의 홍보 및 사용

우간다 UCRNN의 Stella Ayo-Odongo씨와 불가리아 방치된 아동 사회 (Neglected Children Society)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Lydia Zagarova씨의 “UN CRC의 충격과 두 가지 협정: 조인국들의 반응과 NGO의 대안보고서를 통해 배운 교훈”이라는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CRC 위원회 멤버 Rosamaria Ortiz Dumet

조정위원: 국제 ECPAT의 Renata Coccaro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이것의 두 가지 부속 협약은 아동권리의 감시인으로서 시민사회조직에 그들의 변호업무를 통합하고 아동권리의 감시인으로서 그들의 기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의 정당에 대한 기록의무 이외에도, CRC는 명확하게 NGO들에게 대안보고서 제출을 통해 그것의 수행에 대한 감시역할을 부여한다.

이 두 개의 부속 협약은 비슷한 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은 반면, 아동권리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이러한 법률기구에 관하여 NGO의 대안보고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

ECPAT 연계그룹들의 경험은 이런 종류의 모니터링 활동이 어떻게 성범죄로부터 아동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특히 아동매춘과 아동 포르노에 관한 부속협약(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과 관계하여 보여주었다.

우간다에서는 OPSC대안보고서에 포함된 대부분의 권고사항들은 CRC위원회의 최종 의견들을 모아 결정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에 UCRNN에 의하여 수행되어진 응호활동은 CSEC대항하는 국가적 실천 계획 뿐 아니라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의 실천계획의 발전을 이끌었다.

불가리아에서, 대안보고서의 작업은 같은 이득이 있었다.

ECPAT International과의 협력 속에서, Neglected Children Society는 대안보고서의 기안을 위한 실천 안건의 이행상태에 대한 ECPAT Global Monitoring보고서 안에 담겨있는 정보를 정

리하였다.

하지만 OPSC에 대한 최종견해와 권고사항은 정부에 의해 광범위하게 퍼뜨려지지 않았고 다음 작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다른 기관에 의해 사용되지도 않았다.

몇몇의 중요한 결과가 성취되었던 반면 이 두 가지 경험에 의하여 얻어진 교훈은 NGO의 대안보고서와 CRC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기본적인 원칙이 따라야한다는 것이었다.

대안보고서의 생산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여러 주체들을 포함하는 참여과정의 결과라는 것 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제기구와 현지 NGO의 예비협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시민사회단체와 국가가 모든 수준에서 건설적인 대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보고과정에서 활동적이고 의미있는 아동 청소년의 참여, 특히 경험이 많은 젊은이들의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각각의 이해관계자는 사실상 수행할 역할을 가졌고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대처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렇더라도, 대안 보고서 준비에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기관들의 기술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과 조사를 포함하여 좋은 정보들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CRC위원회의 최종견해와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하자면,
해당 국가에서 그들의 협동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발전시킬 때 그들을 숙고하기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개다가, 권고사항들은 특별 의무를 지닌 사람들과 옹호하는자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정부가 이러한 권고 사항에 따라 행동 할 것을 보장하는 후속 조치 노력들이 특히 필요하다.

권고사항은 많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특별할당 예산으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실행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전국조정단체가 형성되는 것은 특히나 필수적이다.

정부가 CRC와 부속 협약 보고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능력을 기를 때에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변호업무는 필수적이다.

Workshop - 16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관광 근절의 국제경험

영국 ECPAT의 Alice Macek씨와 Terre des Hommes의 Lucien Stöpler, 그리고 콜롬비아 APLE의 Samleang Seila씨,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경찰 소속의 Peter Reijnders씨의 발표로 구성된 워크샵

사회자: Fabiana Gorenstein

조정위원: 국제 ECPAT의 Giorgio Berardi

법역 이외에서 유효한 법제정의 도입이 지난 십여년 동안 몇몇 국가의 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행 중 일어나는 아동 성 착취 사건의 수는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법역 이외에 적용되는 법이 부족한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각각의 국가에서 사법기구사이의 협동과 협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간 파트너들 사이의 정보의 흐름은 최고로 불완전하고 드물었으며 이것은 착취자들이 사법체계의 균열을 파고들 수 있다는 구멍이 남겼다.

예를 들면, 성범죄자 명부는 아동 성 착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것들은 단지 몇몇의 국가에서만 실행되고 있다.

또한, 몇몇의 경우에는 조사관들에 의한 도움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요소들도 있다.: 오직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들만이 목록에 포함이 되고 몇몇의 이름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목록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은 이미 개별적인 사례들이 결실을 두고 있는 (UK-Philippines 협약t, US과 the Protect Act아래의 외국정부의 협약)다각적이고 쌍방적인 조건하에서 여전히 크게 약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틀 안에서 과소평가되지 않는 요소는 정부에 의해 외교 임무 안으로 배치된 경찰연락담당 당자에 의해 수행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을 때, 성착취로 부터 아동보호의 기본들도 다양한 이유때문에 준수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되었다.

가난과 무지의 일반적인 배경에 반하여 (이것이 아직 공모로 전환되지 않은) 더 넓은 범위의 간접(중재)은 CST현상에 대처하는 것에 더 중요해 질 수 있는 빈곤감소방법, 교육, 자각 상승, 전문적인 분류를 위한 맞춤 훈련을 포함하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채택된 방법들은 문제를 야기하는 근원과 아동성착취의 공급측면을 목표로 한다.

워크샵에서 제공된 캄보디아의 사례연구는 조사활동을 포함하기위하여 확장된 현재 기구들의 특별한 경우에, 법률기관과 NGO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이런 종류의 협의는 모든 국가에서 모사되기는 어려울 수 도 있다고 지적될 수 있다. 정부가 NGO에 대하여 그들의 감시 기능을 위임하는 것이 얼마나 적합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들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국가들의 (55명의 외국인들이-몇몇의 지역 사람들 추가하여 2003년 이후로 체포됨) 이러한 협동의 결과는 거절할 수 가 없는 것이다.

증대한 관심을 받아야만 하는 요소 한 가지 더는 여행객을 위한 포괄적인 정보의 제공이다. 그래서 그들의 향상된 인식이 그 자체로 추가적인 법률 기관의 무기적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가장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로 되는 상황에서, 워크샵은 정부들 사이의 효과적인 협약의 발전을 규명하고 요구하였고(같은 목표로 했던 다자간 참여는 실패) 이것은 실행할 수준과 예방적이고 보호적인 사법요소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팀은 (based on the model of the Global Virtual Taskforce and including child-protection specialists)은 외국인에 의한 아동 성착취 사건에 대하여 더 능률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 형을 받은 가해자는 그들의 형량기간 끝에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그들의 나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준비된 후속조치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죄자들이 감시와 재발방지에서 도망갈 수 있다.

Workshop - 17

스포츠에서의 성 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

Moushira Khattab, 아동권리위원회 멤버와 Susan Bissell, UNICEF Innocenti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국제기준과 권리” 스포츠계의 아동과 폭력에 대한 조사. 지역사회체육계의 성 착취로부터 아동보호”의 워크샵

사회자: 캐나다출신의 Senator Raynell Andreychuck

조정위원: 인권 위원 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Veronica Birga

UNICEFIgnocenti Centre에 의해 시행된 최근의 연구는 스포츠계에서 성, 연령, 성적학대와 괴롭힘 그리고 신체적학대 등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차별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르면(기사 31), 아이들은 쉬고 여가를 즐기고 즐거운 활동을 할 권리 가지고 있다.

협약은 기사31을 다른 권리들만큼이나 중요한 권리로 보며, 스포츠를 포함한 여가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대처하는 것에도 동등한 수준의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여긴다.

그 결과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하기 위하여 스포츠계에서의 아동권리를 위한 그룹을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스포츠가 좋다는 것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스포츠계 내에서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는 슬프게도 오랫동안 간과되어왔으며 매우 적은 데이터만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용가능하다.

스포츠계에서의 성 착취에 대한 인식의 부족, 스포츠계 내에서의 성 착취에 관하여 구성된 범죄 연결망의 참여가능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스포츠계와 관계된 아동인신매매에 대한 조사의 부족,

성별차원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의 부족 (어떤 스포츠들은 오직 소년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폭력과 착취를 기록하기 위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한 기록 메카니즘들의 부족은 스포츠 계에서 아동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모든 요소들이다.

위에서 정의된 그 차이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취해져야하는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워크샵에서는 또한 특별히 여가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였다.

스포츠계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구조와 실행계획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적절한 성교육은 학교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하며 모든 아이들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고사례가 따라올 수 있는 후속조치시스템을 포함하여

비밀보장과 스포츠계에서의 아동폭력에 대한 안전한 보고서 행을 제고할 메카니즘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워크샵은 또한 스포츠산업계 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면 스포츠 조직과 연합에 의해 채택된 행동강령을 계발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말이다.

이 산업들은 반드시 아동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고용을 위한 효과적인 메카니즘을 설립하고 실행해야한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과 일하는 이들은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

최근, 워크샵은 CRC위원회가 스포츠계에서 아동권리구현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을 장려한다.

Workshop - 19

조사관들의 대화

사회자: 브라질, 브라질리아 대학 소속의 Maria Lúcia Leal

조정위원: Rosângela

나타난 연구와 지식분야(사회 서비스, 심리, 교육, 사회학, 법, 인류학)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아동과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춘 브라질연구에 대한 넓은 학제간의 접근은 가능한가?

이러한 접근은 자연히 다양한 분야에 해당되어져야하며, 대중정책과 실행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연구 프로젝트는 조사관, 사회 운동가, 정부관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사이의 전략적인 협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용어로, 양적인 조사는 프로그래밍과 증명할 수 있는 정보와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질적인 조사는 양을 넘어서 내용을 제공한다.

때때로 양적인 정보와 통계는 매우 일반적이고 불충분하다, 특히 CSEC에 대항하는 정책과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그러하다.

예를 들면, 많은 통계자료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인신매매가 기록되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기소가 시작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당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아동 성 착취 근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점은 이러한 통계자료들이 인신매매가 발생했던 이유들과 희생자가 아동인지 성인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양적인 조사는 정보의 차이와 공공정책, 프로젝트 그리고 이전정보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질적인 분석은 통계자료와 양적인 정보에 기초해야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서는 CSEC에 대한 정보를 양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성매매관광에서 문제의 성질변화, 매춘에 포함되는 아이들의 이동성,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성 그리고 관할구역들이, 지난 몇십년간 CST가 그 작업의 결과로서 감소되었는지 양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지연시킨다.

공공정책과 지식의 생산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관계들이 아동과 그들의 권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공공정책이 공공기금과 지식생산을 위한 현재의 우선사항을 통해서 지식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연구결과는 지지와 공공정책을 안내한다.

조사의 윤리적 수치는 정보의 생산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나

많은 연구들이 극히 취약한 상황과 보수적인 문화의 사회 속에 있는 아이들과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여야한다.

위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한 논쟁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권고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다른, 비전통적인 지식 분야가 연구생산과 과학지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봐야한다.

이러한 논쟁은 조사관들의 자치를 존중하는 비관료적이고 비계급적인 토론 속에서 다양한 주체와 기관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화를 조장하는 전략은 개발되어야 한다.

INTEGRATED INTER-SECTORAL POLICIES

테마3은 통합 inter-sectoral 정책과 inter-sectoral 공공정책과 다른 수준을 가진 정부사이의 협동과 사법시스템의 통합 그리고 훈련기관의 역할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토론에 포커스를 맞추었다.

THEME 3

2008년 11월 27일 오전9시--오후12시30분

페널발표 요약

페널발표- 통합 inter-sectoral 정책

발표자- Cindy Kiro, Children's Commissioner, New Zealand

CSEC를 대처하고 종결시키기는 핵심은 모든 주체들의 참여이다.: 정부와 시민사회(모든 수준에서)

모두가 문제의 심각함을 자각하고 있다. CSEC나 아동학대는 거부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대의 범죄 분야 사람들에 의해 최소화되고 있다.

이것은 가장 중심적인 경향이며, 아동의 분명한 취약성 때문이다. 아동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항하여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부모, 보모, 가족, 친구, 무관심한 사회, 착취자 등.

이것은 솔직하지 못한 대중과 하나의 관점만이 예상되고 그것과 다른 현실이 실현되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중된다.

Louise Browndm 책 “Sex Slaves”에서는 아시아 여성들의 인신매매가 매춘의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지적한다. “여성과 남성, 가난과 부유, 사회의 지배자와 소수자의 사이의 왜곡된 힘의 관계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성문화 산업은 돈을 만든다. 왜냐하면 이것은 값싼 원료를 사서 그들을 잘 포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약자를 상품으로 만들고 상품은 이익을 만들다.

CRC의 기사 34와 35는 명쾌하게 성 착취와 아동인신매매를 다룬다.

아동의 권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CSEC를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왔고 더 많은 국제기구들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세계적인 노력으로 몇몇의 성과가 만들어졌음에도 CSEC는 지난십여년 동안 늘어왔다.

성인, 아이들의 변호인, 의회의원, 리더로서 우리는 커다란 책임과 더 잘해야 하는 긴급사항을 가진 것이다.

규모와 긴박함이 최근 가정으로 찾아왔다.

-통계자료를 사용한 경고, 하지만 힘 있는 주장-

어린이보호연맹(Kids Safety Alliance)은 온라인상에서 수백만 장 이상의 아동의 성적인 이미지 확산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오직 1000명의 어린이들만이 지금까지 파악되었다. 90%이상의 사진들이 서방국가에 의해 생산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신뢰하는 위치의 사람들에 의해서다.

--이러한 사진에 접속하는 사람들 중 40%정도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계속한다.

그들은 보통 교양수준이 매우 높다는 사람들이다.

성매매와 어린이 및 젊은 여성과의 섹스를 원하는 고객의 욕구는, 성적인 본능의 문화적 적응과 인간관계의 비도덕적인 패턴의 생성 및 이를 지속시키는 심리사회적인 성적 문제들에 의해 나타난다.

이 문제의 중심은 사회 속에서 여성과 남성 그리고 우리자신과 서로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다.

성폭력이 발생하고 목인되어지는지, 그리고 활성화되고 상업화되는 것인지의 이유는 복잡하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왜곡된 가치와 불평등 그리고 자신의 흥미의 환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족, 아동보호소, 사회단체, 정책입안자에 대해서

좌절된 뉴질랜드의 한 어린소년의 실제 이야기를 인용하자.

그녀의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이것은 세계의 아동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개선을 만들어 가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국제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매춘은 15세 이하의 아동들과 불법적인 섹스를 가지는 범죄자들을 위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홀륭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아동의 성적 착취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토착인과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사람들의 학대-- 뉴질랜드와 다른 몇몇 국가들은 토착 어린이들이 성 착취와 학대에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폭력과 가난, 질병에 노출되어있다.
-- 이러한 요소들과 강한 상호관계를 가진다.

빈곤을 처리하기 위해 취해진 정부의 대책들은 그것의 감소를 이끌었다.

아동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의 실현은 얼마나 정책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책이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촉구되었지만, 사실상 정책의 잠재적 영향 혹은 아동을 위한 결과물에 대하여 평가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많은 사회에서 아동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매우 적을 뿐이다.

만약 우리가 어른들을 위한 권리를 갖는다고해도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권리도 가졌다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와 사회들은 아이들의 복지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갈등한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절차를 준비해야한다.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책임은 점점 더 모호해지며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식이다.

이상적으로 아동보호는 정부와 부모와 그들의 사회가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야한다.

아동인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아동 성 착취의 기반적인 요소가 있다.: 어른들의 태도이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소유권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하여, 아이들이 종종 소유물로 여겨지고 다 소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이것은 분명한 문제점이다.

다른 지배적인 취약점(NZ에서의)과 다른 국가들에서 남성의 여성폭력을 용납한다.

이것을 다루기 위해 많은 것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멀어 보이고,

그들의 아이들은 여전히 소유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남성보다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마치 아동이 성인보다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과 같이 말이다.

너무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폭력을 그들의 권리로 보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을 허용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아동은 그들의 사랑과 에너지 때문에 때때로 연약하지만, 그들의 경계심과 영혼은 현재 겪고 있는 모멸적이고 상처를 주는 대우로 인해 약화된다.

" 영국, 정무차관 Alan Campbell의 발표 "

이번 발표는 영국정부가 아동 성폭행과 성적 인신매매를 막으려고 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 세계 사회는 이와 같이 성적으로 피해를 받은 아이들이 있음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줄이려는 노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세계 사회는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돋기 위한 새로운 방책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방책들은 이미 국제적인 경계를 넘어 착취당하고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아동 성폭행 관련법들은 이미 규정되었고 지금까지 아동 성폭행 착취라는 범명으로 90건의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2005년, 영국 정부는 유럽연합이 인권 착취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 계획의 초안을 세우는 일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의원회는 이 계획을 유럽연합의 법으로 채택하였고 이것은 영국 국가적 법적 조치 계획으로도 발전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인권 착취를 막기 위한 유럽 정부 간의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영국이 유럽연합 의회에 사회 착취에 대해 서명을 했고, 아동인권을 위한 United Nations Convention과 다양한 ILO 의회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 협의의 참여국을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각각의 아이들 상황에 따라 아이들 프로그램을 바꾼다' 라는 다짐 아래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검토하고 구축했습니다. '아동 보호'는 이러한 정부 체계가 가져온 중요한 성과중 하나입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알아내기 위해 힘쓰는 기관들을 돋기 위해 영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아동 전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경찰관협회, 아동성폭행관리회, 온라인보호센터는 협력하여 지역 기관들이 피해 받은 아이들을 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만들어 둡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복지사, 경찰관 등 관련 담당자들이 아동착취의 진제가 되는 3가지 요소인 '행동', '통제', '착취'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효율적으로 작동 하려면 잠재적인 희생아동을 돋기 위한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주요 실천과제인 교육, 대비, 전문가, 경험의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기관들이 협동하여 2개의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으로 들어오는 항구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알아내고 있는데 이 협동 프로그램은 항구를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상습범들을 알아내고 위험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여 반드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동 실종을 막고자 합니다.

2008년 6월에 개선된 성폭행 관련 아동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었고 그 최종 본은 모든 최전방 기관들을 위한 법정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2008년 5월, 영국 정부는 아동 성폭행 보호 관련 유럽연합 의회에 서명을 했고 그 안건들은 현재 비준되기 위해 국회에 올려 졌습니다. 이는 아동 인신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래피 산업에 대한 초안 계획에 관한 안건들입니다.

영국 정부가 아동 성폭행을 막기 위해 실행한 다른 조치들로는 범죄자들이 해외로 나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꿨습니다. 영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나라에서는 그 범죄행위가 불법이 아니더라도 영국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만으로는 성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을 사는 남성들이 태도를 바꿔야 하

고 현실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강한 국제적 연계와 효과적인 협력이 중요하지만 더 많은 예방 활동이 잡재 희생자들 사이 알려지고 국가가 이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UNICEF 보안감부 Rima Salah의 발표"

이번 발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적 착취와 강조되고 있는 협력 정책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협력 정책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긴급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중앙 아프리카에 위치한 '차드'라는 나라를 들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구와 감시 기체가 상업적 아동 성폭행을 막기 위한 국제 협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 이지만, 이것이 시행되길 바라는 것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국제기구의 실행 능력을 증가시키고 모든 방식의 성폭행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아직 해결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차드'를 포함한 아프리카 서부, 중부, 동부에 있는 20개의 나라는 현재도 내전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몇 년 동안의 거듭된 내전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있는 많은 단체들은 그들이 인권이 내전 참여국들에 의해 무시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무분별하게 이런 내전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당하는 성적 착취와 학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적 착취은 내전 중 어린 나이에 강제적인 결혼, 성적 노예, 성폭행과 학대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특히 차드에서는, 10살 정도가 되면 여자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들 뜻에 따라 강제 결혼을 해야 하거나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적 노예는 내전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찾아 볼 수 있고 많은 경우 민족이나 부족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집안일이 성폭행이라는 간단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성적 착취 대응책은 반드시 지역별 갈등이나 충돌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많은 좋은 지역별 대책 기구들이 발달되었는데 이 기구들은 아이들의 권리를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상승시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합니다.

또한, 인권 위원의 가장 인상적인 성공사례 중 하나는 인권과 아이들의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현장', '아프리카 전문가들의 위원회',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특별 조사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차드에서는 성적 착취가 여러 가지 형태로 벌어지는데 어린 여자아이들이 주 희생자가 됩니다. 무장한 단체들과 위원회 구성원들은 모두 성폭행 범입니다. 안타깝게도 차드에 있는 지역 권리자들은 강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간의 경우는 주로 가족들의 경제적 이득과 같은 지역적 특성과 관련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강간을 가족들에게 의한 성적 착취로 변모시켰습니다.

강간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의 상당 부분이 오래되었고 식민시대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UN은 자연 재해, 국내/외 전쟁, 긴급구호, 짐작을 수 없는 인권 침해 상황을 책임져야 할 최고 중심에 있습니다. 차드에서는 국제기구가 성적 착취와 학대를 포함한 아이들의 인권에 집중하며 많은 보호책을 실행해왔습니다. 유니세프 또한 차드 정부가 법적 아이들과 여성을 위한 예방보호책, 직접적인 형벌과 처벌을 비준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UN 기구들은 성폭력에 관한 안건을 난민 처녀 피난처에 있는 여성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인증 받은 교육을 제공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UN은 또 인권과 새로운 국제적 인권 정책 요건을 만들어 법적 보호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법의 실행을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난민 처나 특정 도시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는 850명의 스텝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모두 UN 국제 정책 본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UN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과 성폭력 교육을 받았습니다.

UN은 차드와 다른 국가들과 함께 법적 규범과 같은 나라의 기반이 되는 밑 단계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드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서 전통이나 나라 고유의 문화적 관습 때문에 계속해서 법적 개정이 막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성폭행 범들을 기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워크샵 요약

워크샵 2

국가 목표 : 국가 질서를 위한 협력 정책

브라질 보건부 장, Marta Maria Alves da Silva가 “국가적 차원에서 폭력예방 네트워크 구축과 건강 향상을 위한 구성”에 대한 워크샵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교육부 장, Leandro fialho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 증설 : 풀타임 교육과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사회자 : Valeria Gonelli, 브라질 사회발전부 부장

조사위원 : Celeste Anunciata Baptista Dias Moreira, 리오데자네iro 주 대변인

국가 질서를 위해 개선, 교육, 조사, 감시가 통합된 협력 정책을 시행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적인 접근은 지식, 경험, 어려운 정책에 대한 관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다양성을 고려하고 국가의 이전 실패한 질서방법을 배제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구축하기 힘든 네트워크를 통합할 수 있고, 각각의 방법의 장점, 기술, 경험, 표준화된 통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와 기관 사이 대화는 통합을 위한 방법입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폭력 예방/국가적 건강증진 센터 실행을 했습니다. 211개의 센터들이 지역적 폭력 예방에 힘을 썼고, 국가 기관들은 폭력 반대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폭력을 하는 수많은 일반적인 요인은 구명되었고, 보건부의 폭력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틀은 자료 수집에 유용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교육부에서 문화체육사회발전부 장관의 도움을 받아 "More Educa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복합적 교육을 장려하면서 시민의식과 인권에 포커스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보수적인 교육법을 버리고 대신해서 학교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는 교육한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지역 모든 공동원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여러 학문의 발전과 학문 간 공동연구 향상을 위해서는 강사 교육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폭력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틀의 기준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당한 폭력에 대한 조치를 취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영역층이 반드시 더 민주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을 막는 프로그램에 후원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활동가 사이 의사소통도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추후 정부차원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합동조치도 반대로 현재 지역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워크샵 3

주(州)의 역할 : 연방제이든 분권된 국가이든

서로 다른 정책 수준, 국면, 국가 내 수준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

Carmen Oliveira(공화국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인권 담당 전문 비서), Saisuree Chutikul(태국 정치가), Maria da Luz Magalhaes(양콜라 사회적 원조와 재통합을 맡고 있는 부장관)이 이번 워크샵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회자 : Marta Santos Pais (유니세프 이노센티)

조사위원 : Margaret Brown (유니세프 양콜라)

정부가 아동 보호에 대한 협력하여 만든 틀을 개선하려는 행동들이 바로 이번 토론의 요점이었습니다. 브라질, 태국, 양콜라에서 온 대변인들은 이번 안건에 대한 깊은 이해(통찰력)를 보였습니다. 이번 안건은 그 정부들이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정부간 아동보호에 대한 대책 틀을 상호적으로 돋고 있습니다.

1990년 브라질은 아동/청소년 법의 보호 하에 서비스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이들에게 맞춰진 프로그램들을 넓은 범위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고려한 견고하게 다져진 법적 기반은 필수적입니다. 프로그램들은 14개의 주요 정부의 각 부처와 시민 사회가 효과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이들은 정부차원과 효과적인 지역 관리 차원 모두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효과 지표는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기 위해 이미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특히 아동 폭력에 대한 보고에 관한 데이터 전체를 통합할 수 있도록 기준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보모음들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면 정책 수준/환경에 대한 정보가 통보되어야 합니다.

태국의 경우, 아동성폭행에 대한 조사에서 미안마에서 성폭행이 가장 많이 일어 난 것으로 밝혀졌고, 태국에서는 아동 성매매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두 정부는 협력하여 성매매된 어린 여자 아이들의 사건을 조사하고, 그 아이들중 많은 아이들은 폭행도 당했습니다. 정부 연락 담당자는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간 교류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고 태국이 1994년 국가정책계획을 통해 협력을 승인했습니다.

이 국가정책계획이 만들어진 과정과 실천은 다른 교훈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계획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인식과 다른 방식일지라도 서로 말해보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고, 정보 기관사이 성폭행과 같은 주요개념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가져야만 합니다. 정부와 민간 기관 사이에서는 파트너십을 쌓고,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항목과 절차상의 틀 마련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는 아이들이 아동 의회에 참석하여 입안단계의 법을 의논합니다.

2004년 아동의 권리에 대한 토론을 한 국가포럼이 있은 후, 양콜라는 점차 발전하여 아동을 위한 기관 11개와 아동을 위한 국가 의회가 만들어졌고 절차에 대해 협력하고 절차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국가 의회는 서로 도와 앙골라 정부와 UN 기관들, 시민 사회 사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 생존률 증가, 신선하고 영양분이 있는 음식, 출생신고 무료, 아동 교육이 가능해졌고, 초등학교 교육질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법 서비스도 진행되고 있고, HIV와 ADIS의 확산을 막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기관들은 수준에 맞게 아동 보호를 위한 11개 기관의 공동 틀을 통해 분권화를 하여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아이들은 폭력을 알릴 자신감을 얻고, 정책발전은 알릴 수 있는 지표로 프로그램에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중요한지 알게 하고 그 장소를 제공합니다.

보통 효과적인 아동성폭행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시민 사회와 효과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지역적 접근과 국가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메카니즘은 정확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내야 합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방법들은 꼭 의식 고양과 관련 교육과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부들은 충분한 지원을 하여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워크샵7

아이들을 완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포인트(도움, 예방, 가능성)에 집중하라

발표자: Thoko Majokweni, 남아프리카 국제 기초 단체의 성범죄 부서

Eduardo Melo, Asocion Brasileira de Magistrados Publicos 구성원

Edelweiss Silan, 대만 세이브더칠드런 구성원

중개자 : Margie de Monchi, 남동아프리카 유니세프

조사 위원 : Joseleto Santos, 브라질 Programa Sentinela 구성원

성폭행을 당한 아동들은 일반 범죄를 당한 사람들과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각도와 겪었던 상황에 대한 트라우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추가적으로 더 쉽게 상처를 받고 힘이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한 어른들의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폭력과 트라우마 현상을 겪게 되면,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필요한 신체적 회복, 상담 서비스, 법정 도움,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통합적인 제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태도들과 아동 성폭행 피해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배려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이 추후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고 다른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주는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따온 좋은 사례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남 아프리카에 있는 Thuthuzela센터는 고품질의 통합적인 중요한 사례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시했습니다. 그 센터는 현재의 연구 네트워크, 절차, 의료/치료 서비스를 간소화 하는 것을 목

표하고 있습니다. 즉, 한 장소에 이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스톱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이 성폭행 피의자를 고발하고 꼭 필요한 치료와 법적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법적 처리를 빠르게 하고, 이러한 빠른 처리로 인해 90% 감금이 성공되었습니다. 각 부서원들은 특별교육을 받습니다. 약 64개의 원스톱센터가 국가에 세워졌는데 이는 매년 4만명의 학생들을 돋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도전은 확실히 꾸준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잠비크, 짐바웨와 같은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들은 과정을 볼 수 있는 '과정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표'는 개념적인 틀로 정부의 아동 보호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표의 목적은 각 단계에서 행하는 것들이 어떻게 최종목표와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틀의 중요성은 이것이 가이드가 될 것이고, 순서대로 따라만 하면 되며,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어느 곳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정표의 성공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지, 누가 사건을 맡을 것인지 누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보호 절차는 반드시 아동을 중점으로 고려해야 하며 여러 분야에 걸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발표자들은 아동보호 시스템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포괄적이어야 하고, 실행될 때는 아동권을 중시하는 시각과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딱 들어맞도록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폭행 아이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다시 말하면 모든 구성원들은 이러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따로 받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워크샵 12

성폭행 피해 아동, 청소년을 돋기 위한 체계적인 시민 사회의 역할

워크샵에서 FACE 대만의 Sudarat Sereewat씨가 "아동 성폭행을 줄이기 위한 여러 학문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의 발전: 정책이 커뮤니티로"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ECPAT 스웨덴의 Helena Karlen씨는 "증가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셨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행에 대한 브라질 감사위원회, Neide Castanha씨는 "브라질에서 시민사회 협조"에 대해 말해주셨습니다.

중개자 : ECPAT 국제연맹 이사회 멤버, Maureen Crombie

조사위원 : ECPAT 국제연맹, Nadine Swibenko

발표자들은 아동 성폭행을 줄이기 위해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하는 많은 기회에 대한 아웃라이언을 제시했습니다. 발표에서 개인과 1개의 기관에서는 절대 아이들을 성폭행에서 보호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에서 국가를 비롯한 세계적 단계까지 많은 협력이 있다면, 아동 성폭행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들이 성폭행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제해 주고, 보호소에서 적절한 케어와 안정을 주고, 국가에서는 법적조치를 취하고 NGO와 함께 최고의 보살핌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경찰들도 성폭행을 국제적으로 막기 위해 필수적이며 성적 이익을 위한 아동 납치를 막아야 합니다. Neide Castanha는 아동 폭력을 모든 사회구성원의 어깨위에 올려 진 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필요를 얻기 위한 협력은 이번 발표의 주요 논의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필요 요구에 앞서 3가지 추진력에 대해 봐야합니다.

1) 공급 : 예를들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저교육을 받았고, 쉽게 사기당하고, 쉽게 착취 당하는)아이들

2) 중재자 : 매춘알선자, 부당 이의자, 조직화된 조폭그룹

3) 특혜를 받은 피의자와 상황에 다른 범죄자

아동 성폭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또 다른 희생자를 낳지 않도록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상업적인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에 배포하지 못하도록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바코드를 통해 관광사업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신용회사들이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사는 것을 막도록 해야 합니다.

워크샵에서 말한 주요 추천은 시민사회와 모든 커뮤니티들은 더 많이 피해 받은 아동들과 아들 위협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더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World Congress 3에서 답해집니다. 여기에는 이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노력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단지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폭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도 아동 성폭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시민 사회, 커뮤니티, 사회적/법적/신체적 전문가들이 모두 필요합니다. 상업적 성적 노출에 대한 분석도 강조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것 또한 성폭행이 일어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움이 필요한 곳은 긴급한 관심과 산업화된 나라들은 반드시 범죄자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워크샵 13

성폭행을 예방하고 성폭력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아이들의 참여를 통합하고 강화하기

발표자 : Grace(아동), Claire Feinstein, Lena Karlsson, Susan bissel

사회자 : Ravi Karkara

조사 위원 : Lena Karlsson

아동 대변인은 아이들이 성폭행과 관련에 이슈를 생각하고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나라가 만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과 어른모두 건물 주변에서 벌어지는 성폭행과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의뢰합니다.

최근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해 UNICEF IRC 업무로 아동 참가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규칙과 주요 발전/구현을 위해 의미 있는 아동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은 이러한 것들을 강화해야 하고, 더 적합한 실행을 위해 국제적인 기준과 규약이 필요합니다.

UNICEF IRC는 또한 법적이나 운영과정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 과정에 대한 법률 제정 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실행된 증거는 없습니다. 목격자들이 진술했을 때 보호되는 메커니즘과 법률 관련 공무원들의 훈련이 많은 나라의 법적 시스템이 보다 아동 친화적일 수 있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동 권리에 대한 특정 기준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아이들의 시각은 항상 고려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법적 결정이 곧바로 그들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아들이 법적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1) 아이들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지 2)아이들의 관점의 적절성 3) 범죄 과정의 정확성
4) 아이들 진술의 진실성 5)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6) 범죄 과정의 난폭성에 따라 아이들의 나이도 고려해야 함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법정에서 더 많은 실질적 기회를 같게 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발전된 정보와 정책과정과 프로젝트 발전/실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합니다. 아동보호 시스템의 발전은 아이들을 지지하고 더 많은 국제적 기준과 국제적 관심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국가들은 반드시 아동참여를 위해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들의 참여를 위한 적절한 전략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 참여는 국제적 컨퍼런스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이고 조직화된 노력은 더 중요해질 것이고 이에 대한 준비와 보조가 필요합니다.

워크샵 14

갈등상황에서의 아동보호

발표자 : Sara Norton-Staal, 남아프리카 유니세프, "성폭행으로 위급상황이나 갈등상황에 있는 아동 보호"에 대해 발표함.

Manuel Finelli, 세이브더칠드런 Ivory Coast 지사, "국제 구호원과 평화유지군들로 인한 성폭행과 성폭력"이라는 주제로 발표함.

Lynn Ngugi, UNHCR, 나이로비와 Elizabeth Ngugi 교수 "갈등속 청소년/아동 성폭행"발표
Kimaru Wakaruru, PLAN International, "갈등과 갈등전 상황에서 성폭행 피해 아동 보호
-Plan의 경험"에 대해 말함.

중재자 : Francesaca Morandini, 르완다 UNICEF

조사위원 : Dulcey Bower, Plan 국제 본사

위급상황이나 갈등상황에서 아동들은 성폭력과 성폭행의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가족들과 헤어지고 식량부족, 사회적 섬유나 문화 가치의 약화, 이 어려운 점이 아이들을 성폭력과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많은 벼려지거나 고아가 된 아이들은, 물론 여자 아이들도, 그들이 그 가족의 가장이 됩니다. 그들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 쉽게 성매매에 유혹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남자 아이들도 또한 성적 학대를 받습니다. 여자아이들에게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연구와 뉴스 리포트에서 아동 성 피의자들 중에는 성매매와 같은 위급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우라고 보내진 국제 구호가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 학대 사례는 보도되지 않습니다. 아동 보호 이슈나 비난을 살 커뮤니티에 대한 부정적 이슈를 일으키는 부적절한 사건에 대한 잡식되는 보도 과정은 위급상황이나 갈등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의 성폭행 피해를 야기합니다.

이 워크샵은 인도주의적 단체들을 불러 그들 단체의 아동 보호 안건을 강조했습니다. 아동 보호 과정중 하나는 반드시 환경조사나 국제 구호가를 뽑는 등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규범은 의무를 명확히 설명해야하고 구호가들의 요구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보고하고 감시하는 것

이 필요하고, 기관들은 커뮤니티들과 함께 커뮤니티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위험하거나 갈등이 많은 지역에서 커뮤니티들과 일을 하도록 배치된 NGO 직원들과 군인들, UN 평화유지군들은 반드시 아동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자아들의 보호를 위해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남자아이들과 성인 남성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직접하는 참여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회복 정도, 사회의 도움, 다른 통합적인 도움이 만족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전쟁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일어나고 있는 성폭행에 관련된 자료가 시스템적으로 모아야 하고 성별/나이 별로 자료를 나눠야합니다.

워크샵 15
HIV의 영향/충격

워크샵 참여자 : Patterson Njogu, 케야 UNHCR, “HIV와 아동피해”
Pamela Chisanga, 잠비아 CHIN, “아프리카 아동/청소년 성폭행과 HIV에이즈와의 관계”
Brian Willis, 미국 ECPAT, “아동 건강과 복지에 아동 성매매가 주는 영향”

사회자 : Marie de Lurdes Magalhaes, 브라질 보건 복지부

조사위원 : Gabriel Fernandez, 잠비아 UNICEF

HIV/ADIS와 상업적 아동 성매매 관계는 다양하고 이번 워크샵에서 상화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HIV/AIDS와 성매매를 한 아동들의 건강 상태와의 관계를 조사도 보고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ECPAT 국제팀과 잠비아의 아동을 위한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6개국에서(에티오피아, 캐냐, 잠비아, 토고, 우간다, 잠비아) 지역적 조사를 했습니다. 이는 HIV/AIDS에 이미 걸려있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보호, 예방할 수 있는 지역적 틀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사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업적으로 성매매를 당한 아이들이 입었을 상처이고, 성매매후 HIV/ADIS 감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가족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들을 큰 위험을 무릅쓰고 성매매를 하게되는 것이고 HIV/AIDS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잠비아의 경우 대부분의 고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2~3년 안에 성매매를 하게 되고, 성매매 아이들 중 20%는 보통 성매매 이외에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특별한 성매매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은 그와 비슷한 수입을 가져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통합되거나 더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여자아이들은, 매우 어린 나이에 첫 성경험 상대와 약혼을 하고 (인터넷 60%아이들은 11세에서 13세에 약혼을 함) 콘돔 사용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이야 말로 첫 성경험을 하는 나이를 미룰 수 있는 방안입니다.

UNHCR은 HIV/AIDS 예방활동을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에 통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매매를 하여 HIV/AIDS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 위한 것이며 점점 프로그램의 수는 처음 시작할 때보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할 경우 아이도 전염되는 전염성, 학교 입학/퇴학 프로그램, 고아나 상처받은 아이들(HIV/AIDS 걸리지 않은)을 위한 특별한 조정 프로그램, 보호소 캠프에서 하고 있는 성매매를 이미 했거나 피해를 입은 아동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등관계, 전쟁 중 신병모집, 보호소

에서의 지루함/따분함, 부모와의 이별, 고난, 사회적 혼란이 모두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고, HIV/AIDS에 걸리는 데 가속을 붙이고 있습니다. 피해아이들의 자아와 범인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인구이동으로 인해 갈등이 더 깊어지고 법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ECPAT의 발표에서는 성폭행 피해 아동들이, 성병이나 HIV/AIDS에 감염된 아이들도 포함(성매매로 인한 아동 감염률은 성인여성 감염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음), 직면한 많은 건강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성병에는 감염되지 않았지만 성매매로 인해 천식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약물중독도 HIV/AIDS감염, 성폭력,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신병(스트레스, 두려움, 우울, 자살), 임신(15세에서 19세 사이 여자아이들의 자살률이 높은 원인), 성매매로 인해 갖은 아이들도 성병을 옮기는 현상과 모두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발표자들은 커뮤니티 단계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알아내고 건강상태를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을 치료해주면 계속해서 성폭행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쟁점은 아동이어야 하며, 모든 가능한 중계점에서 아이들이 성매매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국가들이 충분한 지원을 HIV/AIDS 프로그램과 성매매 희생자들이 HIV/AIDS를 치료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촉고합니다. 교육이 주 예방법이라면, 국가들은 적절한 경제적 지원으로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보건 전문가들과 협동하여 단계별로 예방과 치료를 위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의는 지역 상담가들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번째 국제회의를 위해 아동폭력에 관한 조사를 한 상담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워크샵 20
아동과 청소년들의 대화

참가자 : Cath Moss, 체코 ENYA와 ECPAT 국제 이사 멤버
Marianna, ECPAT EICYAC 우크라이나 아동 대표
Olga, ECPAT EICYAC 러시아 아동 대표
Yka, 인도네시아 국제계획 아동 대표
Rasa Sekulovic, 국제 계획
Tamilis, Associacao Lua Nova, Aracoiaba da Serra
Luis Cesan, 제네바 BICE
Fernanda, 브라질 아동 운동
Janjera Wongsinard, 대만 텁남레이 아동 보호기관

사회자 : John Paul Kibirige (우간다 아동 그룹)
Laurence Gray(월드비전)

조사위원 : Ruthi Hoffman-Hanchett

아동과 청소년 참가자들의 다른 관점은 참가자들의 다른 생각/ 도움을 주는 방법/ 아동들의 발표 참여권/ 참여강화를 위한 방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주위를 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상업적인 성매매와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참가자들은 전제적인 과정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즉 프로젝트의 초안작업-계획-실행-평가를 모두 아우러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각들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봉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순수한 지원자, 상담가 또는 주요 창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 대표들중 일치하는 의견은 아이들이 성폭행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첫 도전을 하는 중요한 기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커뮤니티, NGO, 개인 봉사자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발표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와 아이들 포럼/제정 준비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성인과 아동들 사이 '국제적인' 캡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동과 성인들은 이런 활동이 아이들이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이런 '국제적' 단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아동권을 존중하여 아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대한 정부의 많은 책임이 너무 미약합니다. 아동보호 법이나 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아동권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부족합니다. 또한 아동친화적인 법적 소송법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동 대표단들이 제시한 특별한 의견들로는 아동 네트워크와 아동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 회의가 실행되어야 하고, 진실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아동친화적인 법적 시스템에 대한 공무원들을 배치하는데 힘써야 하고, 아동권과 성폭행에 관한 이슈에 대한 생각을 물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아동 발표자 중 한명은 "WC3의 참여는 전 세계적인 아동운동의 발전이다."라고 하며 이제 전 세계 아동들은 같이 힘쓰고 함께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으로 관계자들은 이를 반영하는 도움이 절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테마4

민간부분의 역할과 기업사회 책임 2008년 11월 27일, 오후2:30~6시

테마4에서는 민간부분 역할과 기업사회의 책임에 대해서 토론하였고, 시장/ 민간부분의 자기통제/ 글로벌경제시스템의 역할/ 인권을 위한 첫 발걸음/ 좋은 사업 관례/ 개인의 계획과 사회적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페널발표 요약

페널발표 참가자 : H.M. Queen Silvia, 스웨덴

Taleb Rifai, UNWTO 부회장

Gulnara Shahinian, UN 일시노예계약담당 특별대변인

Janice Dias, 페트로브라스

Ms Eugenia Maxim, 몰도바 청소년대변인, 15살

사회자 : Paulo Vannuchi, 브라질 정부의 특별사건부서 특별비서

Carmen de oliveira, 코난다

사회위원 : Giorgio Beradi, ECPAT 국제부서

이번페널발표는 많은 회사 브랜치들이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있다며 걸어온 길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CSR의 일시적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업들이 사회 대의명으로 약속한 것은 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란 기업들 내부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적극적이고 동정어린 활동이라며 스스로를 양심 있는 기업이라 여기는 사회이며, 이를 운영하는 사업가를 위한 사회로 발전된 것 것입니다. 자선활동이라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 이러한 이상한 도약은 경제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부분은 아동과의 성관계를 하기위한 통로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현상이지만 이러한 접근이 원-원 현상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Global Compact"와 브라질의 "Na mao certa"와 같은 기업들의 말을 이용해보면 곧 시작 될 CSR에 관한 ISO 26000 규정은 민간부분의 역할이 (일부 봉사부분을 통해) 사회활동의 범위를 늘리는 추가적인 틀이 될 것입니다. 방송의 역할 또한 강조가 되는데 그 이유는 방송이 사회 가치와 사회 활동을 형성시키고 사회 이유에 대한 기업들의 태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관광업에 대한 구체적인 참고를 보면 기업들이 사회에 하는 약속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기업이 매우 이른 시기에 아동범죄 관광으로 아동범죄를 일으키기 시작했으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UNWTO는 관광을 가서 성매매를 이용하고 온 사람들에 대한 심각하고 성공적인 조치를 만들기 위한 포럼(업무력)을 주체했다. 그와 더불어 윤리의식에 대한 세계적 규범도 만들었는데 이는 2001년 UN General Assembly에서 승인을 받은 규범이다. 동시에 이 세계적 규범은 실천 규범을 제도화 하는데 기여를 했고, 산업을 이끄는 CSR는 관광 중 아이들을 성매매에서 보호하기 위하자는 목표를 내세웠다. 더 최근에는 UNWTO는 '투어팩트'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회사들이 지킬 '글로벌 컴팩트'의 관광부분을 구체적으로 바꾼 조항이다.

어떻게 대부분의 아동 성매매 형태가 실시되었는지가 강조되었다. 이런 성매매는 가난이라는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동 노예나 성매매를 막기는 것이 강조되는 안되든 회사이 한 행동은 분명히 사회 전반적으로 잔인하고 이런 현상을 방조하고 있다. 인권은 점점 더 기업 활동에 맞춰지고 요즘에는 기업 전략중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가는 듯하다. 페트로브라스의 예를 보면 (페트로브라스는 CSR이 사회기업이라고 봄) 페트로브라스는 아마 쟁정을 다른 사건이다. 이 정책들은 사회 이해관계자의 대화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대화들은 다루기 쉬운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페트로브라스의 사회적 정책은 또한 성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자는 데 까지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트럭기사들에게 이러한 정보와 인식을 심어 주려고 한다.

최근 크로 작은 산업 참여자들중 CSR의 확대로 현재 필요한 것은 이 경향을 강화 시키고 적절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폭력 사태를 알아내고 처리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CSR 정책처럼 적합한 감시 시스템도 개발되고 시행되어야한다. 그리고 많은 봉사도 필요하며 아직도 정치적으로 정책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의 부족

은 또한 실제로 사회에 어느정도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게 한다.

워크샵 요약

워크샵2

IT 기업들의 협력약속

발표자 : John Carr, eNACSCO

David Lagerhof, 스웨덴 ECPAT

Dolores Alforte, 필리핀 ECPAT 감독관

Sergio E.Mindlin, 텔레포니카 창립자

사회자 : David Matas, 비온드 보터스

조사의원 : Anjan Bose, ECPAT 국제부

정부, 시민사회, 매체와의 협력은 IT산업의 협력약속을 얻는데 효과적인 열쇠이다. IT 회사들은 아동 인권 단체들과 일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한다. 아동 인권 단체들은 세계적으로 있고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아동 보호 이슈에 관련한 경험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IT 회사와 관련된 캠페인은 기술을 반대하거나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요즘 인터넷 사업은 부분적이고 분석적인 ISP가 필요하지 않다. 그저 전화 상담원만 필요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은 많은 다른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데, 거시적인 접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많은 IT 회사들은 NGO아동 인권 회사들에 연락을 취해 적극적으로 아동 성폭행의 문제를 온라인으로 막고자 합니다. 이런 협력의 예는 핫라인과 프로젝트를 스웨덴에서 막은 예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NGO, 법적효능, ISP의 효과적인 업무는 아동 폭행을 담은 불법적 웹사이트 막는 것을 야기했다.

핸드폰에 대한 실행 규범은 영국에서 디자인되었고, 또한 유럽에서 GSMA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여과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카페를 위한 실행규범은 또한 사이버카페 네트워크를 위해 필리핀에서 IT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는 사이버카페가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가상섹스를 하는 가장 많은 형태라고 여겼습니다. 성매매의 특별한 방법으로 고립된 부스안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과 웹 포탈사이트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들면 Pro Menino와 REDECA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이들에게 평등한 교육과 법률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가상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성숙한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시스템은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가하는 필요를 알아내어 좀 더 많은 사이트들이 생길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적절히 디자인되고 기능을 하는 웹사이트들이 어떻게 인터넷 기술이 긍정적으로 아동권을 지켜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아동보호에 관해서는 규모가 큰 서치엔지들과의 친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법적으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게하는 것이 개발되어야 하고 온라인 아동보호 정책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규직적으로 광범위적으로 시도를 하고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핫라인을 설치하여 보고하고 아동학대물과 메카니즘을 막는다면, 이러한 매체들에 대한 온라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IT 회사들과 같이 일을하면서 주된 연락담당자를 알아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며 이 담당자들은 몇몇 회사들이 아동보호 이슈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아내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로 부터의 지원은 IT 산업의 전 참여에 꼭 필요합니다.

워크샵 6

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한 협력

참가자 : Juan Zavattiero와 Christina Bueti, 국제 텔레커뮤니티 연합, "온라인 아동 보호 시작" Christopher Davis와 Beth Gardner, 바디샵, "바디샵과 ECPAT의 아동학대반대 캠페인"

사회자 : Mark Capaldi, ECPAT 국제부

조사 위원 : Myriam Galopin, 바디샵

국제 텔레커뮤니티 연합과 바디샵은 비록 아동포호에 개인적인 부분이 많다는 한계점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몇몇 협력 회사들이 상업적인 아동 성매매를 막기위한 긍정적인 스텝의 예와 같습니다.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이 아이들이고 아동 학대자들이 5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ITU(국제 텔레커뮤니티 연합)는 "온라인 아동 보호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작은 사이버공간에서 아이들이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위험을 최소화 하는 툴이 무엇이 있으며, 시민들과 그 방법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작에 덧붙여, ITU는 개인과 NGO와 의회/국가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빠른 기술발전으로 걱정은 어떻게 새로운 아동 학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발전하는' 세계에 맞춰 따라갈지입니다.

바디샵은 협력이 국가로부터 변화를 통합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지난번에 한 가정폭력과 HIV/AIDS 캠페인을 통한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디샵은 그들의 소비자들이 바디샵이 중요한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샵은 아동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이슈를 알고난후 다른 파트너들과 같이 ECPAT를 다른 글로벌 캠페인의 파트너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3가지에 중점을 두며 진행될것입니다. 첫째 아동착취를 막기위한 기금을 모으고, 둘째 시민들에게 알리고, 셋째 시민들이 국가가 변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하도록 돋는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약속에 대해 회사들의 관심이 적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아동 이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회사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들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면, 관련되기 싫어할 것이고 협력하기란 더 힘듭니다. 개인적 도움은 출장을 넘어서 크게 번지고 있고, 재정이나 ICT 부문은 다른 산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Christina Bueti의 의견에 따르면, "회사들은 아동보호이슈에 대해 법적으로 검사받지 않기 위해 최소한만 지키고 있으므로, 법적최소량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합니다.

개인 회사, NGO,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추천은 기금을 모으고 "보호하기"에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아동보호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추천은 온라인에서 아동보호 시작을 지지하고, 전세계적 아동 포르노그래피의 공급을 막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저널리스트가 이러한 이슈에 알리고 언론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도한 후 오는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워크샵 9

지속될 수 있는 관광업과 아동/청소년 보호

참가자 : Maria Luci Bicho와 Inez Dias, 브라질정부 상담가

사회자 : Fabiana Gorenstein

조사위원 : Ruth Feuk, 페루 UNICEF

1970년대부터 연방주로 거듭난 브라질은 국가적/사회적 많은 협력자들과 관광산업 관계자들과의 아주 잘 구조화된 협력을 통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그 당시, 관광부 장관은 NGO의 도움을 받아 아동 성매매를 막기위한 전략으로 관광산업관려자들을 교육시킴면서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시키기 위해 중개자역할을 시작했습니다. 그 현상은 처음에는 많은 산업간의 갈등으로 힘들었지만 눈에 띠게 시행되었고, 관광 사업가들은 궁극적으로 지역적 이미지의 악화에 대한 고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관광분야는 그래서 아동보호에 관심을 두고 리조트와 회사의 이름에 이러한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모든 커뮤니티들이 관광업의 변화를 알게된 후 논리적인 스텝을 따라 좀 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치를 취한 결과

- 특히 시민들의 캠페인 인지도가 증가하여 아동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을 알립니다.
- 관광전문가들의 교육(약 1,200명이 다른 대학에서 교육을 받음)
- 관광회사와 아동보호 시스템관련 단체와의 연계
- 적절한 교육자료 개발

당시 가장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특정 전문적 카테고리에 대한 협정이었습니다. 아동성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관광 회사들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 경험들과 같이 이런 추가적인 카테고리는 매우 효과적으로 아동성매매방지를 위한 많은 조치들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필요했던 것은 정확한 교육의 개발이었습니다. 교육은 실행규범과 CST에 반한 CSR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매개입니다. 교육은 특정부분을 보안할 수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다음과 같은 CST을 막는 것을 협력하자는 요구에 응하면 안됩니다. 산업 파트너는 특히 NGO는 관광분야 회사들을 도와 통합적인 보호 조치를 매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중한 역할은 피해받기 쉬운 아이들을 돋는데 필요합니다.

워크샵 10

지속될 수 있는 관광업과 아동/청소년 보호

참여자 : Debora D'Alleva, 스페인 ECPAT, "규범실행: 산업과 시민사회 파트너십이 아동 성매

매를 하는 관광산업과 호텔이용을 막을 수 있다"

David de Villiers, UN 국제 관광 기관, "아동보호와 책임감있는 관광업"

MAria Aurelia de Sa, 브라질 관광부 장관, "전문적 공간을 통한 사회 통합"

사회자 : Fernando Guilherme Tenorio, 브라질 Getulio Bargas 창립자

조사위원 : Helia Barbosa, 브라질 국민 보호

아동성매매를 위한 관광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학대받고 있습니다. 실행규범이 시작되고 확대되었지만 규범이 자기-평가제도로서 강한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때문에 시민정책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시민정책은 지역사회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적/지역적으로 모두 고려하여 국가/지역간 호텔과 관광업 연계를 잘 풀어야 합니다.

아동성매매 관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이해관계자는 관광업체와 그 지역사회입니다. 관광업의 증가는 RST(의존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는 특정 기본 이익 창출이 최근 몇 년 가능했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진행되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전체지궁로 채택된것은 아니지만 위생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범죄 보호에 대한 과정도 부족합니다.

스페인 ECPAT는 Solmelia 호텔과 리조트, 바르셀로나 호텔과 리조트, Viajes Mogador 호텔에서 그들이 실행규정 성공을 보고했습니다. 스페인은 또한 어떻게 2008년 스페인에 규정에 대해 새로운 통합이 없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스페인 관광부분에서 경제적 위기와 개인부분에서 사회책임 이슈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CSEC에 피해받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개발되어 공식적인 직업 시장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 캠페인,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 성매매에 대한 다른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공격과 사적 조치와 강화된 정부와의 파트너십은 반드시 이 파트너십 구축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 관광"은 반드시 "관광을 통한 성매매/성착취"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합니다.

지속가능하고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노력과 국가와 지역에 적용가능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CST가 미래에는 주 성공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매매 수요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태도는 만드시 인권과 성매매를 보호하기 위해 바꿔야하고 아동인권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야 합니다. 관광산업은 봉사개념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전해야 합니다.

여행중아이들의성폭행행동강령의명예파우스타볼사니에의해열린워크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첫걸음은 여행 중 아이들의 성폭행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행동강령이다.

관광 산업, NGD, 그리고 정부의 10년간의 협동 촉진과 함께, 이 행동강령은 관광 산업이 어린 아이 성폭행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로써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사업으로부터, 세계적인 호텔체인과 유니세프를 위한 일본 위원회가 오랜 기간 서포터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The Code에 참가한 기업 중에 하나인 Accor는 여섯 분야의 The Code를 구현하는 것과 The Code와 다른 어린이 보호 정책들을 적용하기 위해 관광 산업 내에서 해당 기업들에게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ccor는 관광객들이 지금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이 Accor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자 의무로 믿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를 위한 일본 위원회는 일본의 관광객들이 아이들을 학대한 사건이 밝혀진 후 처음으로 가입했다.

게다가, The Code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유니세프를 위한 일본 위원회는 JTB나 JATA와 같은 일본의 큰 여행사들을 The Code를 적용하도록 모집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NGO들이 관광산업에서 상업적인 어린아이 성폭행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증진시키는데 일하는 것을 위해, 행동강령은 발전시키기 좋은 모델이다. 하지만 실제 효과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 몇몇의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이 남는다. ECPAT 캄보디아와 남아프리카의 Fair trade in Travel은 관광 산업은 아이 성폭행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는 관광으로부터의 경제적 수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관광객들에게 무서움을 주어 그들을 떠나게 하거나 그 여행지의 평판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한 제안들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사적인 분야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아이들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는 정부가 사적인 분야에서 아이들 보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격려함으로써, 상업적인 어린 아이 성 매매를 허락하는 회사들에 대항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법적 제재를 늘릴 것을 요구 한다.

예로는 The Code of Conduct(행동강령)이 있다.

The code에 대해 모든 판돈보관 인으로부터의 도움과 함께 세계모든 지역으로부터의 일반적인 채택에 대한 제안도 있다.

특히 기업 심을 키우는데 소규모 사업체들을 돋기 위해서.

말라

이 회의는 아이들을 위한 옴부즈맨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는 과정에 대한 예도 제시되었다.

브라질의 예를 들면, 한 조사는 수년 전에 많은 수의 개인(많은 수가 높은 지위)이 어린아이 성폭행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대부분의 이 케이스들은 법무장관의 오피스에서 나온 것이지만, 아주 작은 수의 케이스만 실제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매우 약간의 부분만이 이러한 점을 고치기 위해서 변화를 행했다.

또한, 많은 어린아이들이 폭력의 영향으로 죽어나간다고 말했다.

폭행과 성 폭행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면책에 의해 심각하게 숨겨지고 있다.

유니세프 이노센터는 또한 아이들을 위한 옴부즈맨제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조사를 가져왔다. 특히 아이들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그 조사는 옴부즈맨과 국회와의 연결성이 중요성을 두고 있다.

국회는 옴부즈맨제도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여 그들이 개인적으로 행동하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규제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넘어 법과 정책들을 시행하고 잘 모니터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옴부즈맨제도의 필요성도 함께)

일단 이러한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법률제정자들은 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위반에 대해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법과 정책들이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 불평등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모든 분야들은 반드시 그들의 일의 범위 내에서 어린아이 보호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토론에서 나온 중요한 두 가지 예는 아이들의 조언을 포함한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법안을 포함한다.

이는 그 지역의 다른 도시들에 퍼져야만 한다.

다른 예는 브라질에서 아이들과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의원들의 모임 창설이다.

그리고 이 모임은 다른 정책적인 그룹에서 온 의원들과도 협력한다.

이는 아이들의 권리에 더 일치된 행동을 증진하는 성공적인 노력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옴부즈맨은 높게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제안들은 반드시 적용해야만 한다. 의원들의 일은 CRC와 같은 주요한 기구에 안내를 받아야 한다.

아이들의 국회와 같은 좋은 예들은 넓게 퍼져야 한다.

이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 의사 표현을 하고 그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주게 된다.

아이들을 위한 옴부즈맨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같은 레벨의 법적 제재와 투명성, 접근 가능성, 가시성이 있어야 한다. 유연성과 창의성을 위한 공간,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 하는 것에 대한 강조, 아이들의 포함과 동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스웨덴 H.M. Queen Silvia 의 연설

여러분

이러한 좋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에 대한 사적인 분야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진 기업들의 아이들과 청소년의 성 폭행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기업들이 이 컨셉을 확장하는데 열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에 우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내 신념을 강하게 하기 위해 나는 우리가 세계 어린이 기구(world Childhood Foundation)을 10년 전에 설립했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일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성

폭행과 폭행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소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이미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직 저의 신념을 통합하고 있었습니
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특징 지어질 수 있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해결책이 정
부, 시민 사회 모임, 기업들, 이 세 그룹의 동의 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해결책도
완벽하게 좋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기업의 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의 기업만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보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이 문제가 정부와 NGO의 문제인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들이 그나마 했던 것은 대중에 목적을 둔 사회적 프로젝트를 위한 작은 규모의 개인 기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효과는 감소했고, 문제의 원인을 맞추지 못했다.

1990년대 후반기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을 때 많은 것들이 좋게 바뀌었
다.

뒤 돌아보면, 나는 1996년에 있었던 나이키 에피소드가 이 움직임에 분수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유명한 스포츠 상품 회사가 말레이시아의 한 공급업체에서 어린이 노예와 관련한 국제적인
스캔들의 주체가 된 후로, 기업들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향한 그들의 책임에 대한 이해를
더 하게 되었다.

양심의 시험과 같이, 그들은 그것을 보는데 다른 관점으로 봤다.

더 이타적이고 더 공공의 참여에 적극적이고, 일체 된 관점을 갖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그들은 그들이 더 이상 사회적 현실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는 더 이상 무신경한 기업들과 함께하지 않는데 이는 마치 그들이 세계의 문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이 다른 타입의 대중을 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저 수입 계층의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어디에 있는 세계 어느 커뮤니티에서건, 가난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우리
의 자식들에게 주는 만큼의 같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해하는 것을 넘어, 기업은 또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그들의 기본적
인 권리를 보장하며 그들의 위엄 성을 증진 시키는데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생각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기업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모니터링하고 그들이 작동하는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사회적
평등과 환경적 존경과 함께한 경제적 재정적 결과를 통합하는 것에 대한 고려만을 한다.

그들은 의사결정과 사업 정책에 있어서 그들이 공공적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느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더 고려했다. 이미 그들은 다른 시대의 이기심 없이 행동했다. 그들이 서로 의존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수익에 대해서 이미 맞고 하지 못했다
면, 생산에서 공급자 파트너 고용주의 피해나 불만족을 일으킨다.

최근 역사상 비정부조 직, 정부, 그리고 커뮤니티가 기업들을 압박해서 원인전략으로부터 나온
결론을 바꾸어낸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그들이 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

다. 예를 들면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간의 권리, 소수 자들의 권리, 환경, 인종 등.

커뮤니티의 웰빙을 위한 투자는 같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더 전문적 이어졌다.

기업들은 그들이 단지 자선적인 충동처럼 복종했던 문제들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기구, 기관
등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선이라는 것이 사적인 사회 투자의 더 일 시적인 개념으로 연루되었
다.

이와 함께, 그들은 이전에 다음 단계로의 논리적인 충동을 갖지 않았다. 예를 들면, 계획을 세
우는 것, 모니터링 하는 것, 그리고 결과와 사회적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것.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문제는 단지 정부나 시민 사회의 힘으로 해결하기에 복잡하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움직임이 얼마나 강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뉴욕에서 2주전 있었던 예를 통
해 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미팅에서, NGO의 1200의 매니저들과 동료들은 General Electric의
Jeffrey Immelt이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투자를
증가 시키겠다고 말하는 연설을 듣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세계를 공황에 빠트린 재정적 위기에 앞서

운이 좋게도,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해 더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더 흥미를 갖고 참여
하였다. 수천의 기업들은 UN의 191개국의 맴 베들이 동의한 밀레니엄의 목적을 지지했다.

그리고 그들은 연구를 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노예들의 힘 배고픔과 비참함을 끝내고 기본
교육의 기준을 높이고, 양성 평등과 여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고 유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
고,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AIDS와 다른 질병들과 맞서 싸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환경에 대한 존중을 하고 발전을 위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수천의 기업들은 세계적인 동의를 적용했다. 기업의 환경보호와 인권, 근로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책과 실행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UN이 발안했다.

이 동의를 할 때, 기업들은 그들의 전략에 문화와 하루하루의 활동과 관계된 10개의 원리를
포함할 것을 약속했다.

10개의 원리를 중에는, 하나는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하여 다루는데 이는 어린아이
노동의 근절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는 인권보호와 존중 그리고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이러한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었다.

기업의 계획에 이 문제를 넣는 것은 시계에서 기업의 동의에 수가 증가 했다는 예를 통해서 설
명할 수 있다.

좋은 브라질의 예는 Na Mao Certa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부와, 기업, 사회적
단체들이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브라질 거리에서의 성 폭행에 대해 대처하기 위
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는 350개가 넘는 서명이 있다.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상호책임에 대한 혼란 업적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기업들이 그들의 포지션을 세계의 심각한 사회문제의 관찰자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존
재로 바꾼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책임을 진 기업들은 전에는 어렵게만 여겨졌던 아이들과 청소년의 성 폭행과 관련된 문
제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

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열정적이고 의도적인 관찰자로써, 나

는 이 개념의 진보에서 우리가 방어하고 있는 이유를 강화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본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책을 소유하거나 사회적 투자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브라질 거의
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 폭행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에이전
트 들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재정적 수단으로의 투자의 능력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노동자, 공급자, 파트너, 소비자,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는 능력에 대해서 말한
다.

나는 진심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브라질의 문제와 함께 결론을 내리면, 나는 여행에서 성폭행 근절에 대한 해결책은 관광객 트레
이드에 타협하는 회사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폭행에 대항한 최고의 해결책은 이동수단회사와 그들의 서비스를 계약
하는 회사들의 협력으로 인해 탄생할 수 있다.

운이 좋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한 환경이 주어진 적이 없었다.

그 흥미 도와 접착성이 높다.

브라질에서 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생산라인에서 아이들을 고용하지 않고 아이들 성폭력에 대항
하는 것에 목적을 둔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이들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의 공헌을 그들 스스로의
수단과 어린이 청소년 펀드로부터 수단과 함께 가정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많은 것들이 행해지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나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오늘날 말하는 어린이 노동을 없애는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풍부한 아이템들에 맞춰야 하는가. 더 구체적인 포인트는 아이들과 청소
년들의 성폭력과 관계가 깊다. 예를 들면, 유지 가능한 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세계적 모델의 역
할을 하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첫 번째 법률을 제정한 ISO26이
있다.

이는 옹호의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심이 없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우리의 원 이은 이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반영

오늘날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업들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폭행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
고 있다.

이동수단 회사는 거리의 현상에 대해 더 신경을 쓴다.

호텔들은 관광 문제에 대해 더 신경을 쓴다.

인터넷 회사들은 인터넷 상의 문제에 더 신경을 쓴다.

어떻게 우리들은 생산 체인에서 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더 많은 회사들을 연관시
킬 수 있을까?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나는 더 많은 회사들이 그들이 성폭행으로 피해보는 아이가 한명이라
도 있는 나라에서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들은 더 효과적 이어 질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에는 매체, 계급의 대표들, NGD들이 이 문제에 대한 높은 대중의 인식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이는 실용적인 방법을 보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 문제를 포함 시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반영

그 투자는 그 문제가 사적인 사회투자의 프로젝트를 넘어 기업의 핵심 사업의 범위 안에 다루
어질 때 더 클 것이고 더 중요할 것이고 더 강력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중요하다.

잘 운영되었을 때 아무도 그들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데 대해 논쟁을 할 수 없다.

그리나 그들은 기업들이 그들이 그들의 대중과 사업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는 전략적 이유로
투자를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 특징을 갖고 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원인이 사업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점이다.

동양 철학은 위기의 순간이 위험을 만들지만 기회를 만든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가 만들고 정보를 알리고 교육하고 보호하는 것을 발전시키는 일의 확장을 위한 많
은 기회를 보고 있다.

우리가 만들고 사용할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우리의 지식, 협력 기술 기회에 대한 센스가 필
요할 것이다.

Theme 5

국제적인 기업을 위한 전략

5번째 주제는 국제적 기업을 위한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의 성 폭행에 대항해 싸우는 다국간의 지역적인 구조에 관해서.

Workshop 8

안전한 이주

Cynthia Bundling

아이들의 이주는 아이들을 파는 것과 관계가 깊다.

동반자가 없는 아이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국경지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센
터에 부족함과 제한된 교육 기회, 부족한 의료시설, 사회로 부터의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주를 금지함으로써 아이들이 팔리는 것으로부터 방지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것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이주하고 그들이 그들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부터
회피하기 위해 이주하는 것이 이해되어야 져야 했다.

전략들은 이주 과정 동안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안전한 이주를 위한 현재의 정책들은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내지 못했고, 일반적으로 이주자들
을 돋고 아이들을 해로부터 보호하는 궁정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사회에 기반을 둔 보호 장치들을 포함한다.

사적인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이 영향 받을 수 있고, 그들은 안전한 이주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안전한 이주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연루시키는 것은 많은 인구들에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혀졌다.

정보와 대화 기술은 그들의 여행간에 그리고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락을 지속하여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잘 활용 될 수 있다.

이주 과정 동안의 아이들의 보호는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너머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일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정부들이 아이들이 적절하게 교육된 기관들의 국제적인 협동을 통해서 이주를 할 때 공유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민담당부서들의 협동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불법적인 이민에 관여되지 않고 그들이 좋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하는 데 필요하다.

반면에, 많은 고아들과 국경에서 버려진 동반자가 없는 아이들은 추방되기 전까지 6개월까지 기관에 갇혀 지내게 된다.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이 찾을 수도 없고, 만약 그들의 ID가 압수당하고 악덕상인의 쉬운 먹이감이 되면 그들은 교육도 받지 못한다.

어린 사람들은 그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세울 수 있는 프로젝트에 이러한 보호와 관련한 계획을 하고 디자인, 사용하는 것과 완벽하게 연관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활동들은 정부들간의 국제적 협동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민을 보장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노력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들이 동반자가 없거나 흘어진 아이들의 보호의 효과적인 과정을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아이들의 권리와 아이들에게 친숙한 과정, 그리고 안전한 이민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들은 이민 담당부서에 제공되고 다른 적절한 사람들이 그 국경과 이민 루트를 관찰하도록 지원한다.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은 특히 1:1 교육과 어린이 번호 모델 등을 통해서 보호와 회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정부들은 산업들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안전한 이민 정책의 발전을 위해 커뮤니티를 돋는 방법을 만들고, 이민에 대한 다른 제안을 하는 등, 반드시 적절한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매체와 다른 새로운 정보와 대화 기술의 형태는 목표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당을 수 있어야 한다.

Workshop 9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폭행과 싸우기 위한 기부자들의 역할

Caroline Turner

CSEC를 막고 싸우는 프로그램은 수년 전에 NGO와 다른 참여자들(정부, 커뮤니티, 조사기관, 사적인 기구)등의 협력이 보여졌다.

유사한 파트너십의 성공적인 예는 Oak 기구의 워크샵중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 성폭행과 매매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성폭행에 대한 전략적 제휴와 함께 금전적 지원을 하는 이니셔티브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몇몇 나라에 한정되어있다.

많은 기부 단체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재정적인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문제점은 프로그램의 평가의 부족이다.

성 매매를 막기 위해 막대한 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효과적이었거나 이익이 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단서가 없다.

이 문제는 다른 발전 프로젝트와 기부 단체들 간의 협력의 부족과 그들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부자들의 구체적인 제안의 부족으로 인해 악화되어졌다.

이 문제들을 위한 가능한 해결책은 이 워크샵에서 제안되었다.

함께 금전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는 것,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델을 통해, 자금지원자들의 생각 탱크를 만드는 것을 통해

프로그램과 기부자들간에 통합을 증진시키고 프로젝트 평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워크샵에서 강조된 다른 분야는 아이들 성폭행 보호에 대한 유럽 회의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긴급성이었다.

이 회의는 Art 38.4라는 규정을 포함한다.

이것은 국가들의 연합이 성폭행으로 부 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에 제 3 국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발전 도움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정부와 NGO들의 협력에 중점을 둔 제안들 또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결과정 속에서, 정부가 더 전략적이고 계획에 따른 NGO의 방해를 격려해야만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는 반드시 프로그램 관리의 틀 안에서 NGO에게 영원한 도움을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NGO는 그들의 발전 도움전략에 포함되고 구조적으로 의미를 확신시키는 정부와의 중요한 문제들을 내세우는 데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Workshop 14

정보 시스템과 주체 안에서의 협력

Thiago Tavares

국제적인 기업에게는 어린아이 성폭행과 싸우는 것이 필수적이고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필수적이다.

기준화된 데이터베이스는 기관들이 어린아이 성범죄 자를 추적하고 어린이 포르노 사진 등의 복제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인 구조를 구성한다.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은 그들이 중앙화되고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협의가 가능할 때만 효과적이다.

만약에 적절하고 협력적인 구조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 자리 잡는다면 효과적이다.

국가적인 레벨에서, 브라질은 성범죄 자들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 못하다. 각 지역의 기관들이 그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지역적인 레벨에서, 브라질은 에콰도르, 파나마, 폐루 같은 다른 가까운 나라들과 접촉할 포인트를 갖고 있지 못하고, 이는 아동외설물을 막는데 제한을 준다.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는 인터폴(ICAIID-어린아이 성범죄이미지 데이터베이스) 또는 뉴질랜드의 지역 집행 기관(DIA), AOL등의 같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다.

데이터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기관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모아진 정보들은 데이터를 모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준이 되고 구조적인 방법으로 정리되는 것이 필요

하다.

협력은 형식적으로 구성되어져야만 한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 성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동의, 브라질 정부와 인터폴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상업적인 어린아이 포르노 웹사이트를 막는 것에서, 재정적 기관과 기술적 지원자를 포함한 시민 사회, 법 집행 기관, 사적인 단체, 핫라인(정부간의 전화)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나라 사이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 상업적 어린아이 성폭행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을 채택했다.

OAS안의 특수화된 기구인 미국 어린아이 기구는 파트너들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이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분석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기구와 ECPAT와 함께 협력하여 지역적 관찰을 발전시켰다.

어린아이 포르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레벨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더 나은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법 집행 기관들은 또한 기술적 조사 트레이닝에서 그들의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거래에서 어린아이의 성폭행 사진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고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기술적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아이들의 포르노에 대에 대항하는 기관들을 설립할 수 있다.

긍정적인 결과들은 법 집행 기관이 어린아이 포르노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을 추적하고 멈추게 하는 것을 통해 이미 보여졌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과적이기 위해 시스템간에 연결되고 다른 기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통합적이고 존재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지불 가능한 비용으로 적절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되어야 한다.

사진을 통한 신원확인과 얼굴인식 기술 등, 기술적 해결책의 발전은 격려되어져야만 하고 온라인에서 어린아이 성폭행 사진들을 근절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Dialogue 17

법률 시스템 실행자(판사, 검사, 국선변호인, 변호사)

법률 시스템 실행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법적 이슈와 문제들은 관심을 요구한다.

CSEC와 함께 매우 구체적인 범죄의 참여자들에 대해서 강조되었다.

법의 집행이 어린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의 범죄를 어떻게 다루는지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목적으로 특수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법집행자들은 혼자 따로 일하지 않고 심리학자, 의사 사회 근로자, 변호사 등의 다른 특성을 갖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항한 범죄만을 특화 한 청소년 재판소와 법원을 설립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왜냐하면 이는 CSEC가 연관되었을 때 이 법적 과정의 효율성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CSEC 생존자들을 위한 시민들의 보상을 확실히 할 필요성 또한 강조되었다.

보상과 배상은 피해자들이 정의를 확신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

도움을 확실시 하고, 보호와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도 관심을 주어야 한다.

특수한 치료를 받지 못한 가해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론 다는 것을 과거의 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범죄의 재발 생을 막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감옥생활 동안 제공되는 특수한 치료는 다른 범죄자들과 분리되어서 행해져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

정의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면, 어떻게 재판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 판사들에게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매체에 따르면, CSEC케이스를 다루고 아이들이 보는 광고와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매체들은 아이들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규칙들을 적용해야만 한다.

이러한 규칙들의 매체의 유언으로만 남아서는 안되고 반드시 특수한 통제 구조를 통하여 법 집행자들에 대해서 확실시 되어야 한다.

Dialogue 18

경찰의 대화

브라질, 프랑스 등 많은 나라의 경찰들의 대화

이 대화는 모든 참여자들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의 일에서 어려운 점을 토론하도록 열린 토론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 토론의 한가지 초점은 어떻게 경찰관의 일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가에 대한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법의 첫 번째 집행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변호사와 경찰관의 일의 차이 때문에 그들의 일에는 계속성이 없다.

협력과 국제적인 협력의 명백한 부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 문제들을 푸는 해결책이다.

경찰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측정방법들이 있었다.

브라질에서 일하는 프랑스 경찰관들은 프랑스인 가해자를 잡기 위해 경찰들과 협력했다)

참여자들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그들 자신을 더 잘 구성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경찰의 교육적 역할 또한 강조되었다.

경찰의 지속적인 교육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했다.

그러므로 성 폭행의 어린 피해자를 다룰 때 더 잘 준비된 경찰들로 민감한 부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경찰에 대한 편견은 아이 성폭행에 대항한 다른 문제점이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청소년의 성폭행 토론에서 성 매매는 무시된 쟁점이었다.

브라질에서는 경찰, ILO, 페트로브라스(석유회사)가 고속도로에서 아이들 성폭행에 트럭운전사들과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구조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 대화에서 나온 한가지 주요한 제안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폭행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인권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은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들은 강화된 국제적 협력과 국가적, 국제적 범위에서의 경찰들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대화도 필요하다.

어린아이들과 법 주체간의 협력적인 관계는 이 범죄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 토론 요약 (Summary of Government Dialogues)

3차 세계 대회(World Congress III)는 일련의 정부 토론을 통해 정부가 참여할 고유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 토론에서 정부 대표는 각국의 아동 성착취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관해 발표하였다. 아래의 표에는 각 국 정부 대표들이 3차 세계대회 3일간 정부 토론에 참여하여 발표한 핵심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국가	주제 1 새로운 차원의 CSEC	주제 2 법 체계 및 시 행	주제 3	주제 4	주제 5
			부문 간 통합 정책	민간부분 및 CSR의 역할	국제협력 전략
오스트리아		적절한 국제적 제도를 실행	자료 수집 개 선 및 접근 가능 한 데이터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 및 조직과 협력 성 밀매 아동 피해자를 보호 하기 위한 협 력 설립		
방글라데시 포르노	아동 간 동성 및 이성에 관 한 설명; 아동 현재 CRC 규 칙에 따라 1974년 아동 법 개정 중	취해진 중요한 조치: CRC와 OPSC가 승인 되고, ILO 총 회 확정 현재 CRC 규 칙에 따라 1974년 아동 법 개정 중	아동정책 책 택: 2005- 2007 아동 NPA, 요코하 마 이후 채택 된 아동 학대 에 대한 NPA 아동 피해자보 호를 위한 부 처한 협력- 원 스톱 위기센터 설립 성 착취 아동 보호를 위한 여성 및 아동 부서와 다양한 NGO의 협력	아동정책 책 택: 2005- 2007 아동 NPA, 요코하 마 이후 채택 된 아동 학대 에 대한 NPA 아동 피해자보 호를 위한 부 처한 협력- 원 스톱 위기센터 설립 성 착취 아동 보호를 위한 여성 및 아동 부서와 다양한 NGO의 협력	

국가	주제 1 새로운 차원의 CSEC	주제 2 법 체계 및 시 행	주제 3 부문 간 통합 민간부분 및 정책	주제 4 민간부분 및 CSR의 역할	주제 5 국제협력 전략
베냉(Benin)	온라인 아동 성학대에 초점 한 법 제정 및 시행	아동 매매 금 지를 위하여 경매에서 아동 고용 제한에 관한 법 작동 여성 할례뿐 아니라 성희롱 (2006) 금지를 위한 법 작동	청년 노동자 협회 및 아동 보호를 위한 협회를 통한 아동 참여 확 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보호를 위한 미디어와의 협 력 정부 및 비정 부 조직으로 구성된 모니터 링 시스템 작 동	인간 무역과의 전쟁을 위한 남아공 및 나 이지리아 정부 와의 협약
보츠와나		불문법 및 관 습법 활용. 법 에 갈등이 있 을 때는 전례 를 따름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작동		다른 이해관계 자들과 파트너 십 강화를 위 한 작업: 아동 보호와 아동을 위한 특수한 서비스를 개선 하기 위한 MOU 체결 CSE로부터 아 동 보호를 위 한 아동, 가족, 커뮤니티 등과 파트너십 창출	
캐나다	국제수단의 비 준과 실행을 통한 국가법 강화 범죄자 처벌을 높이는 데 초 점을 두는 법 체계 강화 18세 이하 아 동의 증언에 대한 청소년 재판시스템 강 화	온라인 성 학 죄로부터 아동 보호 집행 권 한을 가지는 법 강화자를 훈련하기 위하 여 마이크로소 프트와 협력		국제적 수준에 서의 협력 강 화	

국가	주제 1 새로운 차원의 CSEC	주제 2 법 체계 및 시 행	주제 3 부문 간 통합 민간부분 및 정책	주제 4 민간부분 및 CSR의 역할	주제 5 국제협력 전략
콜롬비아		아동 성 관광, 온라인 아동 성학대, 신기 술을 통한 성 학대 (핸드폰)	상업적인 아동 성학대와 관련 된 국제기구 및 CRC 비준 CSEC에 대응 하는 더 강력 한 일부 법안 의 작성	아동 피해자를 다루는 특수 재판과 피해자 를 지원하는 특수부서 설치 피해자 보호 및 쉼터를 공 급하기 위한 운영 기준과 지침 실행	시민/커뮤니티 를 위한 서비스 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 로, 웹사이트 와 같이 대중 에게 주간 라 디오 프로그램 제공
콩고 공화국		노동을 위한 밀매를 통한 가정폭력, 아 동 매춘, 포르 노에 노출된 아동	성폭력 방지에 밀매를 통한 가정폭력, 아 동 매춘, 포르 노에 노출된 아동	성폭력 방지에 밀매를 통한 가정폭력, 아 동 매춘, 포르 노에 노출된 아동	
덴마크		신기술 향상, 온라인 아동 성학대			덴마크 경찰과 여타 유럽 국 가 경찰력 및 인터넷과의 협 력
에디오피아			국제기준에 부 응하는 국가법 조율	아동 성학대를 담당하는 아동 보호국 작동, 아동친화적 법 정 절차 개발 을 지원하는 특수부서 설립 아동 보호 개 선을 위한 가 족의 역량강화 에 초점을 맞 춤	

국가	주제 1 새로운 차원의 CSEC	주제 2 법 체계 및 시 행	주제 3 부문 간 통합 정책	주제 4 민간부분 및 CSR의 역할	주제 5 국제협력 전략
핀란드		아동을 중심으 로 하는 인권 협정(conventions) 의 적용 및 추 진 필요 및 효 과적 집행(아 동 보호를 위 한 적절한 주 체를 알리는 지침을 포함해 야 함)		민간부문은 아 동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한 책임이 있음 - 민간은 이 분 야에서 적절한 파트너와의 토 론을 이끌어야 함	착취의 위험을 확인할 때, 현 실적인 집행에 필요한 국제 협력 및 노력 CSEC를 없애 는데 전념하 고, 이 이슈를 설명하기 위한 국제 협력 지원
독일	아동 포르노, IT 개발 및 가 정교육, 인간 밀매	더 나은 아동 보호를 위한 법안이 채택되 어야 함 성 착취에 대 응하는 2003 NPA 승인 아동 매매, 아 동 매춘 및 아 동 밀매에 관 한 선택적인 (Optional) 프 로토콜 비준			
인디아		아동 매매, 아 동 매춘, 아동 밀매에 대한 선택적 프로토 콜 및 밀매 프 로토콜 승인		성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 기 위하여 정 부는 시민사 회, NGOs, 민 간 및 UN기구 와 협력/파트 너십 구축	
이란	노숙 아동 이 슈를 시급히 다를 필요가 있음			아동 노동 방 지를 위한 훈 련 및 적응지 도를 마련해야 함 인권, 특히 아 동 인권 증진 을 위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	

국가	주제 1 새로운 차원의 CSEC	주제 2 법 체계 및 시 행	주제 3 부문 간 통합 정책	주제 4 민간부분 및 CSR의 역할	주제 5 국제협력 전략
이탈리아			최우선으로 성 학대 및 착취 와의 전쟁	성 착취 아동 피해자를 지원 하고 방지하는 기제 마련	
일본	성 착취와 신기 술, 아동 포르 노 온라인	처벌을 강화하 고 처벌범위를 확장 하였음 : 아동매춘, 아 동 포르노 소 지물 범죄화함	국가적인 아동 학대방지의 달 (11월) 개시 온라인 아동 포르노 관련 수단 강화: 유 해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리포 트를 받은 2006년 인터 넷 핫라인 센 터 개설하여 관련 웹사이트 를 삭제	IT 산업 및 필 요한 기업 부 문과의 협력	아동 피해자 보호와 동남아 지역 CSEC에 대한 합의된 노력을 강화하 기 위해 동남 아 정부를 매 년 일본으로 초대
요르단			사회사업, 교 육, (국가 인 권센터인 요르 단 리버 재단 에 대한) 추가 작업을 수행하 는 새로운 조직/ 부서 건설 교육 및 부모, 종교지도자 등 의 참여 등에 초점을 둠		

국가	주제 1 새로운 차원의 CSEC	주제 2 법 체계 및 시 행	주제 3 부문 간 통합 정책	주제 4 민간부분 및 CSR의 역할	주제 5 국제협력 전략
캐나다		<p>도든 종류의 성착취, 매매 및 유괴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형태 특별 입법 실행: 국제 기준과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조직. 패널 법령 (Panel Code)은 성학대의 다른 형태 및 강화된 처벌에 관해 소개 (예를 들어 성학대자로 강간과 연루되어 있을 경우 종신형)</p> <p>형법을 14-16 세 아동 친화적 법률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며, 소년들도 성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범주에 포함</p>	<p>교육, 아동 노동 및 밀매에 대한 다양한 정책 수행</p> <p>법 집행을 위한 훈련 및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성범죄법을 재검토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TF팀 운영</p>	<p>정부 및 NGOs와의 군樵한 협력</p> <p>CSEC에 대해 필요한 폭넓은 연구</p>	
레바논			<p>캠페인을 통한 인식 증대.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기구와 협력하는 특별 공공부처 설립</p>	<p>CSEC에 대응하기 위한 UN 기구와의 협력</p>	
리투아니아		<p>직접한 아동 권리 협약이 비준됨</p>	<p>인간 밀매를 통제하고 막는 데 초점을 둠</p>		

국가	주제 1 새로운 차원의 CSEC	주제 2 법 체계 및 시 행	주제 3 부문 간 통합 정책	주제 4 민간부분 및 CSR의 역할	주제 5 국제협력 전략
말레이지아				<p>아동법의 핵심 원칙은 아동 노동 및 성착취 등으로부터 아동의 보호에 있음</p> <p>밀매 입법은 특히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밀매 프로토콜에 순응</p>	<p>가족 및 개발 부서의 핵심은 아동 성착취에 관한 이슈임</p> <p>이 부서는 새로운 법을 이해하고, 법적 절차상 '아동 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을 돋기 위하여 법과 대학원과 협력</p> <p>아동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핫라인을 설치하여 핫라인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공 의식 창출</p>
모나코		<p>아동을 보호하는 법 체택 및 국제 기구 인준</p>			<p>아동에 대한 사이버 범죄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 간 인식수준을 높이고 지지하기 위한 워크샵 운영</p>
모잠비크			<p>선택적 프로토콜 작성</p> <p>아동 및 여성 밀매에 관한 새로운 조직과 법률 승인</p>		
오만				<p>정부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을 받는 아동 보호 위원회 설립</p>	

국가	주제 1 새로운 차원의 CSEC	주제 2 법 체계 및 시 행	주제 3 부문 간 통합 정책	주제 4 민간부분 및 CSR의 역할	주제 5 국제협력 전략
필리핀	온라인 아동 성 학대, 아동 포르노	인간법(Persons Act)에 있는 반밀매 조항	아동보호 위원 회 정부 및 비정 부 조직으로 구성된 밀매에 반하는 위원회 를 설립하여 반밀매 법을 개발 아동 포르노 를 주로 다루 는 연구 수행	ECPAT 필리 핀은 ICT's에 관한 시행법령 (Code of Conduct)을 만든 인터넷 카페와 파트너 십 개발 이러한 이슈를 위해 NGOs 및 시민사회와 공정적 협력	
한국		매출 알선 처 벌, 아동 포르 노의 생산 및 배포 등을 포 함하여 수많은 신규 법이 소 개될 온라인 착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 개정	피해자의 의료 적 법적 지원 책의 증가		
세네갈		법을 국제기준 에 맞출 것임 연약한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행계획 집행	정부는 연약한 청년층 문제에 집중	사회적 동원 (social mobilisation) 과정에서 대학 교수의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의 창출	
싱가포르	온라인 아동 성 학대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캠페인: 이 주 제에 대한 대 중 교육, 프라 이버시와 책임 간 균형	밀매 활동으로 돈이 흐르는 것을 막음으로 써, 은행, 기 업, 상가 등의 참여를 독려	범죄자의 신분 증명과 기소 등에 대해 국 가 간 더욱 긴 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치외 사법권 주장

국가	주제 1 새로운 차원의 CSEC	주제 2 법 체계 및 시 행	주제 3 부문 간 통합 정책	주제 4 민간부분 및 CSR의 역할	주제 5 국제협력 전략
스페인			적절한 국제법 을 승인 국가 차원의 집행계획의 목 표는 CSEC 방지, CSEC를 막기 위한 법 적인 틀 강화, 희생자 보호 등의 폐널 법 령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음	여행 협회 캡 페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식에 관한 다른 단체 및 NGOs와의 협 력, 실행 법령 (Code of Conduct), 범 국가성(extra territoriality)	대중의 행동을 추동하는 인식 의 증진, 민간 부문 및 사회 와의 협력
수단			적절한 국제법 (CRC, 선택적 프로토콜 등) 에 따르기 위 한 노력을 함 아동 포르노, 아동 밀매에 관한 일부 법 이 작동 중 아동 보호에 관한 법적 체 계 강화에 관 한 작업 (5년 전략계획)	아동보호국 설 립하여 폭력 및 착취에 대 한 아동 피해 자에게 법적 원조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 전국적으로 병 원에서 특수한 서비스 제공 성 착취에 취 약한 아동을 만드는 요소에 대한 설명	CSEC에 대응 하고 또한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폭 력 형태에 대 응하기 위한 포럼에 적극적 으로 참여함
스웨덴			적절한 국제법 승인 국가들이 아동 의 권리에 대 한 태도를 바 꾸는 것의 중 요성을 표기한 CRC를 조인할 것을 촉구 2007년 NPA 개정을 통해 CSEC를 없애 기 이한 노력 을 강화하고 아동 밀매 및 매춘에 대항하 는 집행계획 마련	2001년 위험 에 처한 아동 에 관한 협력 그룹 창설 - 현재까지 11 개 주에서 재 정적, 기술적 으로 기여하고 있음	CSEC와의 전 쟁에 성인의 참여를 독려 CSEC와의 전 쟁에 성인의 참여를 독려

국가	주제 1 새로운 차원의 CSEC	주제 2 법 체계 및 시 행	주제 3 부문 간 통합 정책	주제 4 민간부분 및 CSR의 역할	주제 5 국제협력 전략
스위스		1996년 이후 국제법 기준에 맞춤 위험에 처한 아동, 난민, 에이즈 환자, 갈등지역 주민 등의 그룹을 위한 법제도 필요	2002년 사법 부와 경찰을 위한 밀매부서 설치 (아동 밀 매 그룹 포함) 정부, NGOs, UN 기구와의 협력 독려 적절한 국가 보고 절차를 가짐 - 인터넷 과 제휴하여 국제보고센터 의 전립 검토		
태국	인터넷과 신기 술, 아동을 대 상으로 한 폭 력, 국적없는 아동, 청소년 기 소년	2002-2008년 지역 간, 쌍방, 다방향 간 7개 의 MOU 체결 노동법 개정으 로 15세 이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 을 담음	교육, 미디어, 커뮤니티 지도 자, 학교 등과 협력하여 부보 의 태도를 바 꿈. 북부지방 의 위험 증가 에 대한 인식 위험에 처한 소녀의 부모들 에게 소득이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함 정보 제공	CSEC에 반대 하는 노력에 핵심적인 이해 관계자(NGO, 산업체, 커뮤 니티)들의 참 여	
트리니다드 토 바고		“아동 관련된 특정한 위험 행 위”를 범죄로 규정 법에 규정되지 않은 아동 포 르노. 가해자 가 가족이거나 신뢰받는 지위 에 있는 경우 가중처벌			
미국	신기술	범죄가 되는 소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될 것임-법률시행 강조 필요	교육/교사, 성 직자, 가정교 사의 인식 증 대, 이들도 범 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	CSEC는 국제 적 협력 필요, 의사소통이 더 쉽기 때문	
우르과이		밀매 프로토콜 체결	안전한 인터넷 이용 교육		

국가	주제 1 새로운 차원의 CSEC	주제 2 법 체계 및 시 행	주제 3 부문 간 통합 정책	주제 4 민간부분 및 CSR의 역할	주제 5 국제협력 전략
베네수엘라			1, 2차 세계대 회에서 나왔던 조항 및 모든 국제법 인준. 아동 성착취에 관한 국가 실 행계획이 있음	인간 밀매를 줄이기 위하여 공항, 버스 등 에 광고 캠페 인 설치	
베트남			아동 성학대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정부는 성착취 의 경우에 대 해 범죄자에게 강력한 형을 집행	아동 피해자에 게 의료, 사회 서비스, 법서 비스를 지원. 피해자를 위한 심리 및 신체 재활센터를 설 립하여 커뮤니 티에 다시 결 합할 수 있도록 도움 아동 성착취와 의 전쟁을 위 한 조건으로 빈 곤감소 및 기 아근절 프로그 램 강화	

리오데자네이로 선언과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중단하기 위한 행동요강

전문(Preamble)

아동 및 청소년⁷⁾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세계대회에 참석자, 각국 대표, 국제기구 및 비정부조직, 인권단체, 음부즈만, 민간부문, 법 집행 관련 조직, 종교지도자, 국회위원, 연구자 및 학자, 시민사회 및 아동, 청소년인 우리들이 (2008년 11월 25~28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 모여, 1996년 스토퍼홀름 선언 및 2001년 요코하마 세계 위원회에 이은 실천 강령 및 전개상황을 검토하고, 핵심적인 도전과 교훈을 확인하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⁸⁾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된 아동에게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요강(Call-for-Action)에서의 다음과 같은 목표 실행을 약속하고자 한다.

(1) 아동 성착취는 신체와 정신의 일체 및 인간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며,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한다.

(2) 우리는 높은 수준으로 아동 및 성착취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과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현한다. 특히 인터넷과 신기술을 통한 학대가 늘어나고 그 결과로 관광이 증가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3) 우리는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용인, 공모, 범죄 불처분(impunity) 등이 만연한 모든 지역 및 국가에서 생겨나는 아동의 성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뿐 아니라, 빈곤의 증가, 사회적·성적 불평등, 차별, 알콜 및 약물 남용, 아동과의 성관계에 대한 지속적 수요, 환경파괴, HIV/AIDS, 패면, 직업, 폭력적 갈등, 기타 아동보호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책임을 제약하는 위급 상황으로 인해 많은 아동이 성착취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한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4) 우리는 국가 정당이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UNCRC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조항, 1989) 및 그 조항 내 아동 매춘, 아동의 권리,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선택적 프로토콜(Optional Protocol), 또한 국가 정당은 이러한 항목을 금지하고 범죄로 다루며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상기한다.

(5) 우리는 96개 국가로부터 282명의 청소년이 3차 세계대회에 활동적이고 의미있게 참여하고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한 것에 주목한다. 이 문건에 부록으로 추가된 “성착취 종식을 위한 청소년 선언문”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우리는 청소년기의 소년 소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우관계를 통한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등 성착취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을 계속하도록 독려한다.

7) 이 문건에서 말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18세 이하를 뜻함

8) 이 문건에서 말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는 가정에서,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보호소 및 사법기관에서, 커뮤니티 및 작업장과 같은 모든 곳에서 18세 이하인 사람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모든 형태를 의미함

(6) 우리는 아동권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기타 적절한 국제, 지역, 국가적 차원의 인권 기구와 제도의 활동을 환영한다.

A. 진행상황 검토 및 현안과제

우리는 2001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2차 세계대회 이후,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를 해결하는데 다음과 같은 진척이 있었음을 환영한다.

(1) 2008년 11월 15일 129개국에서 비준된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로부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 내 선택적 프로토콜과 같은 핵심적인 국제적 제도를 작동했다. 또한 죄악의 형태인 아동 노동력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관한 사항 및 아동·여성 등 인간 밀매 금지, 제재 및 처벌 등을 담고 있는 ILO 협정 182의 승인이 증가했다. ILO 182는 이는 인간 밀매 반대, 성착취 및 성학대에 대응한 아동 보호, 사이버범죄 등에 관한 유럽 실천 협정 위원회(Council of Europe Conventions on Action)를 포함하는 새로운 지역 제도의 채택 및 초국가적 조직범죄에의 대응에 관한 유엔 협정을 보완하는 협정이다.

(2) 더 많은 나라에서 아동 성착취 피해자를 범죄 조사과정이나 가해자의 재판 과정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피해자 및 범죄 목격자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UN 법기준에 맞춘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제적 의무에 맞춰 성착취로부터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 수단을 채택했다.

(3) 국가 차원의 구상을 확장하여 아동에게 적당한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적 의제,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혹은 계획 등을 발굴하고 실행하였다.

(4) 성착취 및 아동 밀매와 대항하기 위한 다부문 이니셔티브를 구축하였다.

(5) 아동 및 청소년의 국제적 밀매 및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조사, 집행(prosecution), 처벌(punishment) 등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견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쌍방 혹은 다방향 협약을 체결하였다.

(6) 여행 도중 일어나는 아동 성착취를 제한하기 위한 윤령지침(Code of Conduct)을 받아들이는 등 여행업체의 지원이 증가했다.

(7) 일부 국가에서는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 캠페인과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증가하였다.

(8)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멈추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UN 및 UN관련 조직과 국가 및 국제 NGOs, 다른 시민사회조직 및 인권단체, 국제적인 정부조직이 늘어났다. 이러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수한 과제와 우려를 가진다.

(9) 성착취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정의, 나타나는 징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한 인식,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의 다른 형태의 복잡한 특성(여도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데 대한 과제) 및 추세 등에 대해 간극이 남아있다.

(10) 모든 유형의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일과 관련된 여러 이해당사자 간, 특히 정부기구 간 조화로운 활동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문 간 정책을 통합하고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1) 많은 국가의 경우, 법률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다양한 형태를 국제기준에 적용 가능할 만큼 적절히 정의하고 범죄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의 처벌뿐 아니라 효과적인 아동보호가 지연되고 있다.

(12) 지속적인 법 시행과 불처벌(impunity)의 종식은 적절한 지원, 실행을 위한 구성의 부족,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훈련의 부족으로 자주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13) 범죄가 일어난 국가에서 조사 및 처벌의 부족과 또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치외법의 부족 등으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가해자의 불처벌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쌍방 과별성(dual criminality)' 요구, 필수적인 인도규정 및 상호 법적 지원협약 등의 부족에 의해 자주 방해된다.

(14) 아동이나 청소년과의 성행위 수요를 경감하고 없애는 데 필요한 대응 수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의 성학대에 대응하는 처벌조항이 부적절한데 이에 대한 주목이 불충분하다.

(15)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와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행정적, 법적 절차를 포함하여-에 대한 무게에 주어진 관점을 선택할 권리는 국가 입법의 집행과 지속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특히 성착취 아동 피해자는 이후 정신적 쇼크(trauma)를 경험하는데,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가 부족하고, 법적으로 목적 절차라든가 아동에게 예민한 피해에 대한 경험이 부족 때문이다.

(16) 연령대 별로 아동의 성적 성장 보호는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힘을 키워줄 수 있으나 이것이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17) 불충분한 지원 부분에 대해 적당한 국제 협력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로서, 자유롭고 접근가능하고 안전하고 고급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18) 성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밀매에 관한 법과 프로그램에 아동 피해자의 특수한 상태와 특별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종종 눈에 잘 띠지 않는다. 특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 아동의 권리를 완전히 가지게 하기 위한 지원 및 아동의 관점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송환 절차 등과 같은 특별보호 내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19) 많은 국가에서는 성착취 아동 피해자에게 모든 적절한 지원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 달성

을 위해 용이한 수단을 취하지 않는다. 적절한 지원이란 예를 들어 완전한 사회 재적응 및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돋는 지원 등을 의미한다. 또한 가끔씩 (법률 강화, 이민, 사회복지사, 정신 및 신체 건강 전문가, 주택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파트너 간 효과적인 협력 부족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20)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와 가정폭력 간 연계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

(21)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의 특성과 유형, 위험상태에 있는 아동에 관한 신뢰할만하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며,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막고 피해자가 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법적, 사회적 수단의 효과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 등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22) 아동 보호 및 범죄방지, 법 집행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최신 지식 및 풍부한 현장경험을 기본으로 하지 않은 정보가 돌고 있다. 또한 경험이나 교훈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공유가 부족하다.

B. 선언(Declaration)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세계대회에 참석자, 각국 대표, 국제기구 및 비정부조직, 인권단체, 음부즈만, 민간부문, 법 집행 관련 조직, 종교지도자, 국회위원, 연구자 및 학자, 시민사회 및 아동, 청소년인 우리들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우선적으로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1) 우리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따를 것이다.

(2) 우리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금지 및 종식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정책 틀 속에서의 종합적 전략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특히 모든 학생들이 에이즈의 확산을 막고 바꾸며, 초등학교 과정 전체를 마치도록 하며, 최빈곤층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재다짐 한다.

(3) 우리의 중요한 역할은 부모, 대가족, 다른 커뮤니티 돌봄이가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4) 우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관한 연구에 나온 UN 사무총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재정적, 인적 지원을 약속하고, 폭력 갈등 및 아동을 위한 사무총회 특별 대표 및 아동 폭력에 관한 UN 사무총회 특별 대표의 업무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적절한 특별 절차도 원활하게 한다. 특히 아동 매매,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 및 여성 및 아동을 포함하는 인간 밀매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의 업무를 돋는다.

(5) 우리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력과 싸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우리는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력에 대항하는 2006년 ILO의 세계 행동계획의 승인을 환영한다. 이 행동계획에 따라 182개 회원국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 노동을 2016년까지 제거하기 위해 전념해왔다.

(6) 우리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대응수단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단을 촉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인권 단체 및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하고 이들을 지원할 것이다.

(7) 우리는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의미 있는 아동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응방식 및 구조를 지원할 것이다. 지원은 성착취의 위험에 있거나 성착취 피해자인 아이들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것이며, 아동이나 청소년 자문위원회, 커뮤니티 중심의 프로그램과 피어투피어 결단 등을 통해 적절한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리오 총회에서 만들어진 “성착취 종식을 위한 청소년 선언문”의 권고사항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지원할 것이다.

(8) 우리는 성별에 민감한(gender-sensitive) 정보, 의사소통, 교육, 훈련 및 커뮤니티 동원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의 심각성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거부하는 것,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를 묵과하고, 성적인 대상이나 상품으로 아동을 다루는 가치와 믿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9) 우리는 모든 종류의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의하고, 자금을 제공하고 결과를 공유할 것이다. 특히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의 특성과 범위; 아동의 성착취가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미친 영향; 변하는 성향-주체-사용된 기제와 지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 학교, 보호소, 사법기구 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성착취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법적, 사회적 대응수단의 효과와 집행;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지속하려는 수요;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지속하고 촉진하는 사람들; 소년 성착취; 성착취와 관련된 아동의 취약성(vulnerability) 및 회복(resilience); 아동 간 실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효과와 특성 및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막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잠재력; 글로벌 소비문화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미친 영향; 중재가 적당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본 범죄 패턴 등

(10) 우리는 행해지는 모든 실천이 아동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분야에서 개발하고 실행하는 모든 아동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특별한 지표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기여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집행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가진 정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좋은 나쁘건 간에 모든 교훈을 공유한다.

C. 행동 요강

우리는 모든 종류의 성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설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NGOs, 민간부문, 청소년을 포함하는 시민社会의 도움을 받아 모든 국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I - 국제적, 지역적 차원의 제도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UN 조항 및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선택적 프로토콜,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를 근절하기 위한 금지 및 즉각적 행동에 관한 ILO 조항 182,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응하는 UN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여성 및 아동을 포함하는 인간 밀매를 방지하고 재재하고 처벌하는 프로토콜, 여성을 차별하는 모든 형태를 근절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국제적 제도의 승인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2) 아동 복지와 권리를 다루는 아프리카 협정, ASEAN 협정, 미성년자의 국제적 이동에 관한 미국(Inter-American) 조항, 여성 폭력 근절 및 처벌, 매춘을 위한 여성 및 아동 밀매를 금지하는 SAARC 조항, 인간 밀매에 대항하는 유럽의 실천 조항 위원회, 사이버범죄, 성착취 및 성학 대로부터 아동 보호, 유럽 위원회(Council of Europe)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승인한 조항 등을 포함하는 적절한 지역적 차원의 제도 승인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

(3) 국가정당은 국가 정당 보고서의 재검토 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결론과 권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동 매춘,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다루는 선택적 프로토콜(Optional Protocols)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II - 성착취 형태와 성착취에 대한 새로운 시나리오

아동 포르노/아동 학대 이미지

(4)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표현을 담은 가상 이미지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 포르노의 의도적 생산, 배포, 소유하는 것뿐 아니라, 의도적 소비, 접근, 아동과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그러한 자료를 보는 것도 범죄로 규정한다. 또한 자료의 생산과 배포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 경우, 법적 책임을 기업 같은 곳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5) 아동 포르노를 금지하고, 아동을 꾸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학대하거나, 아동 포르노나 기타 자료의 생산 및 배포하기 위한 인터넷 및 신기술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특별한 행동에 착수한다. 피해자 확인, 전문화된 직원에 의한 지원과 돌봄에 높은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6) 어떻게 아동을 보호하며, 어떻게 아동 포르노와 어떻게 온라인 성착취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도울 것인가를 포함하여 인터넷, 핸드폰 및 기타 신기술을 사용한 성적 착취의 위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 부모, 교사, 청소년 조직과 아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적이고 의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

(7)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 아동 성학대 이미지 등을 보고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핸드폰 회사, 검색엔진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법적 수단을 취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모니터하고 노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8)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핸드폰 회사, PC방 및 기타 관련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운영요강 (Code of Conduct)을 개발하고 수행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그들 사업에서 아동보호수 단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의 개발과 기타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제(mechanisms)를 개발하고 수행할 것도 요청한다.

(9) 아동 포르노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통해 얻어지는 자금 흐름을 막고 추적하기 위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 시스템 마련을 요청한다.

(10) 인터폴의 지원 하에 성학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접근 방지를 위한 보편적인 기준의 근거로 한다. 그 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 되며, 국제적 수준과 일치되도록 하고, 공급자에게 접근 방지 사이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11) 민간부문에서는, 전자 기기로 찍은 이미지를 확인하고, 범법자를 추적하여 이를 철회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신기술 연구와 개발을 수행한다.

(12) 성착취에서 즉각 빠져나오게 하고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고 추적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신기술 연구와 개발을 고양하기 위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촉진한다.

(13) 부적절하고 유해한 아동 이미지를 막는 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을 포함하여,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가 기술을 쉽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매춘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14) 설령 성인이 아동의 나이를 가늠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성 구매 혹은 아동으로부터 성적인 서비스를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거래는 형법 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매춘으로 이끄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15) 성 매춘으로 착취당했던 아동을 위한 특수하고 적절한 의료 보호를 제공한다. 또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하여, 현실적인 경제적 대안과 협력, 사회보장 시스템, 회복을 위한 지역 모델을 만들어, 이를 통해 아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관광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16) 관광 중에 이루어지는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운영요강을 채택함으로써, 관광 및 호텔 부문을 지원하고 독려한다. 또한 적절한 아동보호를 위해 사회적 책임 전략

을 수행하는 사업의 활용을 독려한다. 또한 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17) 국내외 관광객들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하지 않도록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18) 인터폴의 ‘녹색 통보(green notice)’ 시스템과 같은, 적용 가능한 법 및 인권 기준에 따른 국제여행 통보 시스템 설치에 협력한다.

(19)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외국에서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항하고 적절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사한다.

(20) 아동 성 착취 관광에 대해 광고하는 전단지 생산 및 배포를 금지한다. 또한 여행자들에게 아동 성착취의 경우 적용될 있는 범죄 항목에 대해 경고한다.

(21) 신흥 관광지를 모니터링하고, 관광 서비스 개발을 주로 하는 민간 부문 파트너와 공동으로 예방수단을 마련한다. 이 수단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는 것으로, 공정한 개발을 촉진하는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활용하는 전략을 포함한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와 밀매

(22) 연악한 아동을 대상으로 밀매를 하게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및 사회 규범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과정에 아동 및 청소년이 참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커뮤니티를 참여시킨다. 또한 관련 전략 및 프로그램의 발굴, 계획, 실행, 모니터링 하는 데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다.

(23) 밀매 피해자인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단위의 재활 및 재통합 프로그램 중 성공적으로 수행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적용한다.

(24)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밀매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여기에는 안전한 송환을 위해 기준이 될 만한 운영절차가 포함되어,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아이들의 이해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위험에 대한 신중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25) 매매된 아동을 범죄자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다루고, 아동 밀매에 대해 아동 중심적인 조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발행하는 협력부서를 설치하는 등, 법집행관의 국내외적 협력 강화를 지속한다.

(26) 보호자 없이 매매된 아동을 위해 자체 없이 보호자(guardian)를 임명할 수 있는 법적 수단 및 기타 수단을 취한다. 기타 수단이란 효과적인 등록시스템과 모든 성 밀매 아동에 대한 문서화, 모든 밀매된 아동이 단기보호뿐 아니라 장기간의 회복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제적, 사회심리적 지원, UNICEF와의 연계된 사회 재통합 등을 의미한다.

밀매 관련 아동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아동의 이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UNHCR 지침

(27) 시민사회와 아동의 참여를 통해, 정기적으로 아동 밀매를 막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 또한 밀매를 줄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법이란 결혼법, 의무교육, 입양이나 이민, 산아제한, 시민권 취득, 난민 등과 같은 것을 뜻한다.

III - 법 제도 및 법의 시행

(28)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맞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모든 성착취 관련 행동을 정의하고 금지하고 범죄로 인정한다. 결혼이나 문화적 관습에서 정한 연령대에 상관이 없으며, 설령 성인이 아동의 나이를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하다.

(29)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가해자에게 필요한 쌍방범죄 요구조건을 폐지함으로써, 효과적인 치외법을 설립한다. 또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상호 법적 지원이 용이하게 한다.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새로운 인도조항이나 기존 조항을 통해 관할국으로 인도될 있도록 한다.

(30)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와 관련된 치외법을 예방차원에서 강화하기 위하여, 각 국의 상황에 맞추어 주도적인 법 집행기구를 지정한다.

(31) 성착취 아동 피해자가 그들의 착취로 인한 어떤 행위로 처벌받거나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법적으로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한다.

(32)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교사 및 기타 적합한 사람들의 참여 하에 성관련 특수부서나 경찰서 내 아동 전담코너를 설립한다. 여기서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 범죄를 설명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특수훈련을 수행한다.

(33) 아동보호 및 효과적인 법집행에 있어서 부정부폐가 결정적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 집행 및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의 부정부폐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34) 성범죄자의 행태를 설명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법 제도와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수행한다. 여기에는 위험 평가와 범죄자 관리 프로그램, 종합적이고 확대된 재활 서비스의 자발적 공급, 범죄혐의자의 안전한 재통합, 모범사례에 대한 수집 및 공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적절한 성범죄자 등록 제도를 구축한다.

IV - 부문별로 통합된 정책과 국가 실행계획

일반(General)

(35)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 실행계획을 개발하고 집행하거나, 혹은 이것이 국가 개발계획과 같은 기준의 적절한 계획 들에 포함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계획은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실행 체계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부문 간 접근방식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대상이 되는 자원과 임명된 책임자(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중단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성착취 피해자 아동을 지원하는 시민사회조직 포함)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계획은 성 인지적(gender-sensitive) 전략, 사회적 보호 수단, 집행 계획 등과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

(36)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의 원인이 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국가 아동 보호 시스템를 내 여러 부문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추진한다. 성착취의 원인이 되는 현상이란 성차별, 유해한 관습, 아동의 결혼 및 성착취를 야기하는 사회규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7) 성착취를 막고 의식수준을 높이며, 아동 및 청소년 밀매를 막기 위하여, 캠페인과 또래 집단 프로그램, 정책 및 프로그램의 계획, 모니터링, 평가 등 모든 단계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의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 지원한다.

(38) 초국가적 차원의 협력과 믿을만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를 착수하고 지원한다. 또한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아동과의 성관계 수요에 대해 설명하며, 아동 지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예방

(39) 그 국가 내에서 모든 아동은 태어나면 즉시 무료로 등록하도록 하며, 또한 극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위험에 처한 아동 및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40) 성학대 및 모든 형태의 아동 착취를 찾아내고, 고발하고, 다른 일을 지원하는 교육기관 및 직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41) 성착취 피해자가 된 아동에게 종합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부문을 위탁하는 기구와 제도를 강화하고 설립하고 동시에, 인식 향상, 교육적인 캠페인, 부모 지원, 빙곤 균열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강조한다.

(42) 성착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자신의 권리 및 가능한 선택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동을 돋пуска.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들은 파트너십 향상과 함께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한 역량이 강화된다.

(43) 성착취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가능성과 현대사회의 규범 및 가치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고 결정적인 활동에 아동을 참여시킨다. 또한 성착취에 관련된 이슈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44) 소년과 남성이 소녀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억제하고 그만두게 하는 행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요소들을 알아내기 위하여, 다른 여러 상황에 걸쳐 현대사회 소년과 남성의 사회화 패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D. 아동 보호

(45) 모든 종류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수적인 예산의 배분뿐 아니라 아동이 위험에 처할 상황 인식에 기반하여, 포괄적, 통합적인 국가 아동 보호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46) 2013년까지, 효과적이고 접근 가능한 보고, 추후계획 및 실제 성착취 사건의 피해자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아동 피해자를 돋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 담당자의 의무적인 보고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47) 특히 보호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있는 아동을 위하여, 아동을 격려하고 보호관리자(care givers)에게 비공개적으로 성착취에 대해 보고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위한 위탁을 구하기 위하여 기존 전화기나 웹기반 응급전화를 개발하거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이러한 보고 시스템 관리자는 적절한 훈련을 받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48) 모든 성착취 아동 피해자들에게 남녀 차별 없이 필요한 경제적, 사회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회복하고 사회에 통합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과 결합하고 추후 착취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가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중재까지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아동 보호 국가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잘 훈련된 여러 부문의 전문가 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49) 이러한 서비스는 접근 가능하고, 적절한 재원지원을 받으며, 종합적이고, 아동 및 성 인지적이며, 또한 이러한 서비스는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 법적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혹은 성적 성향), 출신과 상관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 민족, 원주민이나 토착민, 난민, 정치적 망명, 국가서비스를 받는 아동이나 노숙자 어린이, 위급한 상황에 방치된 아동을 포함하는 모든 아동들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시 한다.

(50) 성노동자인 아동과 사창가에 살고 있는 아동에게 제공되는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1) 적절한 국가 법과 절차를 통해, 아동 성착취 가해자와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촉진한다. 이를 통해 조사 및 법원 절차 과정에서, 또 미디어로부터 이 아동들의 신분을 보호한다. 또한 이 절차가 아동 친화적이어야 하고, 가해자가 법정에 나오게 되는 과정에 아동이 의미 있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한다.

(52)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성폭력 행위를 보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첫 번째 선택으로서 성 인지적이고 아동 중심적인 수단과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확

실히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과 그들 최고의 관심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에 순응할 것을 확실히 하며, 그러한 아동의 보호를 책임지는 자는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적당한 훈련과 기술을 가진 자라는 것을 확실히 한다.

V. 국제적 협력

(53)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행동의 예방, 발견 시 조사, 집행, 처벌을 위한 다각적, 지역적, 쌍방의 합의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아동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회복, 학교로 돌아가기, 또 본국 귀환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54)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행동하게끔 지원한다는 시각으로, 정부부처, 후원조직, UN 기구, NGOs, 민간부문, 노사조직, 미디어, 아동 조직, 기타 시민사회 대표 간 협력 증진을 위해, 2013년까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구체적인 기제와 과정을 설립하거나 개선한다.

(55) 아동보호 과정의 교환, 협력, 모니터링을 위하여, 권고 사항의 실행에 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진행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성착취 대응방식을 포함하여 기존 지역 메카니즘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증진한다.

(56)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때,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다루는 기존 다각적, 지역적, 쌍방의 기타 프로그램들을 통해 재정적, 기술적, 기타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한 이 지역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잠재적인 기금을 찾는다.

(57) UN 기구, NGOs, 시민사회조직과 민간단체, 노사조직의 지원이 적당히 있는 곳에서는, 기업, 특히 관광, 여행, 운송 및 재정서비스, 광고 및 연예오락 부문을 운영하는 기업의 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중심으로 한 정책, 기준, 행동강령이 이 공급 과정 전체에서 실현되며,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에도 아동의 권리가 포함되도록 한다.

(58) 인터폴 국제 아동학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원하고 기여하며, 아동 및 성착취 관련 국내 데이터를 수집하고 즉각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국내의 핵심 책임자나 부서를 지정한다. 또한 국제 법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인터폴과 정보를 공유하며, 특히 경찰조사 업무를 위한 다각적인 협약을 채택한다.

(59) 상업적인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조직적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공동 수단을 실행하며, 또한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의 책임자나 범인체를 재판에 회부한다.

VI.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

우리는 민간부문, 노사조직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막기 위한 모든 노력에 참여하

고 그들의 노하우와 인적, 재정적 자원, 네트워크, 조직과 추동력 등을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독려한다.

(60) 아동 보호를 아동 성착취 금지를 포함하는 새로운 혹은 기존 기업과 공동의 사회적 책임 정책과 통합하고 그러한 정책의 적절한 실행과 대중의 인식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용한다. 여기서 기업이란 특히 관광, 여행, 운송, 농업 및 재정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광고 및 연예오락 부문을 의미한다.

(61) 모든 공급 과정(supply chain)에서 행동강령 및 다른 공동의 사회적 책임 메카니즘과 같은 인적 자원 정책(human resources policies)에서 아동 성착취가 일어나는 것을 금지하고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는 데 이용한다.

(62) 가상 이미지 및 아동이 성적으로 착취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하는 아동 포르노의 생산 및 배포를 막기 위하여 정부, UN기구, 국내외 NGOs,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한다. 또한 아동을 온라인, 오프라인 상 학대하는 이미지를 담은 인터넷 및 신기술 이용을 그만 둔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동 성착취에 쓰이는 자금거래의 흐름을 추적하고 막는 행동을 취한다. 또한 아동 매춘에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수요를 조사하고 아동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예를 들어 이용 가능한 전화 및 웹기반 긴급전화 설치 등과 같은 것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아동, 부모, 교사, 청소년 조직 및 기타 아동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방적 대응수단뿐 아니라 아동의 성착취 위험, 인터넷, 핸드폰, 기타 신기술을 이용한 성착취 등에 관해 교육적이고 그들의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마련한다.

VII - 모니터링

(63) 아동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총평(General Comment) 2 항에 나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에서 국가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13년까지 아동 옴부즈만 제도 혹은 그와 유사한 조직이나, 기존 인권 조직이나 일반 옴부즈만 사무소 중에서 아동 권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조직과 같은 독립적인 아동 권리조직을 설립한다. 이 조직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의 회복을 위해 취해진 행동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법 제도의 실행을 옹호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불만사항을 시정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것을 독려한다.

(64)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지키는 국가정당의 의무사항에 대한 실행 과정을 꾸준히 재검토 한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과 그에 대한 선택적 프로토콜 내에, 보고서의 설명에 대해 리오 행동강령에서의 권고사항에 각별히 주목한다.

(65) 성착취, 성적인 목적에 따른 밀매, 유괴와 아동 매매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 원칙을 우선적으로 채택한다. 이 원칙은 관련된 국가 법과 정책의 개발 및 실행에 대한 국

가의 세부적 지침을 포함한다.

(66)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국제적, 지역적 인권 체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일에, 인권 최고 위원장 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함께 지속적으로 일한다.

우리는 지역의 인권 기구와 제도뿐 아니라, 여타 UN 인권 협약 기구, 특수한 절차 상 인권 위원회, UN 사무총장 대리 등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을 독려한다.

(67) 그들의 임무 내에서, 국가 방문 및 국가 정당 보고서의 심사하는 동안, 또한 그들의 주체별 업무 및 기타 활동을 할 때,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대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을 촉구한다.

(68) 보편적이고 정기적인 검토 과정에 아동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이행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포함한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국가의 임무에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근절 및 방지에 대한 의무와 그러한 착취에 따른 아동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다.

우리는 임명 예정인 아동 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수 대리, 아동 및 무력 갈등 관련 사무총장 특수대표, 아동 매매 및 매춘, 아동 포르노에 관한 특수 조사위원, 여성 및 아동과 같은 인간 밀매 특수 조사위원, 아동 권리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타 적절한 권한을 가진 자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것을 촉구한다.

(69)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근절 및 방지에 있어서 중복을 방지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업무를 통해, 예방 분야에서 경험을 보여주고, 아동 성착취에 대응하며, 그 효과를 계산한다.

우리는 유엔기구, NGOs, 인권단체에 다음과 같은 것을 할 것을 독려한다.

(70)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범위와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단체에 공급하고 지원한다.

(71)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교육 및 역량강화 분야에 미디어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들과 협력한다. 또한 광고에 아동을 성대상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미디어의 잠재적 유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협력한다.

우리는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기금(IMF)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에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한다.

(72) 사회서비스 및 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응자 조건 등을 포함하여, 아동 및 그들 가족에게 기칠 사회의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대응해야 하며, 아동이 성착취 위험에 빠질 확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현재 거시경제 및 빈곤감소 전략을 재검토한다.

종교 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한다.

(73)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 본래의 존엄성에 관한 합의를 고려하여,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등 아동에게 취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고, 종교 간에 협력하며, 정부, 아동 조직, UN 기구, NGOs, 미디어 및 도덕적 운용을 하는 민간부문 등 기타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커뮤니티를 지도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 및 리더십을 갖춘다.

E. 추후활동(follow-up)

(1) 우리는 이 행동강령에서 다음과 같은 가장 효과적인 추후활동을 약속한다.

- 국가적 차원에서는, 특히 2년마다 리오 선언문과 행동강령의 실행을 위해 취해진 수단에 대해 공공에 보고하고, 진행상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며, 이러한 필수사항을 아동 인권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국가에 보고해야 함과 동시에 수행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정된 관련 기구 및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촉진한다.
- 국제적 차원에서는, 리오 선언문 및 행동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그 실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권조약기구, 인권위원회 및 UN 사무총장 대리의 협력적 행동을 지원하고 격려한다.

(2) 민간부문이 UN 세계 협약에 가입할 것을 격려한다. 또한 이들과 대화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다루고, 모범사례의 공유하고, 조화로운 협력 활동을 위한 발판으로 인식하는 것을 지원한다.

성착취 종식을 위한 청소년 선언

2008년 11월 28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세계의 아동인 우리는 이 3차 세계대회에서 현재 및 미래 세계의 주역인 아동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브라질 정부와 기타 정부, 기타 관련 기관에 감사한다.

아동은 성인들의 착취로 인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조직하고 단합함으로써, 우리는 피해자에서 주체가 되었다. 아동 조직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방어할 힘을 준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주제로 싸우는 과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점차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어른들과 우리의 부모를 존경하며, 다른 나라의 생활규칙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모든 어른들도 존중하길 원한다. 모든 사람은 존중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

그러나 어른들이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어른들은 '반드시' 경청해야 한다. 우리의 시급한 행동강령 및 우리의 경험을 들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solutions)에 대해 들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했던 일은 오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정적인 회의가 잠잠해지고 회의장이 텅 비게 되는 오늘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동의 권리, 특히 성착취 문제에 대한 토론이 다시 조용해지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되며, 전례 없었던 세계 전체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부, NGOs, 미디어, 민간부문, 지방정부와 더 많은 아동이 아동 성착취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에 동참하고, 큰 위험에 처한 아동과 피해자를 돋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의 아동인 우리는 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과 어른들에게 이 회의의 회의록(proceedings)에 제시된 내용을 우리의 커뮤니티, 국가, 지역과 공유할 것을 당부한다. 아동 성착취에 관한 불쾌하게 만연해 있는 문제에 대해 단번에 모두 없애고자 한다면, 정부, NGOs 및 기타 사회의 파트너 기관인 당신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

1. 아동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국에서의 아동의 권리를 다루는 옴부즈만 사무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보다 아동 친화적인 서비스와, 아동 및 성착취의 효과적인 방지, 성착취 사례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부문을 개혁한다.
2. 이 병적인 문제에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UNICEF, 기타 국제 조직이나 지역조직으로부터 기금을 받은 세계의 지역 커뮤니티 내에 아동 보호 의제 및 센터를 설립한다.
3. 나아가, 성착취를 방지하는 데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을 위해 아동에 의해 주도되는 아동 포럼과 조직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
4. 우리는 또한 아동의 권리를 다루는 주요 정부조직과 국제기구에 아동 대사를 둘 것을 요청한다.
5. 이 대회에 이어, 6개월 내에 우리의 다양한 문화적 현실에 이 대회의 결과를 적용, 내부화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가회의 및 지역회의를 요청한다. 다시한번, 우리는 세계 각국의 정부에게 아동을 참여시키고, 아동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6. 추가적으로, 아동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매 6개월에서 1년마다 우리는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문제 및 아동의 권리를 논의하는 이러한 회의를 계속하기를 희망한다. 세계 전역으로 배포될 세계 리포트를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회의를 통해 작성된 지역보고서를 UNICEF로 제출한다.
7. 우리는 지금, 지방 및 국제적 수준에서 아동의 복지, 보호, 혜택을 높이는 정책과 법을 유발

하는 정부의 행동을 요청한다. 그러나 정부의 아동에 대한 공격 억제책이 헛된 공약(empty promises)이 되지 않게끔 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아동으로서 우리들은 각국에서 행동 위원회를 만들어 행동 계획을 감사(audit)할 것을 요구한다.

8. 우리는 또한 아동이 의식 향상 캠페인, 집회, 행진 등을 주도하는 세계의 날(International Day)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이후 이 날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날의 막바지 행사가 될 세계 예술, 글짓기, 응변대회(International Art, Essay and Speech competition)를 위한 조직을 요구한다.

9. 우리는 이제 미디어, 특히 인터넷으로 주의를 돌린다. 인터넷은 전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아동을 연결하는 가장 큰 네트워크이다. 성착취와의 싸움에서 대규모 자원으로써 스톱X 조직이 이 회의와 결합 되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웹사이트에 세계대회의 모든 활동 어젠다와 그 결과를 올리고, 포럼을 마련하여 문서를 올리고 우리들의 업무 진행사항을 모니터하며, 이 주제 및 아이디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요청한다.

10. 우리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아동 포르노 및 다른 형태의 학대에 관하여 정부가 엄격하고 가혹한 법을 추진하여, 우리의 어려움(plight)이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

11. 우리는 또한 커뮤니티와 웹사이트에 잘 전파되는 강력한 사이버 안전 규칙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의 위협 및 아동 성착취에 대한 보완 정보를 설명하고 있는 아동, 교사, 부모와 가족 매뉴얼을 개발할 것을 우리는 요청한다.

12. 나아가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한 지식을 늘이기 위해 미디어가 문서, 보고서, 폴더, CDs, 비디오와 다른 자료 등을 모으는 것에 대한 권한을 준다.

만약 오늘날 세계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현상을 종식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세계의 아동으로서 우리들은 맹렬히, 또 열정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고, 우리정부의 행동 촉구를 요청할 것을 약속한다.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은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모든 어른들이 우리 나이였을 때, 우리와 같은 개발 단계였을 때를 기억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더욱 쉬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를 통해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행복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방해하는 이 세계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함께 싸운다는 우리의 약속을 승인하고 이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 걸친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은 이로써 아동 성착취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결정적인 문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한다. 왜냐하면, 이 문서의 처음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3차 세계대회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직면할 가장 큰 과제는 그 효과를 증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적인 현실과 밸자국을 넘기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 목표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남기신 것처럼 내가 우리 아이들을 똑 같은 세상에 남겨둔다면, 나의 존재는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나, 만약 내 존재가 내 후손들을 더 풍요롭게 한다면, 나라는 존재가 타당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중요한 세계적 행사에 참여하여,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모래알만큼 기여하는 정도의 우리의 의무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역사를 만들고 있다.

첫 번째 대회부터 3번째 대회에 이르면서, 이 세계 문제에 관한 거대한 사회적 양심을 창조했었으나, 우리는 이제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국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인 제안과 약속의 성과를 보지도 못한 채 시작한지 이미 10년이 더 넘게 지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 사회, NGOs, 국제기구 및 아동 및 성착취와 싸우기로 약속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다. 아동의 창조성, 청소년의 참여, 성인의 경험을 가진 청년 등이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를 ‘멈추라’는 하나의 외침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